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표지면지

## (사)탁틴내일

1995년 창립하여 전문 성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정운동, 한줄로서기운동,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운동, 청소년축제 및 동아리활동 운영,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교육 등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문화 조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스쿨와!이동성교육버스/ 엑팟ECPAT코리아탁틴/

탁틴내일아동·청소년인권센터/ 탁티낸일연구소

\* 후원계좌: 국민은행 365-25-0003747 (사)탁틴내일

\* 해피빈: [happylog.naver.com/tacteen.do](http://happylog.naver.com/tacteen.do)

##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및 지원,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재발방지 교육, 아동·청소년 성적 권리 증진 활동 및 캠페인, 성폭력 관련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 Program

### ●● 행사개요

- **토론회명** :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장소** : '17.11.7(화) 14:00~17:00 / 이룸센터 누리홀(지하1층, 9호선 국회의사당역)
- **참석대상** : 법조인 및 성폭력 피해지원 활동가 100명
- **공동주최** : (사)탁틴내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엑팟ECPAT코리아탁틴

### ●● 세부일정

#### 1. 축사 및 환영사(14:00~14:10)

-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최영희 (사)탁틴내일 이사장

#### 2. 발제(14:10~15:10, 각 20분)

- 발제 1.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상담사례 및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김미랑(탁틴내일연구소 소장)
- 발제 2. 그루밍이 아동·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  
배승민(가천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천 스마일센터 센터장)
- 발제 3. 판례를 통해 본 그루밍의 해석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 3. 토론(15:20~16:20, 각 10분)

- 토론자 1. 임수희(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토론자 2. 박은정(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토론자 3. 원민경(법무법인 원 변호사)
- 토론자 4.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토론자 5. 윤선영(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
- 토론자 6. 박미혜(서울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 4. 토론 및 마무리(16:20~17:00)



## Contents

### ●● 환영사 및 축사

최영희 (사)탁틴내일 이사장	1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3
이정미 대표	5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7
정춘숙 국회의원	9
김승희 국회의원	11

### ●● 발제문

발제1.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상담사례 및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탁틴내일연구소	13
발제2. 그루밍이 아동·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 배승민_가천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천 스마일센터 센터장	61
발제3. 판례를 통해 본 그루밍의 해석 김재련_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81

### ●● 토론문

토론1.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101
토론2. 박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14
토론3.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130
토론4.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134
토론5. 윤선영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	138
토론6. 박미혜 서울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142

## ● ● 참고자료

- 성적 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 모델 법률 및 외국 법제 검토 ..... 145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ICMEC)

## 환영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최영희 (사)탁틴내일 이사장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을 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소위 ‘영계문화’라 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향락산업으로부터 딸 아들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사람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가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일어나는 성적 착취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데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 방식이나 판결을 자주 접하게 되어 법이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대전에서 사망한 여중생도 경찰이나 학교에서 사건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피해자를 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폭력과 그로 인해 임신한 여중생이 부모님께 차마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성폭력加害자의 집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음에도 가해자인 연예 기획사 사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 아

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다 보면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이들의 취약함과 발달과정상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접근하여 피해자로 길들이는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동의했다고 보거나 네가 싫었으면 왜 싫다고 하지 않았는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가 뭔지, 서로 좋아했던 것 같아 보이는 증거들이 있는데... 등등의 질문을 하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의심하고 무고 운운하며 역으로 겁을 주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피해자로 길들여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약함이 ‘길들이기’를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국제 사회에서는 성적 동의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만13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위계 위력이 다양하게 해석되어 미성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탁틴내일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자, 낯선 용어이지만 이미 국제적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Grooming(길들이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옹호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자로 흔쾌히 수락하고 참석하신 임수희 판사님, 김재련 변호사님, 배승민 교수님, 박은정 부장검사님, 윤선영 단장님, 원민경 변호사님, 배복주 공동대표님, 박미혜 경감님 그리고 토론회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현지현 변호사님과 설문조사를 함께 해주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모임 GSGT(Good Students & Good Teachers)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님과 강지원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토론회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토론회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법조계, 경찰, 시민단체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헌신이 성범죄로부터 우리 소중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그루밍’이란 성적 유혹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성범죄자들이 대인관계나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어린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거나 범죄의 폭로를 막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IT기기의 발전과 온라인 채팅앱의 다양화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그루밍’이 용 이해진 반면, 사이버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자를 찾아내 치벌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책 대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루밍’과 성폭력 행위의 연관성을 수사나 판결과정에도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의 보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그루밍’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돼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안을 청소년 성보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정미 대표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호와 인권 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탁틴내일’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성폭력 발생건수가 2005년 아래 지속적 증가추세입니다. 온라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기존에 없던 신종범죄나 그동안 수면 아래 묻혀있던 성폭력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며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직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2016년 9월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계에 따르면, 성희롱 접수 이후 수사의뢰, 조정, 권고 등의 조치에서 ‘각하’가 65%, ‘기각’이 12%를 차지하는 등 실질적 처벌과 조치는 크게 미흡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성폭력에 대해 여전히 무딘 우리사회 인식과 신종범죄 증가에 발맞추지 못하는 현행법의 미비함에 있습니다. 법은 예방차원으로써 중요하지만, 현실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니 범죄가 벌어져도 사실상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고 있을 따름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내용을 막론하고 후유증이 더 길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 여성 · 성소수자 등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온라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3대 신종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과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성폭력 개념과 범위를 넓히는 등 성폭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규제와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제도개선을 이끄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뜻 깊은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탁틴내일 임직원 모두에게 힘찬 격려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1월7일

정의당 대표 이정미

## 축 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사단법인 탁틴내일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2015년도 연예기획사 대표사건,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의붓 할아버지의 성폭력사건, 여교사에 의한 제자 성폭력사건처럼 낯선 성인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친족, 교사 등 가까이 있는 성인들까지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지속적인 성폭행을 한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의 그루밍(Grooming)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를 무력하게 하여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여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폐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공급이 일반화되면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인들이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뒤 신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 성폭력을 하는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팅, SNS 등의 사용이 일상화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피해자를 찾으려는 성인 가해자들에게 성범죄 대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가족, 학교 등 아동·청소년의 생활공간에서 반복적 피해가 계속 드러나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루밍(Grooming)’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루밍(Grooming)이 있는 경우, 외형적으로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피해자의 저항, 거부가 명백하지 않아 서로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지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등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외로움, 지적장애 등 아동·청소년의 취약함을 이용한 범죄임에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그루밍(Grooming)의 복잡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져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루밍(Grooming)’이 공론화되고 법적 해석에 대한 합의가 한결음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법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정춘숙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춘숙입니다.

오늘 (사)탁틴내일에서 주최하는 ‘그루밍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활동가 선생님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2017년 7월까지 지난 7년간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58,077건으로, 이중 여성의 비율은 94.7%이였으며, 하루에 약 24명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2015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과 2016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경계성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하은이 사건’등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연예기획사 대표사건의 경우, 15살 여중생이 27살 차이가 나는 성인 남성과 며칠 만에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은이 사건의 경우 만 13세 지능 70의 청소녀가 채팅앱에서 만난 6명의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숙박과 떡볶이를 대가로 받았다고, 자발적 성매매로 여겨져 성매수로

처벌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정서적·경제적 힘과 권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 하거나 피해를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전형적 특성중 하나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신뢰를 쌓는 ‘그루밍’ 행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또한, 성적 가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조정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와 판결에서 ‘그루밍’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없이, ‘그루밍’과 성폭력 행위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 당시의 폭행, 협박 등 범죄 구성요건만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가 되는 안타깝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폭력에서 ‘그루밍’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그루밍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의 개념, 유형, 실태 등을 살펴보고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그루밍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김승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희 국회의원입니다.

‘그루밍(Grooming)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탁탄내일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아동 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짚어 보고자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오늘 토론회 소식을 접하고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중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능화되기까지 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사회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밝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왜곡된 성인식과 성폭력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의를 가장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일각의 성의식이 심대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인한 범죄로 우리 사회가 경악을 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루밍(Grooming)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 대책이 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부터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정책적 대책마련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축하드리며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상담사례 및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탁틴내일연구소



##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상담사례 및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탁틴내일연구소

### I. 들어가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은 범죄자들에게 피해 대상을 물색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아동, 청소년이 이 공간에서 ‘그루밍(Grooming)’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이다. 그루밍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루밍은 낯선 사람에게서, 아는 사람이나 가족·친족으로부터,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시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루밍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이 그랬고 하은이 사건이 그랬다.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중 그루밍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관악 성착취피해 청소년 사망, 대전 성폭력피해 여중생 자살, AIDS에 감염된 용인 여중생, 어금니아빠의 청소년 성착취 정황 등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성착취가 그루밍에 의한 것임이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탁틴내일’은 그루밍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그루밍이 일어나는 과정과 결과를 사례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로 성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루밍 여부가 파악되고 이것이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해석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이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 II. 그루밍에 대한 이해 및 특성<sup>1)</sup>

그루밍(grooming)은 사전적인 의미로 ‘차림새를 단정하게 하기’이다. 사전적인 의미와 별도로 성폭력에서 그루밍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범위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다만 감정적, 정서적 유혹의 의미로서 잠재적 학대자들이 아동들이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전략으로 묘사될 수 있다.

Kierkegaard는 아동성범죄자가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만나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Howit은 소아성애자가 그들의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단계라고 제안하였으며, O'connell은 온라인 그루밍의 유형분류체계에서 소아성애자들이 불법적 목적을 위해 아동들과 만나는 일련의 행위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들이 소아성애자는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아동과 초기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성적 그루밍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이럴 경우, 소아성애자를 제외한 다른 성범죄자의 행동이 그루밍 인지 아닌지를 인지하기 어려워 성학대가 일어나는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1. 그루밍에 대한 이해

성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어떤 행동이 위험 사인인지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루밍’은 ‘아동’<sup>2)</sup> 성범죄 분야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는 행동 중 하나이다. 이 용어는 성적 학대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잠재적인 가해자는 아동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학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학대가 쉽게 이뤄지도록 하며, 후에 학대가 폭로되는 것을 막는다. 아이들은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스스로 가해자에게 길들여지고 학대를 준비하게 된다.

그루밍의 공통점은 (1) 다양한 조종적이고 통제적 기술을 사용하여 (2) 취약한 대상에게

- 
- 1) • 엔 마리 맥앨린든(2012), '그루밍'과 아동 성학대: 기관, 인터넷, 가족 차원,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 Anne-Marie McAlinden(2012), 'Grooming'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 Institutional, Internet, and Familial Dimensions, OXFORD UNIVERCITY PRESS/탁턴내일(ECPAT Korea) 번역  
• 국제실종및착취아동센터(2017), 성적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 모델법 및 외국 법제 검토/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탁턴내일 (ECPAT Korea)번역  
• 위의 책과 보고서 2자료를 발췌,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2)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3) 대인관계 및 사회적 배경에서 (4) 신뢰를 쌓거나 성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정상화(normalize)하기 위해 (5) 착취를 원활히 하고 폭로를 막으려는 전반적인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동이 그루밍 과정에서는 아동에게 그루밍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특히, 그루밍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더욱 모호함) 법률 혹은 정책으로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그루밍을 규제하는 데에 제한이 따른다.

그루밍 과정은 면대면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특히 온라인 그루밍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가해자가 인터넷이 제공하는 익명성 뒤에 숨어 아동이 협조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고 조종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영국 기반 조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머들은 불과 30분 만에 만남을 위해 아동을 설득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아동을 완전히 설득하는데 1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힌다. 미들섹스 대학교(런던)의 연구에서도 가해자들은 온라인에서 아동들과 채팅을 할 때 불과 3분 만에 성적인 주제를 꺼내며 8분 만에 아동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루밍 과정은 복잡하며 '신뢰 형성, 고립 및 성적 행동에 대한 무감각화… 항상 같은 순서는 아니지만 일련의 과정과 전략들'을 포함한다. 대체적으로 그 과정은 다음의 단계를 밟아나간다. 법정신의학박사 마이클 웰너는 성학대(sexual molestation)에 이르는 여섯 가지 단계<sup>3)</sup>를 설명한다.

### 1단계: 피해자 고르기

가해자는 아동의 취약성 - 감정적 결핍(neediness), 고립 및 낮은 자존감 - 을 측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고른다. 부모의 감시를 덜 받는 아동일수록 더욱 좋은 사냥감이다.

### 2단계: 피해자의 신뢰 얻기

성범죄자는 아동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아동의 욕구와 그 욕구를 채울 방법을 알아감으로써 신뢰를 얻는다. 이러한 면에서 성범죄자들은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책임감 있는 돌보미와 유사하게 섞인다(별반 다를 바 없다). 그들은 따스하고 필요한 만큼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어색하고 과도한 개인적 관심 또는 드러내놓고 애정을 표현하는 침해는 부모의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정중한 성범죄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밀고 짜르는 것에 능하다. 그루밍 성범죄자의 기량은 스파이 같다. 즉 보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3) <http://www.oprah.com/oprahshow/how-child-molestation-tore-the-nesler-family-apart>

### 3단계: 욕구 충족시키기

성범죄자가 일단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시작하면 피해 아동의 삶에서 더욱 큰 중요성을 눈에 띠게 가질 수 있고 (아동에게) 이상화될 수 있다. 선물, 추가적 관심, 애정을 주는 어른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 4단계: 고립시키기

그루밍 성범죄자는 둘만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관계 형성을 이용한다. 이러한 고립은 특별한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아이처럼 돌보기(babysitting), 개인교습(tutoring), 개인 지도(coaching), 특별한 여행들은 이러한 고립을 가능하게 한다.

가해자가 아동에게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줄 수 없는 사랑 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부모들은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 5단계: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sexualizing)

충분한 감정적 의존과 신뢰의 단계에서 가해자는 관계를 점차 더욱 성적으로 만든다. 무감각화는 대화, 사진, 심지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가벗고 있을 수 있는 상황 연출(수영하러 가기와 같은)을 통해 발생한다. 그 시점에서 가해자는 아동의 순수한 호기심과 자극적 감각을 성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용한다.

아동을 가르칠 때 그루밍 성범죄자는 아동의 성적 기호를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고 아동을 들뜨게 하는 것들을 조종해 관계를 이 방식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아동은 스스로를 더욱 성적 존재로 받아들이며 가해자와의 관계를 더욱 성적이고 특별한 관계로 정의하게 된다.

### 6단계: 통제 유지하기

일단 성학대가 발생 중이라면 가해자들은 아동의 계속적인 참여와 침묵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비밀유지 및 비난을 이용한다. 특히나 성행위를 이유로 아동이 관계를 중단하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에 불잡힌 아동들은 – 이 시점에서 아동들은 발목이 잡힌 상태이다 – 그들을 비난하거나 관계를 끝내거나 관계에 있어 감정적 물질적 욕구를 더 이상 충족시켜 주지 않겠다는 위협에 직면하며, 이는 아이가 타던 흙 묻은 자전거, 개인 지도(coaching), 특별한 나들이, 다른 선물 등 그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다. 아동은 관계의 상실과 관계의 폭로 결과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더욱 더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이상의 그루밍 과정 6단계를 참고하고, 상담사례를 분석하면서 파악한 공통적인 그루밍의 과정 및 단계를 표로 재구성해보았다.

#### 〈그루밍의 과정 및 단계〉

1	피해자 고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욕구 파악 : 취미, 관심사, 진로, 종교, 성적 호기심 등</li> <li>취약점 파악 : 외로움, 가출, 빈곤, 지적 장애, 폭력, 방임, 저연령 등</li> </ul>
↓		
2	피해자의 신뢰 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심 나누기</li> <li>친분 만들기</li> </ul>
↓		
3	욕구 충족 시켜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칭찬하기, 선물 주기, 놀이공원에 데려 가기</li> <li>취미 공유 : 게임 레벨 상승, 아이템 거래</li> <li>성에 대한 정보 제공</li> <li>진로상담, 기회 제공, 일자리 제공</li> <li>경제적 지원</li> </ul>
↓		
4	고립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 만들기</li> <li>가해자에 대한 의존성 키우기</li> </ul>
↓		
5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정 만들기 : 신체 사진 주고받기, 성적인 대화 나누기</li> <li>학습시키기 :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 원래 연인 간에 이런 행동은 당연한 거야 등</li> <li>훈련시키기 : 성적인 행동에 익숙하게 함.</li> <li>속이기 :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안마하는 거야, 병원 놀이 하는 거야 등</li> </ul>
↓		
6	통제 유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 유지</li> <li>조종하기 : 거부하지 못하게 하기</li> <li>체념시키기 : 이야기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등</li> <li>협박하기 : 둘 사이에 있던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겠다.</li> <li>의존성 강화</li> </ul>

\* 마이클 웰너의 그루밍 6단계와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례 분석을 토대로 탁틴내일에서 재구성

이처럼 그루밍은 ‘일반적으로 매우 미묘하고 지속적, 계산적, 통제적이고 계획적인 심리적 조종’을 포함하며, 목적은 아동의 불편함/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적 연결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루밍 과정을 통해 가해자는 적발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동에게 비밀을 유지시킬도록 순응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즉 가해자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거나 선물을 주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방법으로 아동과 친해지는 것을 통해, 또는 가족 친구 문제에 대해 공감해주며 자신을 친구로 믿게 함으로써 아동을 조종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가해자가 아동의 신뢰를 얻고 아동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고 아동이 성착취를 받도록 또는 성착취를 허

락하도록 조종하는 것을 돋는다. 가해자들은 아동을 성학대에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그동안 쌓은 신뢰를 이용한다.

특히 온라인에서 가해자들은 성인 포르노그래피와 아동성학대물과 같은 성적으로 생생하고, 외설적이거나 노골적인 이미지를 아동에게 보낼 수 있으며 아동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영상물을 보내도록 설득하기도 한다. 또 다른 가해자들은 “무작위(scattergun)” 접근법을 이용해 동시에 수백 명의 아동에게 접촉하여 그루밍에 대해 가장 반응이 좋은 아동을 골라낸다. 가해자들은 대개 채팅방, SNS, 또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와 같은 공개적 장에서 피해자를 찾아내어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 및 즉석 메시지, 그리고 다른 모바일폰 앱과 같은 매체를 통해 그루밍 과정을 전개한다.

## 2. 그루밍 과정의 개념화

전문가들에 의한 그루밍의 개념 정의는 피해자 인터뷰에 의해서 정리되었다. 51개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은 그들이 이해한 ‘그루밍’을 지칭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중에는 ‘상황설정 the setting up of a situation’, ‘환경조성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관계 정립 the establishing of a relationship’과 특히 ‘신뢰’ 등이 있었다. ‘유인하기 enticing’, ‘함정에 빠뜨리기 ensnaring’, ‘설득하기 persuading’, ‘덫 놓기 entrapping’, ‘조장하기 enabling’, ‘친분 쌓기 befriending’, ‘준비하기 preparing’, 또는 ‘준비시키기 making ready’, ‘조종하기 manipulating’, ‘환심을 사기 ingratiating’, ‘시작하기 initiating’, ‘목표설정하기 targeting’ 등 전문가들은 그루밍 과정을 지칭하기 위해 다양한 동의어를 사용하였다. 가해자와 작업한 법조계의 어느 senior는 그루밍의 일반적 정의를 ‘착취 목적을 갖고 아동과 친분을 쌓고 관계를 맺으려는 가해자에 의해 사용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정립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많은 차원에서 그루밍의 복잡성과 미묘함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첫째, 그루밍이 미묘한 과정인지 혹은 더욱 명백히 강요적인 과정인지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다. 몇몇 내담자들은 그루밍 과정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이고 충돌하는(모순적인)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뇌물과 좋은 것들을 주는’ 행위의 내재적 강요성은 ‘협박 및 겁주기 전략’과 함께 사용된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했다. 이러한 그루밍 과정의 악의적인 면과 악의 없는 면들은 전문가들이 사용한 동사들에 반영되어 있는데, 덜 공격적인 ‘친분 쌓기’, ‘설득하기’에서부터 공격적인 ‘함정에 빠뜨리기’, ‘조종하기’, ‘덫 놓기’까지 다양하다.

성범죄자 위험평가 작업을 했던 어느 전문가에게 있어서 ‘개인이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란 천편일률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인정한 그러한 행동은 다음과 같다.

…심리적 조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부터… 신체적 폭력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훨씬 더 정교한… 힘의 역학관계 또는 대인관계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들… 잠재적 피해자와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허락할 상황을 고안하고, 이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분 짓는 것을 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성적 요소를 제거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의 행동의 연속선에서 일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 아동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시키는 방식, 남녀가 의사소통하는 방식,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일터에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식 면에서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써 어떤 목적을 위하여든 간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적 그루밍은 어떤 면에서는 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들이 갖는 차이점은 어느 치료 전문가가 말했듯 “그 행동이 잘못된 것 이 아니다. 부적절한 대상이라는 사실, 그것이 차이점이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유해한 동기를 가진 행동들로부터 더 일상적이고 악의 없는 그루밍 유형 행동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은 가해자의 ‘성적 동기’ 또는 ‘의도성’과 관련이 있다(Finkelhor, 1986; Norrie, 2005). 아동들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행동 패턴들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 지원에 관여한 한 전문가가 “그들은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아동과의 과도한 동일화를 찾아내려고 애쓴다.”라고 묘사했다. 이러한 그루밍은 대개 ‘일상적 행동’을 구성해 특히 초기 그루밍 과정과 실제 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

### 3. 그루밍의 심리적 기제 : 신뢰의 오용

신뢰는 그루밍에 의한 성착취가 일어나는 과정 및 행동과 특정하게 연관되어 있다. 콜만(1990)은 신뢰를 행동 또는 위험한 행동을 허용하는 태도라고 정의한다. 배신과 신뢰의 영역

에 있어 최근 가장 주목 받는 학자인 벤-예후다의 연구에서 부각된 주제들은 그루밍의 역학 이해를 돋는 데 유용하다.

첫째, 신뢰는 사회 구조와 사회적 기관(societal institutions)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신뢰와 충성의 저버림(violation), 즉 배반은 대인관계, 조직 또는 기관 차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차원 속에 나타날 수 있다. 이 요소는 신뢰가 대인 관계 속 - 가해자와 피해아동, 보호자와 같은 - 미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과 더 넓은 사회, 그들의 직장 사이의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둘째, 신뢰는 믿음직스러움, 충실함, 책임의 개념을 환기시키며 그러한 관계를 충성, 우정 및 믿음으로 가정한다. 이들은 가해자가 그루밍 하고자 하는 아동과 친근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립해야만 하는 전제 조건들이다. 가해자는 특별히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믿음직한 척을 하며 그들이 자신의 이런 가식을 진실이라고 믿도록 속인다. 가해자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통의 관심사와 정체성을, 집단적 차원에서 상상의 공동체 감정을 만들려고 한다.

셋째, 실제를 가리고 배신을 용이하게 하는 문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신뢰의 위반은 일반적으로 비밀유지, 조종, 거짓말, 속임, 숨김과 이를 행하고자 하는 특정적, 고의적 동기를 포함한다. 성범죄자들은 그루밍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다. 그들은 성적으로 학대적인 행동을 원활히 하고 숨기기 위해 지역사회 내의 아동과 함께 일한다든가 하는 위치, 지위를 사용할 수 있다.

#### 4. 그루밍의 분류 (Typologies of Grooming)

현재 학계의 전반적인 관점은 인터넷 그루밍에 초점을 맞추는 ‘온라인 그루밍’에 편향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앤 마리 맥앨런 듐(2012)은 세 가지의 그루밍 방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세 가지의 방식은 ①맥락에 따른 차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족 내 및 가족 외), ②대상;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아동, 가족, 지역사회, 기관들), ③그루밍 방식; 접근 방법(면대면 접촉, 인터넷 또는 온라인 기반 활동, ‘거리 그루밍’, ‘또래간 그루밍’)이 있다.

##### 1) 맥락 : 가족 내 및 가족 외 그루밍

The context: intro-familial and extra-familial grooming

가족 외 그루밍은 아동이 낯선 이 또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에 의해 학대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가족 외 맥락 속에서 아동 그루밍은 온라인, 면대면 상황, 조직 내, 길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족 내 그루밍은 가족 내 학대 속에서 발생한다. 아동들이 가족 내 가까운 사람 또는 최소한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가족 내 학대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영국 연구에 의하면 피해자의 74%는 자신의 학대자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중 58%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학대를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530명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어느 연구에 따르면 17%가 사춘기 이전에 학대를 받았으며, 이 중 약 50%가 친척에 의해 학대를 당했다(Finkelhor, 1979). 좀더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80%, 북아일랜드의 98% 응답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레겟, 2000). 가족 내 그루밍의 맥락 속에서 아동들은 궁극적인 목표물이지만, 그들의 부모, 보호자,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신뢰를 얻기 위한 그루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대상 : 아동 그루밍, 가족과 사회 그루밍, 기관 그루밍

**The subject: child grooming, familial and social grooming, institutional grooming**

아동들은 친분을 쌓고 1:1(exclusive) 관계를 정립하고 서서히 친밀도가 증가함으로써 마침내 성적 접촉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과정 속에서 그루밍 당할 수 있다. 아동의 가족, 지역 사회 및 아동 돌봄, 다른 조직 속의 사람들 또한 아동들에게 위험하지 않게 보이는 가해자의 가식적인 모습을 수용함으로써 조종당하고 아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루밍)준비를 당할 수 있다. 이전에는 ‘기관 그루밍’이라는 개념은 거의 간과되었으나, McAlinden의 이전 연구(2006)에서 사용되었다. 기관 그루밍은 성범죄자들이 학대를 용이하게 하고 발각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 환경의 특별한 특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 맥락 속에서 아동 그루밍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개념은 성범죄자들이 잠재적 피해자에게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게 하는 그루밍 또는 조종으로까지 연장될 수 있다.

## 3) 그루밍 방식 : 면대면, ‘온라인’, ‘거리’, 및 ‘또래 간’ 그루밍

**The mode of grooming : face-to-face, ‘on-line’, ‘street’, and ‘peer to peer’**

온라인과 길거리 그루밍 모두 대상은 아동이며 잠재적 가해자는 인터넷이나 다른 모바일

기술, 또는 길거리에서 여자아이에게 접근함으로써 성범죄의 전 단계를 시행한다. 온라인과 길거리 그루밍은 가장 흔한 성적 그루밍의 방식들인 반면 면대면 접촉은 대개는 간과되면서도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그루밍 행동의 형태이다.

‘또래 간’ 그루밍이라는 말은 오프라인 그루밍 행동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그루밍은 가족 내 또는 가해자가 아동, 아동의 가족, 더 넓은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쌓고자 하는 유사가족(quasi-familial) 학대의 맥락 속에서 사용된다. ‘또래 간 그루밍’은 아동 또는 청소년이 성착취 또는 학대를 목적으로 다른 아동들을 그루밍 할 수 있는 상황의 그루밍 형태이기도 한데, 이러한 형태의 그루밍은 나이가 더 많은 아동이 어린 동생을 그루밍하는 가족 외 맥락에서 학대의 전조로 발생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의 그루밍(on-street grooming)’이라고도 하는 ‘길거리 그루밍(street grooming)’은 좀 더 최근에 떠오른 그루밍 행동의 추가적 분류를 가리킨다. 이 유형은 조직 폭력단의 일부인 집단 가해자들이 아동 성매매 또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과 같은 불법 사업을 목적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그루밍 하는 것이다. 이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는 ‘로컬화된 그루밍(localized grooming)’이 있으며 이 그루밍 방식의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형태로, ‘내부의 domestic’ 또는 ‘내부적 인신매매 internal trafficking’가 있다.

## 5.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은 비접촉(온라인) 또는 접촉(오프라인) 성적 관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인터넷 또는 다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온라인 그루밍은 이메일, 즉석 메시지 앱, SNS, 채팅방, 온라인 게임 사이트, 사진 공유 사이트, 데이트 앱을 통해서 발생하며 이 모든 수단은 개인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폰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2010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8세에서 18세 아동들은 일일 평균 7.5시간동안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보다 앞선 스웨덴의 아동의 미디어 습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9세에서 11세 아동의 82%와 12세에서 16세 아동 95%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또한 9세-11세 그룹 28%와 12세-16세 그룹 54%는 인터넷을 매일 사용한다. 오늘날 아동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며, 그들의 사회적 영역은 대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둘 사이의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져 있으며, 낯선 이와의 의사소통에 거리낌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성학대물 및 성폭력물

제작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성학대와 관련될 수 있다. ‘영국아동학대예방기구(NSPCC)’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강간, 그루밍, 학대 생중계를 포함하는 아동 성범죄의 2015년 일일 평균 8건이 인터넷을 이용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 1)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13세에서 15세 사이이다. 어떤 그루머(groomers)들은 여러 명의 아동들과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며 관계를 맺는다. 2012년 유럽 온라인 그루밍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여자아동들이 남자아동들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아동들은 “피해자의 상당수 그룹”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반적으로 학대 사건을 신고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확인된 피해사실에 대한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의 차이는 신고 통계자료보다 적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생활사건(life events) 또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온라인 그루밍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여준다. 그러나 여러 산업화 된 국가의 연구에서, 온라인에서 피해를 당한 몇몇 아동들은 “그 이전에 그러한 부정적 사건과 같은 분명한 공통분모가 없으며 무작위로 (가해자에 의해) 목표물로 설정된 듯하다…,” 고 보여주며, 이는 “전형적인 피해자란 없으며 온라인에서 학대당한 아동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서로 다르다 (heterogeneity)는 것.”임을 보여준다.

### 2) 온라인 그루밍의 방식

SNS는 특히 온라인 그루밍에 널리 이용된다. 가해자들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 SNS를 탐색함으로써 그들의 성적 취향에 맞는 취약한 아동을 찾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들은 SNS의 프로필 사진, 인구학적 정보, 관심사,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즉 뉴스피드, 상태 게시물, 게시물 댓글)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아동 인터넷 이용자들은 SNS와 소셜미디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낯선 이와의 의사소통에 거리낌이 없다. 낯선 이에 대한 개방성을 고려할 때 영국에서 시행된 사이버범죄 연구에 따르면, 2006년 동안 채팅방에서 일어난 원치 않는 온라인 성적 접근 약 85만 건과 성적 그루밍 후 아동과의 만남 범죄 약 238건이 기록되었다. 미국의 2005년 연구는 10세에서 17세 아동의 25명 중 1명이 오프라인에서 접촉 시도를 포함하는 공격적인 성적 제의를

받았으며, 25명 중 1명은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는 온라인 가해자들에게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불과 5년 후 시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10세에서 17세 미국 아동 11명 중 1명이 원치 않는 온라인 성적 제의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온라인 게임 또한 전세계적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를 위한 활동으로 성장했다. 온라인 게임 플랫폼(컴퓨터, 비디오 게임 콘솔 또는 소형 게임 시스템)의 기능은 진화해서, 인터넷 접근, 메시지 플랫폼 및 사진과 비디오 공유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과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자들은 아동에게 접근하고 그들과 연결하려는 수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욱 더 많은 아동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고 아동이 성범죄자와 접촉할 위험이 높아졌다.

온라인 게임은 자동적으로 가해자와 아동 사이에 공통된 관심사를 제공하여 몇몇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낯선 이와 관계를 맺는 두려움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성인의 감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게임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가해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단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가해자는 아동이 1:1 채팅방, 즉석 메신저, 소셜미디어 앱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대화하도록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성적 대화와 이미지/비디오, 심지어는 성행위 생중계의 교환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온라인 아동 그루밍에 이용되는,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전략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캐나다 사이버 조언 웹사이트 Cybertip.ca는 평균 연령 13세 피해자들의 그루밍 사건 264건을 분석한 결과 93.4% 사건에서 용의자들이 성적 이미지를 요청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체의 24% 경우에서 아동이 넘겨준 이미지 배포 또는 다른 위협으로 협박당했으며, 성적 이미지를 실제로 보낸 경우는 전체 30%였다. 또한 전체 사건 중 35.5%에서 용의자가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피해 아동에게 웹캠으로 의사소통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루밍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만남 또는 온라인상의 아동 성학대이다. 인터넷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정보 또는 이미지를 온라인 전송을 통해서,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옮겨가지 않고도 미성년자들이 조종당하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되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많은 이점들은 이용자들이 오프라인 그루밍을 온라인 그루밍으로 장소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 인터넷은 지리적 위치의 경계를 허물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며, 온라인 환경의 익명성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실제 신분을 감출 수 있게 한다. 또한 가해자들이 가해 행동 정도를 유지하고 심지어

그 행동의 단계를 높일 수 있도록 대담하게 만든다. 바로 이 익명성 때문에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아동은 어색함을 덜 느낄 수 있고 어떤 아동들은 의도치 않게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아동들은 점점 더 웹캠 앞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속고 있으며, 이는 ‘접촉’ 성학대 만큼이나 아동에게 피해를 준다. 온라인 가해자들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도록, 웹캠 앞에서 포즈를 취하도록, 사이버섹스를 하도록 아동을 설득함으로써 더욱 직접적인 성적만족을 달성하고자 한다.

### 3) 온라인 그루밍 법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정의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의 법적 연령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한 국가 내에서도 주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성학대로부터의 일관적이고 통합된 아동 보호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18세 미만의 사람은 성적 관계에 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온라인 그루밍 법을 목적으로 한 ‘아동’은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 보호에 관한 다른 국제 협약들과 동일하며 온라인 그루밍의 본질적 착취성을 감안한 것이다.

법적 조항들은 아동 성학대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과정 중에 이용되는 다양한 단계와 기술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조건들을 통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피해 아동이 결과적으로 겪는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 또한 고려해야 한다. 최소한 ‘온라인 그루밍’의 정의는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아동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성행위를 강요하는 성인의 의사소통, 유언, 유혹, 제안, 제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루어야 한다. 사용될 수 있는 용어로는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성적 그루밍, 유언, 제의, 유혹, 조장, 조종, 성적 의사소통, 접촉 성범죄, 비접촉 성범죄 등이 있다.

### 4) 온라인 그루밍 과정을 범죄화

최근까지만 해도 인터넷 이용 성범죄 연구의 상당수에서는 그루밍을 가해 행동의 한 (부수적) 요소로 여기고 아동성학대물의 특정 범죄 관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 그루밍을 ‘과정 자체가 가해 offence specific process’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에서도 그루밍이 하나의 독립된 범죄가 아닌 또 다른 가해의 구성요소로 다루어졌다. 연구와 법 모두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아동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성행위를 위해 행해지는 범죄로 인정하고 그 자체로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학대적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그루밍 이후 아동과의 만남만을 범죄화 하고 그루밍 행위는 단지 준비과정으로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가해자가 성학대를 저지를 목적으로 만남을 활용할 의도가 있으면 아동을 만나려는 시도는 범죄화 될 수 있다. 비접촉 성학대는 유해하며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아동을 만날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온라인 그루밍 과정을 범죄화 하는 국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5) 아동과 만남의도를 가진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그루밍 과정의 일부로써 가해자는 아동을 성학대하기 위해 개인적 만남을 주선하려고 할 수 있다. 그루밍 과정 자체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을수록 신체적 성학대를 가능하게 하는 면대면 만남을 위해 아동을 설득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을 설득하는 과정은 아동이 편안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루밍 과정 자체가 아동에게 성적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성적 대화에 아동을 참여시키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해자에게 보내도록 아동에게 요청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착취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가해자들은 이러한 온라인 착취 과정 후에야 더 많은 신체적 행위를 통한 착취로 확장하기 위해 아동을 실제로 만나고자 할 것이다.

#### 6) 아동 만남의도와 무관하게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어떤 국가들은 온라인 그루밍의 결과로 아동과 만나는 것을 범죄화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만 일어나는 성착취 예방을 위한 법은 부재한다. 온라인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성착취를 범죄화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어떤 온라인 (성적)제의들은 오프라인 상에서 성적인 만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가해자들은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는 비접촉 범죄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행위에 참여, 개인의 성적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공, 온라인 의사소통의 결과로 일어나는 다른 성적 접근(sexual advances) 등에 대한 요청 등 다양한 성적 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고,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웹캠을 통해 아동의 성적 행위를 관찰할 수도 있으며 채팅, 문자, 이메일을 통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아동을 만나기 위한 명확한 의도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아동이 그루밍을 당했거나 비접촉 온라인 성학대를 당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기에 ‘너무 늦을’ 수 있다.

영국의 ‘아동성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CEOP)’는 온라인 성범죄가 최근 몇 년간 아동이 성적 인 사진을 찍도록 혹은 성적 대화나 비디오 채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등 웹을 기반으로 한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국아동학대예방기구(NSPCC)’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기술의 사용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영국 내에서 3천 건이 넘게 발생했다. 이는 온라인에서 세 시간마다 한 명의 아동이 성학대를 당하는 것과 같다.

한편 CEOP에 따르면 2012년 1,145건의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건 중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만남 의도가 명백한 사건은 7% 미만인 반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온라인 환경에 국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CEOP는 2010년 ‘해티 작전(Operation Hattie)<sup>4)</sup>’을 실시하였는데, 이 작전에서 영국 아동 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학대/착취 행위를 저지른 쿠웨이트의 두 형제가 체포되었다. 두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란사로테 협의회는 란사로테 협약 제23조의 의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아동에 대한 성적 제의가 반드시 직접 만남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가해가 온라인상에만 머무를 수도 있음에도 아동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재천명하였다.

전형적인 성적 협박은 다음과 같은 많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 용의자와 미성년자간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한 접촉
-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스스로 또는 가해자가 웹캠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제작
- 이 이미지들의 배포
- 미성년자가 더 많은 이미지를 제작하도록 설득하는 가해자의 시도
- 오프라인 접촉을 강제하거나 원활히 하기 위한 이미지 이용
- 미성년자가 추가 이미지 제작 또는 가해자의 기타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재 또는 친구나 가족에게 공개한다는 협박
- 아동이 성적 자해나 자살 등 자해 행위를 하도록 협박

정책 입안가들은 만남의도 없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하는 법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 이유는 범죄가 저질러진 시작점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들이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아동을 성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며, 이 법들이 집

4) 영국의 ‘아동성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CEOP)’는 2010년 ‘해티작전’이라는 국제적 수사를 지휘했다. 20개월 넘는 기간 동안 12개 국가를 수사했고, 영국 아동 78명을 포함한 전세계의 아동 110명을 타겟으로 했던 쿠웨이트의 두 형제를 체포, 기소할 수 있었다.

행되도록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호주와 캐나다 법은 둘 다 가해자가 아동을 만날 의도가 있음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법은 오히려 성행위 의도를 갖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다. 이 두 나라의 법을 참고로 하여 모델법을 작성하는 것은 온라인 그루밍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다.

## 6. 그루밍 관련 법: 란사로테 협약<sup>5)</sup>과 모델법률<sup>6)</sup>

온라인 성학대 벤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온라인 그루밍법 대다수는 아동과의 의사소통이 만남, 아동과 만남을 위한 명확한 계획, 예를 들어 아동과 만남을 위한 이동 또는 이동 주선과 같은 계획으로 이어져야만 범죄로 인정한다.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 과정은 대개 성적 대화, 피해자에게 성인 포르노그래피 그리고/또는 아동성학대를 보여주기, 아동이 자신의 성적이미지를 찍어 공유하도록 압박 또는 강요하기를 포함한다.

2017년 2월에 통과되고 제정된 2014년 아일랜드 형법 법안주석 (아동 그루밍) 법안 (Ireland's Explanatory Memorandum for the Criminal Law(Child Grooming) Bill)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최근 보고서들은 점점 더 많은 그루밍 사건들이 온라인상에서만 발생하며 가해자가 아동과 오프라인에서 만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오프라인상의 만남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하는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그루밍법이 모든 종류의 아동 그루밍을 범죄화해야 함은 필수적이다.”

각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법 개발을 권고하기 위해 ‘국제실종및착취아동센터(ICMEC)’는 현존하는 국제 및 국가법 검토를 시행했다. 인터넷상의 아동 그루밍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기초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루밍 행동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 협약(란사로테 협약)’은 온라인 그루밍을 특정해서 다루는 유일한 국제법이다. 란사로테 협약은 그루밍을 명확히 정의

5)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협약' (2007), (일명 란사로테 협약)

6) 국제실종및착취아동센터(ICMEC)(2017), 성적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 모델법 및 외국 법제 검토/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타인내일(ECPAT Korea)번역

(아동에게 성적인 목적의 제의)하고 있지만 만남 제안이 실질적 행위으로 이어지는 물질적 행위(material acts)를 요구한다. 이 협약은 주요 시작점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가해자가 아동을 직접 만날 의도는 갖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루밍 또한 다루어야 한다. 이는 성학대가 많은 경우 직접 만남 이전에 시작되거나 온라인상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 성착취에 대한 모델법률 개발과 옹호는 전 세계의 이 같은 범죄를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척 중요하다. ICMEC에서는 각국에게 새로운 법 개발을 권고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제 및 국내법 검토를 시행하고, 196개국을 아우르며 다양한 국가들의 온라인 그루밍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 견본, 현존하는 온라인 그루밍 모델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각국의 국내법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적 목적의 온라인 아동 그루밍과 관련한 국내법이 존재한다.
- 국내법이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 그루밍의 정의를 제공(또는 설명)하고 컴퓨터 용어와 인터넷 용어를 사용한다.
- 국내법이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만남 의도가 있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한다.
- 국내법이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만남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한다.
- 국내법이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것을 범죄화 한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196개국에 현존하는 국내법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판(2017)	
성적 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법	63개국에 법이 존재 그 중 24개국이 5개 기준 충족
온라인 그루밍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전혀 없음	133국에는 관련 법 부재 그 중 51개국에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행위를 범죄화 하는 법 존재. 82개국은 5개 기준 모두 불충족
컴퓨터 용어와 인터넷 용어를 포함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설명	51개국
아동과 오프라인 상 만남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비접촉 학대)	34개국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범죄화	106개국

이 보고서의 모델법률(Model legislation)에서 거론된 근본적인 주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온라인 그루밍에 있어 ‘아동’을 성적 동의에 관계없이 18세 미만으로 정의
- (2)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하는 ‘그루밍’ 행동을 정의/설명하고, 그 정의가 컴퓨터 용어 및 인터넷 용어를 포함하도록 확보
- (3) 국가 형법에 온라인 그루밍 과정에 관한 특정 범죄 생성
- (4) 그루밍 수단으로써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것을 범죄화
- (5) 그루밍에 참여한 부모/보호자 처벌
- (6) 아동성범죄에 대한 역외 관할권 제공
- (7) 그루밍 범죄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아동 친화적 과정 제공
- (8) 재범 및 다른 가중 요소(위협, 성적 협박,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처벌 강화

### III. 면대면 그루밍 사례분석

#### –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면접상담 사례분석

본 사례분석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면접상담(피해상담, 성상담, 가해상담) 142건 중, 성폭력 피해상담이며 피해자의 연 나이가 20세 미만인 사례 78건에 대한 상담사례 분석이다. 특히 전체 사례 중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가 차지하는 비중 및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이 진행되었다.

#### 1. 면접상담 의뢰시기 및 피해자 특성

먼저 면접상담 의뢰 시기와 피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표4). 성별은 여성(87.2%), 남성(12.8%) 으로 나타났고 피해 당시 나이는 14~16세(35.8%), 17~19세(28.2%), 11~13세(20.5%)순으로 나타났고 6~10세 피해도 5명 있었다. 한편 장애 여부에서는 인지능력 장애 없음이 62.8%,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등 인지능력이 취약한 사례가 32.1%로 나타났다.

〈표 1〉 면접상담 의뢰시기 (N=78)

구분	기준	명(비율)	
면접상담 의뢰시기	2014년 7월~12월	2014년 하반기	5명(6.4%)
	2015년 1월~6월	12명(15.4%)	2015년
	2015년 7월~12월	14명(17.9%)	26명(33.3%)
	2016년 1월~6월	16명(20.5%)	2016년
	2016년 7월~12월	20명(25.7%)	36명(46.2%)
	2017년 1월~6월	2017년 상반기	11명(14.1%)

〈표 2〉 피해자 성별 (N=78)

구분	기준	명(비율)	
성별	여성	68명	(87.2%)
	남성	10명	(12.8%)

〈표 3〉 피해 당시 연 나이 (N=78)

구분	기준	명(비율)	
피해 당시 연 나이	6세~10세	5명	(6.5%)
	11세~13세	16명	(20.5%)
	14세~16세	28명	(35.8%)
	17세~19세	22명	(28.2%)
	파악 안 됨	7명	(9.0%)

〈표 4〉 피해자 장애 여부 (N=78)

구분	기준	명(비율)	
장애 여부	인지능력 장애 없음	49명	(62.8%)
	경계선 지능	8명	(10.3%)
	지적장애 의심	1명	(1.3%)
	지적장애 2, 3급	13명	(16.7%)
	특수교육 대상자	3명	(3.8%)
	파악 안 됨	4명	(5.1%)

##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사례의 특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사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피해 횟수 및 기간은 1회 피해가 있었던 사례 33.3%보다 2회 이상~6년까지 반복적인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48.7%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6〉
- 가해자와의 관계는 친족관계(21.8%),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18.5%), 교사 및 학원/교회

교사(16.7%), 동급생(15.9%), 선배 및 손위 지인 또는 후배(12.7%), 남자친구 또는 데이트상대(6.4%)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가 이미 알고 지낸 사람(76.1%) 이거나 온라인 또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람(21.1%)이고 모르는 사람은 1.3%뿐이었다. <표 7>

- 가해자의 나이는 14세~16세(18.0%), 20대(16.7%), 40대(12.8%), 17세~19세(11.5%) 순이었다. 특히 20대~60대 성인 가해자의 비율이 전체 가해자의 46.1%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 성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23.1%), 강간(19.2%),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유사성행위(15.4%), 친족관계 추행·유사성행위(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 그리고 가해 당시 범죄 구성요건은 <표 10-1> ‘성폭력 구성요건 기준’(한국성폭력상담소 외, 2014.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 안내서)에 의거해 본 상담소 상담원들이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분류하였으나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해석에 따라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계, 위력이 20.5%이며, 심신상실, 항거곤란, 항거불능이 19.2%, 그리고 현행 수사, 재판에서 대표적인 범죄 구성요건이 되고 있는 폭행, 협박은 11.5%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6.4% 있었다. 피해자가 당황해서 저항을 못하거나 가해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사례이다. <표 10>
- 피해자 중, 성매매 강요 및 피해가 중복된 경우는 7.7%를 차지한다. <표 12>

<표 5> 피해 (시작)시기 (N=78)

구분	기준	명(비율)
피해 (시작) 시기	2004년	1명(1.3%)
	2005년	1명(1.3%)
	2008년	1명(1.3%)
	2009년	2명(2.6%)
	2011년	2명(2.6%)
	2012년	2명(2.6%)
	2013년	3명(3.8%)
	2014년	8명(10.2%)
	2015년	20명(25.6%)
	2016년	28명(35.9%)
	2017년	3명(3.8%)
	파악 안 됨.	7명(9.0%)

〈표 6〉 피해 횟수 및 기간 (N=78)

구분	기준	명(비율)	
피해 기간	1회	26명(33.3%)	
	2~6개월	11명(14.1%)	1년 미만
	7~12개월	5명(6.4%)	16명(20.5%)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명(3.8%)	1~3년
	3년	2명(2.6%)	5명(6.4%)
	4년	2명(2.6%)	4~6년
	5년	2명(2.6%)	
	6년	1명(1.3%)	5명(6.4%)
	수회	12명(15.4%)	
	파악 안 됨	14명(17.9%)	

〈표 7〉 가해자와의 관계 (N=78)

구분	기준	명(비율)	
가해자와의 관계	동급생		12명(15.9%)
	친구가 소개한 성인		2명(2.6%)
	친부, 의부, 친오빠	8명,3명,2명	13명(16.7%)
	이부오빠 2명, 고모부, 친모 지인	1명,1명,2명	4명(5.1%)
	교사, 학원교사, 교회교사	8명,3명,2명	13명(16.7%)
	채팅 상대, SNS 및 게임에서 만난 사람	10명,2명	12명(15.9%)
	인터넷 동호회, 까페 회원		2명(2.6%)
	선배, 지인(손윗), 후배	8명,1명,1명	10명(12.7%)
	남자친구, 데이트 상대	4명,1명	5명(6.4%)
	동네사람		1명(1.3%)
	고용주		1명(1.3%)
	모르는 사람		1명(1.3%)
	파악 안 됨		2명(2.6%)

〈표 8〉 가해자 나이 (N=78)

구분	기준	명(비율)
가해 당시 연 나이	7세	1명(1.3%)
	11세~13세	4명(5.1%)
	14세~16세	14명(18.0%)
	17세~19세	9명(11.5%)
	20대	13명(16.7%)
	30대	7명(8.9%)
	40대	10명(12.8%)
	50대	5명(6.4%)
	60대	1명(1.3%)
	파악 안 됨	14명(18.0%)

〈표 9〉 성폭력 피해 유형 (N=78)

구분	기준	명(비율)
성폭력 피해 유형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12명(15.4%)
	유사강간	6명(7.7%)
	강간	15명(19.2%)
	준강간	3명(3.8%)
	강제추행	18명(23.1%)
	준강제추행	3명(3.8%)
	친족관계 추행, 유사성행위	12명(15.4%)
	친족관계 강간	4명(5.1%)
	특수강제추행	1명(1.3%)
	특수준강간	1명(1.3%)
	SNS상 성희롱, 초상권 침해	1명(1.3%)
	파악 안 됨	2명(2.6%)

\* 중복 피해: 성매매 강요 1명, 통신매체이용음란 4명, 카메라이용촬영 2명

〈표 10〉 성폭력 당시 범죄 구성요건 (N=78)

구분	기준	명(비율)
성폭력 구성요건	폭행, 협박	9명(11.5%)
	심신상실, 항거곤란, 항거불능(음주, 수면, 지적장애)	14명(19.2%)
	위계, 위력	15명(20.5%)
	기억나지 않음	1명(1.3%)
	해당되는 구성요건 없음	5명(6.4%)
	파악 안 됨	32명(41.2%)

〈표10-1〉 성폭력 구성요건 기준

성폭력 구성요건 기준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외(2014),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 안내서		
<b>폭행 또는 협박</b>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밀치거나 끔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준강간, 준강제주행)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b>위계</b>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함.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함. 진료하는 것처럼 속여서 간음하는 경우는 위계에 해당		
<b>위력</b>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 폭행, 협박은 물론 지위,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직장 상사가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해고시킬 것처럼 협박하여 부하 직원을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b>항거불능 및 항거곤란</b>		
항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원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음(최협의설). 그러나 정신상 장애인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피해 당시 성적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1도6907 판결요지 중)		

〈표 11〉 신고, 수사 결과(상담 종료 시 또는 2017년 10월 현재) (N=37)

구분	기준	명(비율)
신고, 수사 결과	조사 중	2명(5.4%)
	기소	4명(10.8%)
	불기소 처분	6명(16.2%)
	보호처분 불처분	2명(5.4%)
	유죄 판결	6명(16.2%)
	접수 안 됨	2명(5.4%)
	보호자가 법적 진행 취소	1명(2.7%)
	파악 안 됨	14명(37.8%)

〈표 12〉 성매매 피해 중복 여부 (N=78)

구분	기준	명(비율)
성매매 피해 여부	있음	6명(7.7%)
	없음	72명(92.3%)

### 3.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의 특성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의 특성을 살펴보면,

- 전체 사례 78건 중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34건으로 43.9%를 차지한다. 〈표 13〉  
피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피해 당시 나이는 14~16세(44.1%), 17~19세(26.5%), 11~13세(14.7%)순으로 나타났고 6~10세 피해 5명(14.7%)은 전체 피해자 그룹에서와 동일한 인원으로 6~10세 피해자 5명은 모두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에 해당되었다. 또한 인지능력이 취약한 피해자(지적장애, 경계선 지능 등)가 35.2%를 차지하였다. 피해자의 나이는 전체 그룹과 그루밍 그룹 모두 14세~16세가 가장 많으나, 전체 피해자 그룹에서 34.8%인 반면 그루밍 피해자 그룹에서는 44.1%로 그루밍 피해자 그룹에서 비율이 더 높다. 〈표 14〉 〈표 15〉 〈표 16〉
- 피해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그룹에서는 1회 이상 피해사례가 48.7%를 차지하는 반면 그루밍 그룹에서는 67.7%로 큰 차이가 나며 또한 1~3년, 4~6년 장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전체 그룹에서는 12.8%, 그루밍 그룹에서는 23.6%로 차이가 나서 그루밍 그룹에서 피해가 반복적,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6〉
- 온라인 그룹과 오프라인 그룹으로 나누어 피해 지속기간을 비교해보았는데, 1회 이상의 피해 사례가 온라인 그루밍 그룹은 50%, 오프라인 그룹은 95.5%로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 그룹에서는 1년 이상의 장기 피해는 파악되지 않으나 오프라인 그루밍 그룹에서는 1년 이상의 피해가 36.4%를 차지하여 오프라인 그루밍 그룹에서 장기적, 반복적으로 피해가 지속된 사례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17〉
- 〈표 18〉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다양하지만 또 전형적인 그루밍 방법을 볼 수 있다.
- 가해 당시 범죄 구성요건은 앞서와 동일하게 〈표 10-1〉 ‘성폭력 구성요건 기준’(한국성폭력상담소 외, 2014.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 안내서)에 의거해 본 상담소 상담원들이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분류하였으나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해석에 따라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항거곤란, 항거불능(23.5%), 폭행, 협박(20.6%), 위계, 위력(17.6%)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사, 재판에서 대표적인 범죄 구성요건이 되고 있는 폭행, 협박은 20.6%에 그쳤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11.8% 있었다. 13~16세 미만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모두 성인으로, 피해자가 당황해서 저항을 못하거나 가해자가 잘 해주며 사귀자고 했고 피해자는 연애하면 다 이러는가보다 라고 가해행동을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게 된 사례이다. 〈표 20〉

〈표 13〉 그루밍 및 온라인 그루밍 여부 (N=78)

구분	기준	명(비율)	
그루밍 여부	있음	34명(43.6%)	온라인 그루밍 있음 온라인 그루밍 없음
	없음		25명(32.1%)
	파악 안 됨		19명(24.4%)

〈표 14〉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 당시 나이 (N=34)

구분	기준	명(비율)
그루밍 피해자 나이	10세 이하	5명(14.7%)
	11세~13세	5명(14.7%)
	14세~16세	15명(44.1%)
	17세~19세	9명(26.5%)
	파악 안 됨	0명

〈표 15〉 그루밍과 장애 여부 (N=34)

구분	기준	명(비율)	
그루밍과 장애 여부	인지능력 장애 없음	22명	(64.7%)
	경계선 지능, 지적능력 낮음, 특수교육 대상자	6명(17.6%)	인지능력 취약
	지적장애 2, 3급	6명(17.6%)	12명(35.2%)
	파악 안 됨		0명

〈표 16〉 그루밍과 피해 지속기간 (N=34)

구분	기준	명(비율)	
그루밍과 피해 지속기간	1회	11명	(32.4%)
	2~6개월	4명(17.6%)	1년 미만
	7~12개월	3명(8.8%)	7명(20.6%)
	2년, 2년 6개월	2명(5.9%)	1~3년
	3년	2명(5.9%)	4명(11.8%)
	4년	2명(5.9%)	4~6년
	5년	1명(2.9%)	4명(11.8%)
	6년	1명(2.9%)	
	수회	8명	(23.5%)

〈표 17〉 온라인, 오프라인 그루밍과 피해 지속기간

구분	유형	기준	명(비율)
온라인, 오프라인 그루밍과 피해 지속기간	온라인 그루밍 (N=12)	1회	6명(50%)
		1년 미만	4명(33.3%)
		수회	2명(16.7%)
	오프라인 그루밍 (N=22)	1회	5명(4.5%)
		1년 미만	4명(18.2%)
		1~3년	4명(18.2%)
		4~6년	4명(18.2%)
		수회	5명(4.5%)

〈표 18〉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그루밍 방법 (N=34)

구분	관계	기준	명(비율)
그루밍 방법	동네 오빠	놀이, 간식, 속임(숙제하는 거다)	4명(11.8%)
	동급생	친구 소개로 가해자 만난 후 협박 당함	2명(5.9%)
	후배	숙소 제공	1명(2.9%)
	온라인(채팅,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채팅에서 애정표현 후 만남 제안	4명(11.8%)
		왕따, 학교부적응 피해자에게 대화상대 되어 줌	3명(8.8%)
		동호회, 까페에서 만난 후 사귀자고 함	2명(5.9%)
		피해자의 진로와 동일한 전공자라 함	1명(2.9%)
	학원교사	고가의 선물, 진로 지원 SNS로 성적 호기심 유발	3명(8.8%)
	교사	평소 친밀하게 대하고 용돈을 줌	3명(8.8%)
	교회 교사	간식, 악기연주 지도	2명(5.9%)
	친모 지인	속임(안마해주겠다) 엄마 몰래 용돈 주겠다	2명(5.9%)
	친부, 의부	어릴 때부터 성적 행동에 익숙하게 함	3명(8.8%)
		속임(다른 아빠들도 이렇게 한다)	1명(2.9%)
		불안한 상태(부모와 떨어져 지냄) 이용	1명(2.9%)
	고용주	가족들에게 선물 제공	1명(2.9%)
	낯선 사람	도움 요청(길을 알려 달라)	1명(2.9%)

〈표 19〉 그루밍과 성폭력 피해 유형 (N=34)

구분	기준	명(비율)
그루밍과 성폭력 피해 유형	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주행	5명(14.7%)
	유사강간	4명(11.8%)
	강간	8명(23.5%)
	준강간	2명(5.9%)
	강제주행	9명(26.5%)
	준강제주행	1명(2.9%)
	친족관계 주행, 유사성행위	4명(11.8%)
	친족관계 강간	2명(5.9%)
	파악 안 됨	0명

〈표 20〉 그루밍과 가해 당시 범죄 구성요건 (N=34)

구분	기준	명(비율)
그루밍과 범죄 구성요건	폭행, 협박	7명(20.6%)
	항거불능, 항거곤란(지적장애)	6명(17.6%)
	위계, 위력	5명(14.7%)
	기억 안남	1명(2.9%)
	해당되는 구성요건 없음	4명(11.8%)
	파악 안 됨	11명(32.4%)

〈표 21〉 그루밍과 신고, 수사 결과(상담 종료 시 또는 2017년 10월 현재) (N=21)

구분	기준	명(비율)
그루밍과 신고, 수사 결과	조사 중	2명(5.9%)
	기소	4명(19.0%)
	불기소 처분	2명(5.9%)
	보호처분 불처분	2명(5.9%)
	유죄 판결	3명(8.8%)
	접수 안 됨	1명(2.9%)
	보호자가 법적 진행 취소	1명(2.9%)
	파악 안 됨	6명(17.6%)

## IV.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아동 청소년 그루밍 위험성

탁틴내일과 GSGT(Good Students & Good Teachers)<sup>7)</sup>가 함께 2017년 10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등학생 489명 중학생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통해 낯선 사람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며 사진,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상당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온라인 접촉만으로도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생각보다 높아 그루밍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기에 나이와 외모, 성격 등을 속이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 1. 중학생 대상 SNS 이용 형태 및 그루밍 위험성 조사

응답자의 전체 613명 중 전체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의 비율은 여성은 304명(49.9%), 남성은 305명(50.1%)이며, 1학년은 205명(33.7%), 2학년 212명(34.8%), 3학년 188명(30.9%)이다. 항목별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SNS 이용 실태

중학생 대상 조사 결과 SNS 이용 시간은 하루 1시간 미만이 3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시간 이용한다가 33.5%였다. SNS 친구 수가 2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9.8%로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SNS 이용시간

구분	여	남	무	전체	%
1시간 미만	72	161	0	233	38.3
1~2시간	117	87	0	204	33.5
3~4시간	58	29	0	87	14.3
4시간 이상	48	21	0	69	11.3
무응답	8	6	2	16	2.6
합계	303	304	2	609	100

7)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모임(GSGT)'은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문화를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청소년 문화 운동 단체로서, 인성교육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바르고 고운말 운동과 음란성광고규제운동,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SNS 친구 수

구분	여	남	무	전체	%
50명 미만	40	54	0	94	15.7
50~100명	38	42	0	80	13.3
100~200명	60	66	0	127	21
200명 이상	160	140	0	300	49.8
무응답	0	0	9	9	0.2
합계	298	302	9	610	100

## (3) SNS 콘텐츠 이용내용

구분	개인소식	뉴스	행사정보	관심 있는 사진/동영상
여	142	17	36	170
남	124	14	21	133
무	1	1	0	3
전체	267	32	57	306

## (4) SNS 이용 목적

구분	친구와 연락하기	의견나누기	나만의 공간	전문지식, 기술자랑	새로운 친구
여	245	38	9	2	55
남	221	50	8	6	34
무	5	1	1	0	1
전체	471	89	18	8	90

## (5) SNS 비접속 시 감정 상태

구분	편안하다	지루하다	불안하다	아무렇지 않다
여	20	120	16	133
남	23	80	6	187
무응답	0	2	2	2
전체	43	202	24	322

## 2) 온라인 친구 관계

온라인 친구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만나지 않고도 우정이 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면 56.3%로 온라인 관계만으로도 우정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청소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연락만 해도 사귀는 것(연애)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면 21.2%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연애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루밍에 이용당할 수 있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 (1) ‘만나지 않고 연락만 해도 우정이 가능한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여	26	82	140	54	0	302
남	47	107	128	23	0	305
전체	73	189	268	77	2	609
%	12	31	44	12.6	0.4	100

### (2) 직접 만나서 온라인에서 친구에게 고민을 터놓는 것이 더 편하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여	86	138	68	11	0	303
남	77	125	85	17	0	304
전체	163	263	153	28	2	609
%	26.8	43.2	25.1	4.6	0.3	100

### (3)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연락만 해도 사귀는 것(연애)가 가능한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여	137	98	57	11	0	303
남	141	96	52	9	0	298
전체	278	194	109	20	8	609
%	45.6	31.9	17.9	3.3	1.3	100

## 3)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은 나이, 휴대폰 번호, 학교, 개인 사진 등의 개인 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경험이 있으며 심지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응답자도 33명으로 개인정보 노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 (1) 무엇이 개인정보라고 생각 하는가? (중복응답)

구분	휴대폰번호	집주소	가족, 형제자매 사진	내가하는 활동	내 자신의 사진	그 외
명	526	558	429	249	423	32

## (2)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안전한가?

구분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합계
명	9	82	276	235	7	609
%	1.5	13.5	45.3	38.6	1.1	100

## (3)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공유해본 적 있는 나의 개인정보는?

구분	나이	이메일	집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다니는 학교	내 사진	아이디 비밀번호
명	414	88	25	6	143	140	115	33

## 4)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과의 성폭력, 성매매 의심상황(주변인)

온라인을 통해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61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친구(70.4%)나 선후배(24.7%)가 의심된다는 응답이 95.1%로 가장 높았다.

## (1)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몇 명인가?

구분	명	%
1~2명	49	80
3~4명	4	6.5
5명 이상	8	13.5
합계	61	100

## (2) 성폭력 또는 성매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구분	명	%
친구	43	70.4
가족	3	4.9
선후배	15	24.7
합계	61	100

## 5) 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4.7%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30명 이상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0.2%였다. 실제로 만났다는 응답도 14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3.8%에 달했다. 만난 이유는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나누려고’가 56.3%로 가장 많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응답도 32.8%였다.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였고 18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대화 경험이 가장 많았다.

### (1) ‘SNS, 메신저(채팅 등), 게임에서 대화해 본 낯선 사람은 몇 명인가?’

구분	0명	1~2명	3~4명	5명 이상	10명 이상	30명 이상	무	합계
여	53	33	36	40	46	95	0	303
남	40	39	23	21	28	150	0	301
전체	93	72	59	61	74	245	5	609
%	15.3	11.8	9.7	10.0	12.2	40.2	0.8	100

### (2) 위에서 만난 사람 중 실제로 만난 사람은 몇 명인가?

구분	1~2명	3~4명	5명 이상	합계
여	41	17	24	82
남	22	17	24	63
전체	63	34	48	145

### (3)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 (중복 응답 가능)

구분	취미 관심사를 함께 하려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합계
여	61	31	11	103
남	43	29	8	80
전체	104	60	19	183
%	56.8	32.8	10.4	100

## (4) 실제로 만나서 무엇을 했는가? (중복)

구분	취미 관심사를 함께 나누었다	이야기를 했다	같이 밥을 먹었다	합계
여	51	59	21	131
남	38	34	15	87
전체	89	93	36	218
%	40.8	42.7	16.5	100

## (5) 온라인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구분	여	남	명	%
그렇다	15	11	26	4.3
아니다	283	284	567	93.1
무응답	7	9	16	2.6
합계	305	304	609	100

## (6) 대화 상대 나이는?

구분	여	남	명	%
18세 미만	7	4	11	42.4
18세~25세	3	1	4	15.4
25세 이상	0	1	1	3.8
모른다	2	4	6	23
무응답	3	1	4	15.4
합계	12	10	22	84.6

## (7) 성적 대화를 나눈 사람과 실제로 만난 적이 있다.

구분	여	남	계	%
그렇다	1	1	2	7.7
아니다	12	10	22	84.6
무응답	2	0	2	7.7
합계	15	11	26	100

## (8) 온라인 (인터넷)외 접촉방식은?

구분	여	남	계	%
어딘가에서 만나자고 했다	2	3	5	19.3
전화를 했다	3	3	6	23
집으로 찾아갔다	0	0	0	0
문상 또는 선물(기프트콘)을 줬다	2	0	2	7.7
무응답	8	5	13	50
합계	15	11	26	100

## 6) 랜덤 채팅 이용

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랜덤채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8%는 랜덤채팅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15.2%가 랜덤채팅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1) 랜덤채팅에 대해서 들어봤다.

구분	여	남	계	%
그렇다	221	191	412	68
아니다	82	105	187	30.4
무응답	1	9	10	1.6
합계	304	305	609	100

## (2) 랜덤채팅을 이용한 적이 있다.

구분	여	남	계	%
그렇다	49	43	92	15.2
아니다	180	168	348	57.1
무응답	75	94	169	27.7
합계	304	305	609	100

### (3) 랜덤채팅 이용/빈도 횟수는?

구분	여	남	계	%
일주일에 1번	32	29	61	66.3
일주일에 2~3회	5	9	14	15.2
하루에 1번	6	2	8	8.7
하루에 2~3번	1	2	3	3.3
하루에 5번 이상	5	1	6	6.5
무응답	0	0	0	0
<b>합계</b>	<b>49</b>	<b>43</b>	<b>92</b>	<b>100</b>

## 7) 온라인에서의 성적 접근 경험

응답자의 11.8%는 누군가 성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접근 방법은 원치않는 성과 관련된 말을 했다,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했다, 자기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성적으로 접근해왔을 때 기분은 화났다와 무서웠다는 순이다. 이런 사실을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냐는 질문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응답이 36.7%였다.

### (1) 누군가 성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다.

구분	여	남	명	%
그렇다	46	25	71	11.8
아니다	255	270	525	86.1
무응답	3	10	13	2.1
<b>합계</b>	<b>304</b>	<b>305</b>	<b>609</b>	<b>100</b>

### (2) 성적으로 접근한 방법은?(중복응답)

구분	여	남	전체	%
원치 않는 성과 관련된 말을 했다	24	11	35	49.3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했다	11	2	13	18.3
용돈을 줄테니 자기랑 만나자고 했다	2	1	3	4.2
시키는 대로 안하면 내가 싫어할 원가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1	0	1	1.4
자기와 사귀자고 하며 잘 해줬다	4	1	5	7
그 외(자기 사진을 찍어 보냄)	6	5	11	15.5
무응답	0	3	3	4.3
<b>합계</b>	<b>48</b>	<b>23</b>	<b>71</b>	<b>100</b>

## (3) 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기분은?

구분	여	남	전체	%
무서웠다	13	1	14	19.8
화가났다	15	8	23	32.4
부끄러웠다	3	0	3	4.2
아무렇지 않았다	4	6	10	14
무응답	11	10	21	29.6
합계	46	25	71	100

## (4) 누군가 내게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접근한 것을 경험한 후 나타난 후유증은?

구분	여	남	전체	%
그 웹사이트를 멀리했다	1	0	1	1.9
인터넷을 멀리 했다	1	0	1	1.9
그 일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6	0	6	11.6
사소한 일에 자주 놀랐다	1	0	1	1.9
평소 즐거웠던 일들이 재미 없어졌다	1	0	1	1.9
없었다	22	20	42	80.8
합계	32	20	52	100

## (5)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 의해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 성폭력 피해는?

구분	여	남	전체	%
협박에 의해 신체사진, 동영상을 보냄	0	0	0	0
실제로 만나 성추행(강제로 몸을 만짐)을 당함	0	0	0	0
실제로 만나 강간(강제로 성관계)을 당함	0	0	0	0
랜덤채팅을 하다 만나서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고 돈이나 선물 등 대가를 줌	0	0	0	0
누군가 SNS에 나에 대해 성과 관련된 내용을 올림	0	1	1	100
무응답	0	0	0	0
합계	0	1	0	100

## (6) 온라인에서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순간이 있었는가?

구분	명	%
그렇다	72	11.7
아니다	528	86.1
합계	600	97.8

## (7) 온라인(인터넷)에서 성폭력이라 의심되는 순간 어떻게 행동했는가?

구분	명	%
(채팅방 등에서) 나왔다	24	3.9
그 사람을 차단했다	46	7.5
무시했다	11	1.8
경찰 등에 신고 했다	5	0.8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렸다	0	0
선생님이나 학교 직원에게 알렸다	0	0
합계	86	14

## (8) 누군가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접근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겠는가?

구분	명	%
친구	45	8.8
웹사이트 관리자	98	16
부모님/보호자	225	36.7
선생님	27	4.4
경찰	87	14.2
알리지 않는다	31	5.1

## (9)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구분	명	%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157	25.6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41	6.7
부모님께 혼날까봐 두려워서	30	4.9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152	24.8
그 외 ( )	89	14.5

## 2. 초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초등 5,6학년 응답자 509명 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총 4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 중 여성은 247명(50.5%), 남성은 242명(49.5%)였고 5학년은 267명(54.6%), 6학년 220명(45%), 무응답 2명(0.4%)이다.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98.2%로 초등학교 5,6학년 대부분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 시간은 일평균 1시간 미만(60.4%), 1~2시간(23.1%)이다. SNS 친구 수는 중학생에 비해 적어 50명 미만이 47.9%, 200명 이상은 10.2%였다.

초등학생들도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나이(186명)가 가장 많았고 휴대폰 번호나 학교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응답이 각각 34명, 31명이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14명이나 되었다.

초등학생들도 69.1%가 온라인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7%였다. 온라인에서 성폭력이 의심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응답이 10.4%였고 만약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접근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겠냐는 질문에 대해 부모님/보호자의 비중이 58.3%로 중학생들에 비해 보호자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 1) 이용시간

구분	여	남	전체	%
0시간	3	6	9	1.8
1시간 미만	119	176	295	60.4
1~2시간	72	41	113	23.1
3~4시간	25	6	31	6.3
4시간 이상	27	7	34	7.0
무응답	1	6	7	1.4
합계	247	242	489	100

## 2) SNS 친구 수

구분	여	남	전체	%
0	8	12	20	4.1
50명 미만	103	131	234	47.9
50~100명	56	43	99	20.2
100~200명	20	18	38	7.8
200명 이상	37	13	50	10.2
무응답	23	25	48	9.8
합계	247	242	489	100

## 3) 온라인(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면?

구분	나이	이메일	집주소	집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 이름	사진	아이디 비밀번호	그외	합계
명	186	15	4	1	34	31	32	14	51	317

## 4) SNS, 메신저(채팅 등), 게임에서 대화해 본 낯선 사람은 몇 명인가?

구분	0명	1~2명	3~4명	5명 이상	10명 이상	무응답	합계
여	88	36	31	21	65	6	247
남	63	37	13	22	101	6	242
전체	151	73	44	43	166	12	489
%	30.9	14.9	9	8.8	33.9	2.5	100

## 5)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구분	여	남	전체	%
그렇다	11	7	18	3.7
아니다	230	233	463	94.7
무응답	6	2	8	1.6
합계	247	242	489	100

## 6) 대화 상대 나이는?

구분	여	남	전체	%
18세 미만	6	1	7	1.4
18세~25세	3	3	6	1.2
모른다	3	3	6	1.2
무응답	235	235	470	96.2
합계	247	242	489	100

## 7) 온라인 (인터넷)외 접촉방식은?

구분	여	남	전체	%
어딘가에서 만나자고 했다	3	2	5	35.7
전화를 했다	4	1	5	35.7
집으로 찾아갔다	0	0	0	0
문화상품권 또는 선물(기프트콘)을 줬다	2	2	4	28.6
합계	9	5	14	100

## 8) 누군가 성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다.

구분	여	남	전체	%
그렇다	15	4	19	3.9
아니다	223	235	458	90.4
무응답	9	3	12	5.7
합계	247	242	489	100

## 9) 성적으로 접근한 방법은? (중복응답)

구분	여	남	전체	%
원치 않는 성과 관련된 말을 했다	12	2	14	50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했다	5	1	6	21.4
용돈을 줄테니 자기랑 만나자고 했다	0	0	0	0
시키는 대로 안하면 내가 싫어할 원가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0	0	0	0
자기와 사귀자고 하며 잘 해줬다	4	2	6	21.4
그 외(자기 사진을 찍어 보냄)	2	0	2	7.2
합계	23	5	28	100

## 10)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 의해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 성폭력 피해는?

구분	여	남	전체	%
협박에 의해 신체사진, 동영상을 보냄	1	0	1	33.3
실제로 만나 성추행(강제로 몸을 만짐)을 당함	0	1	1	33.3
실제로 만나 강간(강제로 성관계)을 당함	0	0	0	0
랜덤채팅을 하다 만나서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고 돈이나 선물 등 대가를 줌	0	0	0	0
누군가 SNS에 나에 대해 성과 관련된 내용을 올림	1	0	1	33.3
합계	2	1	3	100

## 11) 온라인에서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순간이 있었는가?

구분	여	남	전체	%
그렇다	31	20	51	10.4
아니다	215	215	430	87.9
무응답	1	7	8	1.7
합계	247	242	489	100

## 12) 온라인(인터넷)에서 성폭력이라 의심되는 순간 어떻게 행동했는가?

구분	여	남	전체	%
(채팅방 등에서) 나왔다	18	13	31	32.6
그 사람을 차단했다	26	13	39	41.1
무시했다	9	7	17	17.9
경찰 등에 신고 했다	0	2	2	2.2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렸다	3	0	3	3.1
선생님이나 학교 직원에게 알렸다	2	1	3	3.1
합계	58	36	95	100

## 13) 누군가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접근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겠는가? (중복응답)

구분	여	남	전체	%
친구	30	15	45	8.3
웹사이트 관리자	23	28	51	9.4
부모님/보호자	159	156	315	58.3
선생님	20	20	40	7.4
경찰	35	43	78	14.5
알리지 않는다	6	5	11	2.1
합계	273	267	540	100

## 14)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구분	여	남	전체	%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39	61	100	32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26	16	42	13.4
부모님께 혼날까봐 두려워서	21	8	29	9.3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46	70	116	37
그 외 ( )	17	9	26	8.3
합계	149	164	313	100

**V. 맷음말**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이 특히 심각한 이유는 (진정한 신뢰가 아닌 의도적이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지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학대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피해자는 그루밍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해자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그루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이 때문에 한 사람의 삶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루밍은 아동에게 접근하기 위한 성 범죄자의 의식적이고 계산된 방법과 체계적인 수행 과정을 지칭하는데 쓰이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성 범죄자가 피해자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들과 이미 아는 사이가 아닐 경우, 성 범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동에게 접근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McAlinden, 2012).

그루밍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 또는 아동에게 실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잠재적인 위협 요소들을 잡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느 단계에서부터 그루밍의 시작이라고 정확히 잡아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그루밍이 교묘하고 비밀스럽게, 또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사실과, 뒤늦게서야 ‘그루밍’이라고 깨닫게 되는 행위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성범죄 과정의 초기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루밍은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간에, 아동을 성적 학대 환경에 계속 노출시키기 위해서나, 범죄자가 학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나, 성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루밍은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아동과 가해자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간과하지 않게 하는 조건 하에서 아동 성범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고려될 필요가 있다(McAlinden, 2012).

지금까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공 보건 접근법은 학대범과 관련된 ‘위협 요소를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적이고 탄력적인 요인’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는 아동에 대한 위협 요소를 훨씬 광범위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성 범죄자가 아동과 아는 사이인 ‘평범한 사람’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동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Sutton and Jones, 2004).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보다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잘 알고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다.

아동 청소년의 취약함을 이용한 그루밍으로 성적인 착취가 일어날 수 있고 이 과정들은 외형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루밍에 의한 성적인 접촉은 모두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그루밍이 일어나고 있고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동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성적 동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은 동의의 유무, 관계의 대등성, 강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그루밍이 일어나는 관계에서 아동, 청소년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연령, 발달 수준,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의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선택에 대한 사회의 표준적인 반응은 어떨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는 성적 동의 연령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적인 권고 기준은 만18세 미만이다.

결론적으로, 아동에 대한 그루밍에 의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및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경찰에 의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과 성인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서 검거하거나 유도 수사 등을 통해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란사로테 협약’,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EU 조정지침’, ‘사이버범죄협약’ 등 국제 협약 등을 참고하여 국내법을 보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Anne-Marie McAlinden(2012), 'Grooming'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 Institutional, Internet, and Familial Dimensions, OXFORD UNIVERCITY PRESS / 앤 마리 맥앨린든(2012),'그루밍'과 아동 성학대: 기관, 인터넷, 가족 차원,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탁틴/내일(ECPAT Korea) 번역

Elena Martellozzo(2012), Online Child Sexual Abuse - Grooming, Policing and Child Protection in a Multi-Media World, ROUTLEDGE/ 탁틴내일(ECPAT Korea) 번역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Review/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국제실종및착취아동센터(2017), 성적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 모델법 및 외국 법제 검토/탁틴내일(ECPAT Korea)번역

<http://www.oprah.com/oprahshow/how-child-molestation-tore-the-nesler-family-apart>

Online Child Sexual Abuse\_Grooming, Policing and Child Protection in a Multi-Media World / Elena Martellozzo / Routledge / 2012 / Chapter 3 Young people's use of the Internet

Online Victimization of Youth – Five Years Later / Janis Wolak, Kimberly Mitchell, and David Finkelhor of the Crimes Against Childre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2006

<http://www.unh.edu/ccrc/pdf/CV138.pdf>

Kingdom of Bahrain State of the Nation Review of Internet Safety / Prof. Julia Davidson, Kingston University and Dr Elena Martellozzo, Middlesex University / July 2010 / on behalf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Kingdom of Bahrain

<http://www.tra.org.bh/media/document/State%20of%20the%20nation%20review%20full2.pdf>

A survey of public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 responses and prevention / Stop it now! / June 2013  
[https://www.stopitnow.org.uk/files/tayside\\_baseline\\_survey\\_report\\_june\\_2013.pdf](https://www.stopitnow.org.uk/files/tayside_baseline_survey_report_june_2013.pdf)



## 발제문 2

# 그루밍이 아동·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

배승민\_가천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천 스마일센터 센터장







# Grooming, Child and Adolescent 아동청소년의 정신발달과 그루밍

가천의대 정신과/인천스마일센터장  
배승민



## CHILD SEXUAL ABUSE (CSA)

- a form of child abuse in which
- an adult or
- other person significantly older or
- in a position of power or control over the child,
- uses a child for sexual stimulation

Medline Plus; APA

- Often involve body contact,  
but not always.

## Grooming

- 가해자가 인지, 정서, 경제적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길들이는 과정을 거쳐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것

### 아동 성범죄자 10명중 7명 '애착형'

#### 연령별 애착형 성범죄 현황



##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 패턴

- 1) **접근** : 단 둘이 있을 기회 (서로의 집, 차량, 으슥한 곳),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게임, 놀이, 선물, 먹을 것 등으로 유인
- 2) **성폭력, 추행**
- 3) **비밀 유지** :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을 지속하는 수단이 된다.

## 성인/미성년자

- 신체
- 인지기능
- 뇌 발달
- 경험

## 아동 청소년기의 발달

### 1-2세

- 자신에 대해 인식이 커지며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 부모에게 강한 애착,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애정
  - 혼자 놀이
  - 나쁜 감정을 표현
  - 새로운 것을 성취했을 때 긍지와 기쁨을 나타냄
  - 어른들의 행동을 놀이로 모방
  - 자기 주장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냄
  - 다른 사람의 일을 거들어줌

## 2-3세

자신을 능력 있고 창조적인 존재로 여긴다

- 모든 것을 탐색하려 하고 자아가 강해지며  
자립심 발달

## 2-3세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인식 시작,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

- 배변 욕구
- 옷 입고 벗는 것을 거들 수 있음
- 좋아하는 것을 주장, 어른들의 요구에 '싫어'
- 자신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
- 좋다, 나쁘다 같은 자기 의견 발달
-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에 대해 이야기
- 빠른 감정 변화, 두려움 ↑ (어두움, 특정 사물 등)
- 공격적인 감정과 행동

## 3-4세

자립심의 향상, 다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고, 도와주면 교대로 가지고 놀
-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시작하고 참여하며 게임을 구성
- 연극 놀이를 하고 장면을 재연할 수 있음  
(예: 여행가기, 동물 흉내내기)

## 4-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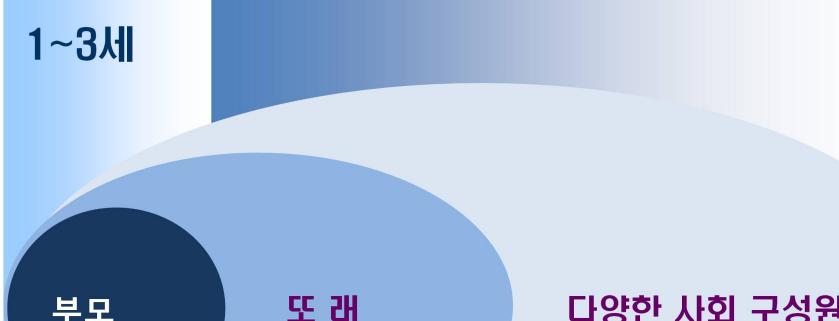
1. 스스로를 개별화된 존재로서 인식한다.

- 도리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함(공정성, 선한 행동, 나쁜 행동 등)
-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

## 4-5세

2.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 우정의 발달
-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
- 이성에게 관심
- 친구들과의 상상놀이를 좋아함
- 연극 놀이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과 유사해짐



## 학령기 발달

- 또래관계
  - 주로 동성친구들과 관계
  - 남녀간 역할의 구체화, 분명한 성역할
  -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필수 (*Hartnup, 1983*)
  - 친구 개념의 변화(6~14세)
    - 활동을 같이 하는 관계 → 물건을 공유하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 개성을 표현하고 지지하는 관계 (*Berndt, 1981*)
    - 이해, 충직함, 상호 공감, 신뢰
- 집단 따돌림

## 청소년기

- 신체/인지/사회적 성숙을 통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변화해가는 시기
- 청소년기의 시작 – 사춘기의 시작
  - : 어린이의 몸에서 어른의 몸으로. 2세를 남길 수 있는 수정능력을 갖춘 신체로의 변화
- 호르몬 변화/ 신체적 변화
- 사회적/학업적 환경 변화
- 인지적 – 심리적 변화 : 뇌의 발달 & 적응

## 청소년기의 뇌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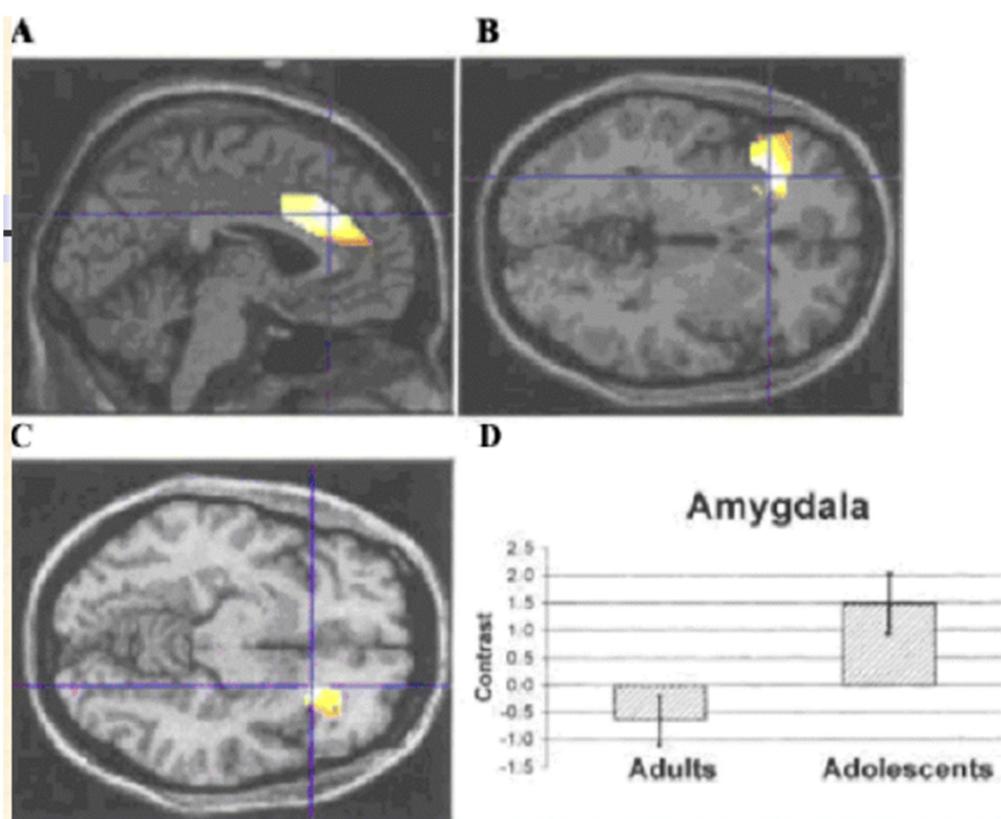
- 성 스테로이드 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아드레날린 등) 분비량 급상승
  - 신체 성장 및 형태 변화 : 2차 성징
  - 뇌, 행동의 변화
- 테스토스테론 : 인간에게서 2번의 큰 영향
  - 1) 출생전후 : 뇌의 남성화
  - 2) 사춘기 : 대뇌기능의 남성화 (성적, 사회적 행동의 강화)

## 성 호르몬의 뇌 회로 활성화

- ① 시상하부 : 생식회로의 촉진
- ② 감각 및 관련 영역 : 성적 대상 및 경쟁자를 찾는 활동
- ③ 측좌핵(nucleus accumbens)과 연결된 도파민 회로 및 전전두엽 회로 활성화
  - : 보상관련 행동의 강화
  - 테스토스테론, 부신 호르몬

## 청소년기 뇌 발달과 인지변화

- ‘얼굴 인지에 대한 연구’  
: 사회적 인지의 일시적 변화
- 테스토스테론 : 공격성,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동기의 강화
- ‘감각추구성’ : 성적 문란, 술/약물남용, 위  
험한 운전과 스포츠에의 몰입 (역 U자형)



## 외상 사건

- 성인의 경우 : 원 성격의 파괴
- 아동기 반복적 외상 : 성격의 형성
  - "Rheumatic fever" of child psychiatry

Type I/II/Cross-over type traumas

Terr L. AJP 1991

##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

- 1940년대 : 성인의 아동기 시절 재구성
- Anna Freud et al. 1943 : groundwork

- Davie Levy 1945



**Psychic trauma of operations in children** *American J of diseases of children*

- **Lenore Terr**, 1976~  
: **Chowchilla bus kidnapping**  
26 children – longitudinal f/u study

## Judith Herman

- 외상에 대한 반응은 단일 장애의 범주로 분류하기보다 연속적인 상태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에 따르는 증후군
- 외상후 장애 스펙트럼 *Lawrence Kolb*
- 심각하고 다중적인 임상적 표현양상 *William Netherland*

## 미성년 외상의 특징 1

### 의식의 변화

-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 상실 혹은 외상 기억의 회복
- 일시적인 해리성 삽화
- 이인증/ 비현실감
- 재경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침투적 증상의 형태 or 반추적 몰두

## 미성년 외상의 특징 2

### 자기 지각의 변화

- 무력감 or 주도성의 마비
- 수치심, 죄책감, 자기 비난
- 오명, 낙인의 느낌
- 다른이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  
(특별하다, 완전한 고립감,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믿음, or 인간이라는 정체성의 상실)

## 미성년 외상의 특징 3

### 가해자 지각의 변화

-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몰두 (incl. revenge fantasy)
- 가해자의 전지전증함에 대한 비현실적 귀의
- 이상화 or 모순적인 감사
- 특별한 관계 or 초월적 관계에 대한 느낌
- 가해자의 신념체계에 대한 수용 or 합리화

## 미성년 외상의 특징 4

### 다른 사람과의 관계 변화

- 고립, 회피

## 생존의 조건

-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강한 보호자가 생존을 보장

## 외상성 애착 traumatic bonding

- '심리적 유아기'로의 강요된 퇴행 (Martin Symonds)
- '생을 위협하는 바로 그 당사자에게 매달리도록 피해자는 강요당한다'
- 탈출한다해도, 속박 이전에 존재했던 관계 유형을 재건하기 어렵다.

## Summit's '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

- 아동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비밀을 강요받고, 그 뒷에 걸리면 무력해진다.
- 아동의 무력감과 공포는 "그 피해를 말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 또는 순응적인 행동들을 야기.
- 아동이 폭로한 경우, 가족과 전문가들이 아동을 적절하게 지지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아동의 고통은 증가하고 폭로를 철회할 수 있다.

## 피해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 아동의 성격과 사건의 특성, 인지발달 수준 및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에 따라서 다양
- 어떤 아동은 피해가 자신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빠져든다.
- 이 때문에 피해에 대해 폭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문 3**

# **판례를 통해 본 그루밍의 해석**

김재련\_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 Grooming 관련 판례분석 및 법적 대응

온·세상, 따뜻한 세상

변호사 김재련

## What is Grooming?

◆ 통제 - 심리적 / 신체적

◆ 착취 - 정서적 / 경제적

## Grooming의 목적

### ◆ 성적 욕구 충족

- 오프라인 상의 만남을 통한 성관계
- 온라인 상의 성적대화, 행위 통한 성적욕구 충족

3

## Grooming의 위험성

### ◆ 실질적 접촉 없이도 성 착취 발생

- 음란한 사진 전송
- 신체 특정부위 촬영사진 전송요구
- 웹 캠을 통한 성적 대화 및 녹화

4

## Grooming의 통로

### ◆ 온라인

- 채팅 앱
- SNS(ex. 페이스 북)

### ◆ 오프라인

- 조건만남

5

## Grooming의 특징(대상)

- ◆ 가해자 : 우월한 지위
- ◆ 피해자 : 취약한 지위
- ◆ 연령, 경제적, 지적, 심리적, 관계적 영역

- 미성년 아동/성인
- 가출청소년
- 해체된 가정의 청소년
- 교사, 보호자, 친한 이웃

6

## Grooming 관계의 특징

- ◆ 낯선 사람?
- ◆ 아는 사람
  - 교사/ 가족/ 성직자/ 이웃

7

## Grooming 유형

- ◆ 친절
  - 과도한 칭찬, 배려, 격한 감정적 동조
- ◆ 위협
  - 성적 요구 불응에 대한 폭로예고
  - 공범자라는 죄책감 부여
- ◆ 강제력
  - 물리적 강제력
  - 지적, 도덕적, 심리적 강제력

8

## 피해자의 두려움 : Fear

- ◆ 두려움이란?
- ◆ 두려움의 판단기준은?
  - 피해자 관점

9

## 주관적 공포란?

- ◆ 두려움(fear)
  - 두려움은 주관적 요소이고 설령 피해자의 두려움이 비합리적이지만,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관적·비합리적 두려움을 알면서 이용했다면 폭행은 발견될 수 있음.(People v. Iniguez, 872 P.2d 1183, 1188 (Cal. 1994))

10

### 주관적 공포를 인정한 사례(Kehoe v. Chandler case)

- ◆ Kehoe는 자신의 의붓딸 J.R.(당시 12세)에 대한 성폭행으로 유죄를 선고 받음.
- ◆ 어머니와 Kehoe가 헤어진 후 강간사실을 말하기 전, J.R.은 Kehoe를 지속적으로 “아빠”라고 부르며 그와 전화하거나 편지를 씀. 편지 내용 중에는 그를 사랑한다, 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도 그녀 스스로 그를 보러 갈 것이다 등이 있었음. 심지어 어머니의 집을 떠나 그와 함께 살고 싶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음.

11

### Kehoe v. Chandler

- ◆ 1999. 09. 28. Kehoe는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았던 12세의 J.R.은 화장실에서 창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한 후, 소리 지르고 자신을 밀치려는 J.R.을 강간함. 강간 후, Kehoe는 J.R.에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J.R. 자신은 물론, J.R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를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함.
- ◆ 2000.04. Kehoe와 J.R.의 어머니는 헤어졌고, 2002.09. J.R.은 강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말함. 남자친구와 성적으로 가까워지면서 패닉을 느낀 J.R.에게 남자친구가 학교상담을 권하면서 강간사실이 밝혀지게 됨
- ◆ 2년 이상 지난 후에야 강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J.R.은 어머니가 재혼하고 새집으로 이사하여 어머니가 안전해지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라 설명.
- ◆ 어머니와 Kehoe가 헤어진 후 강간사실을 말하기 전, J.R.은 Kehoe를 지속적으로 “아빠”라고 부르며 그와 전화하거나 편지를 씀. 편지 내용 중에는 그를 사랑한다, 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도 그녀 스스로 그를 보러 갈 것이다 등이 있었음. 심지어 어머니의 집을 떠나 그와 함께 살고 싶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음.

12

## 재판부 판단 : 주관적 공포 인정(피해아동의 관점 유지)

- ◆ 어른의 관점으로 본 J.R.의 편지는 강간피해자의 것으로서 논리적 일관성이 없으나, J.R.의 편지는 성폭행·가정폭행 피해아동의 관점으로 보아야 함.
- ◆ 최초로 강간사실을 말한 대상이 남자친구인 점, 피해사실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는 점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피고인을 사랑하고 아버지로 여김과 동시에, 그를 두려워하고 사건을 떠올리려 하지 않는(block the incident) 피해자의 양가적 태도는 피해자의 나이, 명백한 스트레스, 성폭행피해자가 겪는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일관되지 않은 것이 아님. J.R.의 증언은 분명하고 납득할 만하며, 그녀가 증언하는 사실은 진실함.

13

## 연예인기획사대표 성폭력사건

- ◆ 1, 2심 판결 요지
  - 판단능력 미성숙 : 27살 나이 차이
  - 가정상황 : 부모의 건강, 경제적 형편
  - 첫 성폭력피해 당시의 피해자 상황 : 입원, 첫만남부터 성관계 까지의 시간적 간격
  - 피해자 심리상태 : 성폭력 노출에 대한 수치스러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14

## 1,2심 :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평가

- ◆ 내용만 보면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 있음
- ◆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없는 내용을 적은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 받아들임
- ◆ 강간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해 연민, 애정의 감정은 성폭력범죄 성립과 양립 가능

15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요지

- ◆ 피해자가 구속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 피해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임
- ◆ 첫만남 이후 구속 전까지 보낸 카톡 : 호칭, 헤어지지 말자는 표현 등은 피해자 솔직한 감정표현으로 보임
- ◆ 계속적 만남 : 피고인에게 겁을 먹었다면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계속 만남 유지한 이유 납득 어려움
- ◆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리적,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정

16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에 거의 매일 피고인을 접견하였고, 피고인에게 많은 접견민원서신, 인터넷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은 피해자의 소소한 일상생활 이야기와 함께 ‘피고인을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고맙다, 힘내라’는 내용, 당시 임신 중이던 피고인의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는 내용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만일 자신이 서신을 작성하지 않거나, 서신 용지를 가득 채우지 않거나, ‘피고인을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낼 것으로 짐작하고 피고인의 비위에 맞추어 허위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접견한 횟수나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 서신의 내용, 형식, 즉 색색의 펜을 사용한 것은 물론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하여 꾸미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은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마음에 없는 허위의 감정표현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7

위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공포에 대해 제대로 판단되어 있지 않음

오히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을 볼 때 그 내용은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마음에 없는 허위의 감정표현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위 판결내용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법관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았을 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가지고 있었던 가해자에 대한 공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자 관점에서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봄.

18

## 고등법원 무죄판결의 요지

- ◆ 피해자가 피고인을 접견오지 않거나 서신이 짧은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화낸 바는 없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서신 보내라, 서신을 쓰고 돌아가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서신을 쓰지 말고 가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 자야 한다, 엄마 만나러 병원가야 해서 서신 못 쓸 것 같다는 말을 하기로 한 점
- ◆ 피고인의 강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혀위감정표현이 담긴 서신 보냈다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19

## 대법원 재상고 : 피해자 주장의 핵심

- ◆ 성관계에 대한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려움
  - 연령차이
  - 피해자 성격 및 이성관계에 대한 인지능력
  - 곤궁한 가정형편
  - 피해자 측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 ◆ 피해자가 편지를 보낸 심리적 배경 관련
  - 첫 강간피해 이후의 순응적 태도: 심리학적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강요된 적응현상임
- ◆ 피해자 진술 신빙성
  - 진술의 자발성, 일관성, 구체성

20

## 은희 사례

- ◆ 의붓아버지로부터 3년 동안 성적 착취당함
- ◆ 통제의 방식
  - 피해자의 직장생활 통제
  - 피해자의 취미생활, 이성교제 통제
  - 경제적 지원
  - 엄마와의 재혼유지에 대한 불안감 조성
- ◆ 피해자의 두려움
  - 엄마의 재혼가정 파탄에 대한 두려움
  - 어느 순간부터 자포자기
  - 감정없는 로봇

21

## 합리적 판단, 이성적 실천이 기대 가능한가?

- ◆ 피해자의 연령, 주관적 공포가 기준
- ◆ 피고인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피해자의 감정상태에 비추어 강제력의 요소를 판단
- ◆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발생 이후의 편지, 카톡 내용, SNS에 올린 글의 내용 등은 성폭력판단에 영향 미쳐서는 안될 것임.

22

## 법적 대응

- ◆ 진행사건 : 피해자 관점 강조
- ◆ 예방 : 교육(요람에서 무덤까지)
- ◆ 재범방지 : 위험성 제거 프로그램
  - 성인 범죄자
  - 미성년 범죄자 : 부모교육과 병행

23

## 어떻게 수사해야 하나

- ◆ 아동의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전제
  -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 증거부재로 인한 무기력, 불안감
- ◆ 전문수사관 양성
- ◆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관계

24

## 법, 제도 개선

- ◆ 신종 형사범죄로 입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의미 내포된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화
- ◆ 온라인 서비스 매체의 책무조항
  - Cyber Clean 운동 필요
  - 기술적 조치를 통한 음란물 차단 의무
- ◆ 현행법 보완
  -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소지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명확화

25

## 아청법 2조 5호 개념규정 명확화 필요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로 재 개정할 것 제안
  -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요건 자체가 애매하고 그 기준이 불분명하며, 소지자의 주관적 인식여하에 따라 가별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26

## 의제강간 연령상향 관련 제언

### 아청법 제7조의2 [성인의 16세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초중등학교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 포함)에 대하여 이러한 미성숙성이나 나이로 인하여 숙고할 능력이 제한됨을 이용하거나 16세 미만의 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항 기재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 의제강간 연령관련 입법례

- ◆ 독일 등 유럽국가는, 14세 미만자에 대한 성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독일형법 제176조 제1항), 스위스의 경우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스위스 형법 제187조).
- ◆ 오스트리아는 14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교하거나 성교에 상응하는 성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이러한 미성숙한 나이로 인하여 숙고할 능력이 제한됨을 이용하거나, 16세 미만의 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지만, 행위자의 나이가 형사미성년자보다 3세 이상 많지 않고 성행위 중 삽입이 없었고 범행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의 중상해(제84조 제1항)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인 때를 제외하고 행위자를 벌하지 않고 있다(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 제74조 제1항 1, 제207조b).

28

## 아동은,

### 아동의 의사, 행동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 ◆ 아동, 청소년을 폭력 및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 ‘아동청소년의 성’은 상황에 따라 아동 스스로의 의사와 행동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 ◆ 12세 아동이 40대 성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40대 남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성관계, 사랑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다.

29



30

**“온 세상, 따뜻한 세상”**

**감사합니다.**

**토론문**

#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문**

토론1. 임수희\_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토론2. 박은정\_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토론3. 원민경\_법무법인 원 변호사

토론4. 배복주\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토론5. 윤선영\_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

토론6. 박미혜\_서울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 토론1.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다시 생각하다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들어가며

부끄럽게도 저는, 그루밍(Grooming)이란 용어를 이번 토론회에 초청되면서 처음으로 접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현상이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첫 단계가 이름붙이기(naming)와 이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환기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접하자마자 모종의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토론회 초청문을 통해서, ANNE-MARIE McALINDEN이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개념 하에 ‘그루밍(Grooming)’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접하고서, 이 그루밍이라는 이름붙이기만으로도, 그동안 사법영역이 아동의 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세간의 비난 받아 온 여러 사례들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다소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행 법의 그물망을 피해서 아동의 성을 이용 또는 착취하는 수단으로 동원했던 가해자의 교묘한 행위들이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다소 모호한 다양한 종류의 일련의 관계적 작용이나 행위들이 바로 이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회/법/제도적으로 인지되고 포섭되고 규율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훌륭하고 심도 깊은 발제를 해 주신 세 분의 발제자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에 대한 성보호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토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간의 비난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연예기

획사 대표 사건은, 대법원 2014도9288호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되었다가, 대법원 2015도17068호로 재상고되어 현재 2017. 11. 9.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논의되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매우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관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토론페이지의 내용 중에는 법적인 내용이 아닌 ‘아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닌 제가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아동’에 관한 부분은 미리 아동권익보호학회 곽영숙 회장(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소아정신과 전문의)님으로부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토론페이지를 감수 받고, 코멘트 해 주신 부분은 참고를 위해 각주에 언급하였습니다. 곽영숙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아동<sup>1)</sup>을 상대로 한 성관계에 관한 우리 형벌체계

흔히, 성범죄는 ‘성폭력’ 또는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이러한 용어는 마치 성관계에 어떠한 유형력이나 폭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닌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간과 추행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발달 수준에 따라서는 그 아동과의 성관계나 성적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나 해악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아무런 유형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관계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한 경우뿐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등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초등학생까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민법상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2조에 의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자로 정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

---

1) UN 아동권리협약의 기준이자 우리 아동복지법상의 기준인 ‘아동’, 즉 18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이를 규준으로 삼아, 성보호의 기본적인 대상을 ‘아동(18세 미만자)’로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를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처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나 성매매 또는 관련 강요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아동’은 18세 미만자를 말하는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현행 형사법규 하에서 그루밍에 관한 처벌 가능성

이러한 현행 형벌법규체계에서 그루밍에 의한 아동 성의 이용 또는 착취는 과연 어떻게 처벌 가능할까요?

형법 제305조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은 13세 미만자뿐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연령의 아동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즉 미성년자라면 고3까지이고 아동이라면 고2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중학생들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포섭시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 282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sup>2)3)4)</sup>.”고 극히 좁게 해석하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기는 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조건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인 이상 그것이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같은 취지의 따름 판례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정신지체 장애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2014전도151 판결 (정신 장애인),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13세 내지 15세), 모두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에 부합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서 성관계를 하는데도 막상 피해자는 가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게 해야 하므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sup>5)</sup>

‘위력’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위력으로써’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문언만으로는 그루밍에 의한 일정한 경우는 여기 포함될 수 있을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위와 같은 판시를 하면서 ‘위력’에 해당된다고 유죄로 판단한 예는 어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사례들입니다.<sup>6)</sup> 따라서 과연 그루밍에 의한 아동 성관계 사건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또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을지 여부나 유죄판결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모호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sup>7)</su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제8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하는 경우(제1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경하다),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제14조 1항 2호 전단), 업무·고용

고 보았습니다.

4) 이에 대한 비판 : 김성천, “청소년의 성보호”, 중앙법학 제7집 제3호 (2005. 10.), 76-78., 조국,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통권69호) (2016. 겨울), 116-117., 이덕인,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통권69호), (2016. 겨울)

5) 학자들 중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한다고 속여서 환자는 진료인 줄 알았지만 의사가 성관계를 한 경우라든가, 거의 유아 수준이어서 성관계를 하면서도 성관계의 의미 자체를 잘 모른다던가 하는 기이한 경우를 든 예가 있습니다.

6) 2004도5868 사건은, 17세 여아가 남자친구 아버지로부터 팔을 꽉 잡히고 힘으로 옷을 벗겨 성관계를 당한 사례입니다. 같은 취지의 따름 판례들은 다음과 같으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17세 여아를 차에서 누르고 성관계),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체구가 큰 27세 남자가 15세 (48kg)인 여아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몸 위에 올라가서 성관계)

7) 이 ‘위력’과 관련하여, 아동권익보호학회 곽영숙 회장(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사전 코멘트를 받은 바에 의하면, “위력의 의미는 신체적 우위의 힘뿐 아니라 심리적 우위의 힘, 다시 말하면 사랑과 관심, 보호를 원하는 아동은 근본적으로 어른에 대해 심리적 지위에 의존하는 하위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루밍은 심리적 우위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사랑이나 관심, 보살핌으로 혼동하게 하는 속임수, 조정행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어떠한 성적 행위라도 그 행위는 당사자 어른의 욕구 충족이 근본 이유라는 점이다. 아동을 위한 행동으로 ‘사랑의 행위’로 포장하여 아동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므로, 아동에게는 이중의 상처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시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제14조 1항 3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시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제14조 제3항)의 처벌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자에 대한 그루밍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으로는 그루밍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17조 2호)’에 포함되는 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처벌조항은 제71조 제1항 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로서는 1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그루밍에 의한 성관계의 경우, 위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형법상 미성년자의 제강간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저연령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성관계가 위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sup>8)</sup>

그러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다’는 문언이 아동과의 성관계 일반을 포섭할 수 있을지 의문은 있습니다. 아동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루밍을 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구성요건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만 남게 될 것이므로, 아동과의 성행위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항변과 그 아동이 스스로 원해서 성행위를 한 것이라는 항변은 늘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과연 저와 같은 구성요건으로 그루밍에 의한 아동의 성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보호법익

그렇다면 위와 같은 현행 형사법규들로써 앞서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형태의 그루밍에 의한 아동 상대 성 이용/착취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충분하고 근원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법규 체계 내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는 경우

8) 인천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노33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에서, 31세 학원 여강사가 13세 남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에 성매수자의 상대방이 아니면서 그루밍에 의한 동의 성관계를 통해 상대 성인의 성욕충족의 수단으로 이용 내지 성착취를 당한 경우, 그 상대 성인을 처벌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 규정의 구체적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채팅앱 등을 통해 성인들의 성 상대로 손쉽게 이용되는 상황과 환경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13세 이상, 즉 중학교 1학년 이상의 저연령 아동들은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만한 근거 규정으로 어떤 처벌 법규를 들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컨대 만약 성인이 채팅앱을 통해 13세, 14세, 15세의 중 1 내지 3학년 아이를 꼬여 내어 따르게 하고 모텔에 데려가 1회적 성관계를 한 경우에 현행 형사법규 중 과연 어떤 구성요건을 적용하여 기소나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종래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겨온 통상의 영역들, 특히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맡긴다고 보아 온 영역들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성범죄 처벌법규들을 아동의 성보호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주로 입법론적으로)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저는 과연 성범죄의 보호법의,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보호법의 무엇일까, 또는 무엇이어야 할까를 근본적으로 짚어 볼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성범죄의 보호법의, ‘여성의 정조<sup>9)</sup>’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옮겨왔고, 사실 그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호법의 옮겨온 과정을 보면, 사실 여성의 성을 단지 가부장이 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다가 겨우, 그 성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선택의 자유’ 정도는 여성에게 넘겨 주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범죄의 보호법으로 보게 된 것이 ‘여성의 정조’ 보다 나은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성범죄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적합한 틀

9) 우선, 형법은 1953. 9. 18. 제정 당시 성범죄에 관한 제2편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였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된 것도 2012. 12. 18.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해 오다가 2013년경에 이르러 판례를 변경하여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시작하였는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나마도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에 우리가 도달한 것인지 의문은 남습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좁은 관점에서만 성과 성행위를 바라 보면,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상대가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지 않았다’<sup>10)</sup>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모든 성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게이트 역할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이’ 성‘행위’만 ‘동의’ 내지 ‘노! 라고 하지 않으면’ 그 성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의 성을 전인격적인 행위로서의 상호 작용이나 인격의 일부로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행위’만을 ‘성’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만으로 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그러한 시각에서라면 예컨대, 왜 성매매가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행위는 인간의 인격적 행위이기 때문에, 아동은 물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방법, 성행위에 동반되는 수단이나 관계의 양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당할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통합적인 한 인간의 인격의 침해로 파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돈을 대가로 성을 제공하게 될 때 그 인격이 손상 또는 침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설령 그 ‘하겠다’는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국가가 그 당사자의 인격의 일부인 온전한 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를 처벌하는 형태로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sup>11)</sup>

아무튼 현재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성범죄 전반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바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의 틀입니다만, 더욱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이러한 틀로 접근하면 결코 해법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국면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관해서 보면, 자기 몸을 탐색하는 것은 유아기부터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춘기 전에도 얼마든지 성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는 성적 행위 또는 성행위를 할 수 있고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에 몸은 외형적으로 다 성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뇌는 평균 18세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자라고 호르몬도 요동치기 때문에, 아동의 성적 탐색과 배움은 단지 신체적으로 생식기

10) 아동권익보호학회 곽영숙 회장(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사전 코멘트에 의하면, “특히 아동은 어른에게 순응하도록 양육 내지 교육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11)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성범죄가 단순히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이 아니라, ‘인격의 중요한 일부로서의 성’ 자체가 보호법의 틀로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형벌법규를 통해, 신체도 보호하고 인격의 일부인 명예도 보호합니다. 몸에 사소한 흠집을 내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고, 인격의 일부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말 한마디, 욕 한마디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 인격의 일부인 성은, 성 자체를 인격의 일부로서 통합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성행위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로만 좁게 보호하려 하는 걸까요? 그동안 장애인이나 아동, 기타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영역이 제대로 규율/통제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좁게 보호법의 틀로 보는 것에 그 근원적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 다 자라서 성관계가 가능해 졌다는 것으로 일천하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아동들은 성장이 빨라져서 10세 내지 12세 무렵에 생식기 등 신체적으로 성장이 완료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뇌는 여전히 18세 무렵까지 계속하여 자라는 과정에 있으므로, 어떤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 또는 그 결과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것인지 등에 관해 온전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며 이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단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성관계 능력이 아니라, 뇌가 계속 자라고 완성되면서 자신의 성을 조절하고 결과를 책임질 수 있으며 장차 배우자 등과의 관계를 성숙하고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실제적인 배움의 과정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아기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의 몸과 성을 탐색/실험/시도해 나가고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과 단계에서 발달 수준에 맞게 아동의 자기결정과 의사의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이 자신의 성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탐색해 갈 수 있도록 교육/지도받고 또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즉 그러한 탐색과 성장 과정에서 건강하게 실험/시도할 기회가 실제로 주어져야 하고, 그에 부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어리석은 결과들이 포용될 수 있어야 하며 만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우기 하지 않기 위한 교육과 적절한 지도, 감독, 보호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부모, 사회,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는 아동을, 성인 또는 연령차나 지위차가 큰 다른 아동이 손쉽게 자신의 성욕충족의 대상으로 이용하여 그 아동의 온전한 성적 발달을 해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이러한 성장과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성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자기 결정’, 그것도 단지 ‘지금 이 섹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권만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는 아동의 성, 나아가 아동의 인격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아동의 성과 관련하여 형별법규들이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아동의 성’의 ‘건강하고 온전한 발달(development)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온전하고 건강한 성적 발달과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 단계, 수준에 맞게 그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과 의사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sup>12)</sup>

다른 한편으로 성은 도덕의 관점, 가부장적 정조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한 인간의 인격의 중요한 영역 내지 요소이고, 성적 행위나 성행위는 한 인간의 전인격의 발현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아동의 성행위는 단지 아동이 ‘특정 삽입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만으로, 팬찮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기초로 성적인 활동과 생활 내에서 아동의 ‘그 성행위’가 그의 ‘건강하고 온전한 인격발달’의 중요한 한 요소를 이루는 ‘온전한 성 발달’에 어떤 영향 또는 해악을 미치는 가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아동복지법위반사건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설시를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아동의 성의 건강하고 온전한 발달과 성장’으로 보게 된다면, 그루밍에 의한 아동과의 성관계가 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명확해 진다고 봅니다. 나아가 개별, 구체적 행위태양별 규제가 아니라, 연령 등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성인에 대하여(로미오와 줄리엣법과 같은 예외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과의 성관계 일반을 제한하고 금지를 선언해 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의학적 근거에 관한 설명을 배승민 교수님 발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가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아동의 성의 건강하고 온전한 발달과 성장’으로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 아동이 13세 미만으로 제한될 이유가 없고, 당연히 아동, 즉 18세

12) 사실 우리나라 많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칙으로 학생들의 연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머리길이나 모양도 정해 줍니다. 그러한 영역에서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고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성’에 관해서는 13세 이상이라면 너 스스로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 안기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만자는 모두 보호대상으로 포섭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인 만 13세가 ‘원칙적으로’ 아동 기준 연령인 18세 미만<sup>13)</sup>까지 상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위 로미오와 줄리엣법 등으로 예외적인 상황 등을 규정 내지 보완하는 조정을 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구상 대다수의 나라들이 최소한 16세를 성관계 동의연령으로 보고 있고<sup>14)</sup>, 우리나라와 같은 13세 기준인 일본도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육성조례 대부분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음행을 처벌하며<sup>15)</sup>, 심지어 북한 조차도 15세를 동의 연령으로 보고 있는 점<sup>16)</sup>에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기준 연령인 만 13세는 지나치게 낮고<sup>17)</sup> 아동의 성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현재 성범죄 중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관하여는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이라고 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13세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으로서는 현재 주어진 법체계 하에서 위와 같이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13세 이상 18세 미만자도 아동인 이상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이를 당연히 1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관하여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국가와 국회는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

13) 미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아호, 노스다코타, 오리건, 테네시,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의 경우 18세를 성관계 동의연령으로 하고 있다; 김한균,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54호) (2013. 봄), 6.

14) 김한균, 위의 글, 6.

15) 김승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에 대한 법해석 비판: 대법원 2014. 11. 13. 2014도9288 판결을 중심으로”, 이화젠 더법학 제7권 제1호(2015. 6.), 149.

16) 김한균, 위의 글, 6.

17)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 극소수입니다.

가 생각됩니다. 18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놔가 자라고 있는 한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은 모든 아동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루밍에 의한 아동 성범죄로부터 아동의 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제강간 연령 자체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써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305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반 형법 조항에서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 형법 제305조 개정에 관한 국회 발의안

18대 국회에서, 2010. 12. 23. 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378)으로 13세 이상에 관하여도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의 형법 제305조 개정안<sup>18)</sup>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2012. 9. 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590)<sup>19)</sup>이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의 연령 자체를 16세로 상향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sup>20)</sup>,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현재, 김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788)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형법 제305조 중 “13세”를 “16세”로 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조화를 이루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2016. 7. 11. 접수되어, 2016. 7. 12.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 11. 8.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결과 상정되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sup>21)22)</sup>

18)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서, 13세 미만은 무조건적 보호,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그 신뢰관계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양육, 교육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 16세 이상 19세 미만은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

19) 13세를 16세로 상향하고, 16세 이상 19세 미만은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처벌.

20)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규정과의 균형상 적어도 14세로는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 조국, “19대 국회 의원발의 형법개정안 검토”, 형사정책 27권 1호 (2015. 4.), 44-45.

21) 의안정보시스템 중 해당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종래 계속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상향 논의가 있어 왔고 그에 따른 법안 발의도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 발의안이야 말로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성보호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보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특히 그루밍을 규율하기 위하여도 현재 특별법 등의 입법을 고려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형법 개정안의 내용(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과 통과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마치며

보호법의 얘기를 다시 부언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아동을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저는 아동은 태어나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봅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동이 아니라, 아동은 단지 발달의 단계와 과정에 있을 뿐 그 단계와 과정에서 그 자체로 고유한 완전성을 가졌으며 존중되어야 하는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년에 이르기까지 각 고유한 인격이 조화롭고 완전하게 발현하도록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켜 주기 위해 보호하는 것이지, 아동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고 모자라서 선택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실수하고 실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온전히 주기 위해서라도, 성인이나 연령/지위 격차가 큰 다른 아동으로부터 성적 이용/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동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은 물론 13세 이상의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볼<sup>23)</sup>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도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른 성적 탐색과 자기결정의 자유가 있고 그 의사와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상대방의 아동에 대한 건전한 성발달을 저해하거나 성욕충족수단으로의 이용 내지 착취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F6S0J7M1Y1N0Y9Z4I9R5V0K7K0V0](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F6S0J7M1Y1N0Y9Z4I9R5V0K7K0V0)

22) 한편 2016. 7. 1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830)은 동법상 가중처벌 대상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인데, 이는 '가중처벌'만 가능할 뿐 13세 이상 아동과의 성관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 공백 부분을 메워 주지는 못한다.

23) 이러한 견해는; 이덕인,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통권69호) (2016. 겨울), 273.

다. 즉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결국 성인이 자신의 성 상대로 손쉽게 아동의 동의 의사를 취하고 보호책임을 아동 자신에게 떠넘겨 버리는 방편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운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아동이 어떤 경위에서 어떤 상태로 특정 성행위에 응하였는가 만을 범죄 여부 판단의 주된 관심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행위 그 자체, 즉 상대 성인이 아동을 자신의 성 상대로 이용/착취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하고 온전한 성 발달과 성장에 침해 내지 위해를 끼쳤는가가 판단의 대상(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아동의 건강하고 온전한 성발달을 저해할 위험있는 연령 또는 발달 수준의 아동 일반에 대한 성인의 성관계 시도 자체에 대해 아동 성보호 관점의 규제적인 접근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우리 보다 성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알려진 여러 선진국에서 오히려 이러한 방식으로 아동의 성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상향을 통해 이러한 최저수준을 일반 형법에서 설정해 두고, 아동법이나 아동복지법 상의 규정들을 보완 입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루밍에 의한 아동 성범죄에 대응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부족한 견해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토론2. ‘그루밍(Grooming)’에 의한 성범죄 대책

박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I. ‘그루밍(Grooming)’에 의한 성범죄(발제문 검토)

일명 ‘그루밍(Grooming)’이라는 용어는 국내 법률상 정의된 바가 없고,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영국 성범죄법(2003)】

15. 성적 친밀감 형성을 위한 일련의 모든 행위(그루밍 등)를 수반하는 아동과의 만남
  - (1) 18세 이상의 자(A)는 다음에 해당하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 (a) 그 전에 적어도 두 차례 다른 사람 (B)를 만났거나 의사소통한 때
      - (i) 고의로 B를 만나거나,
      - (ii) 세계 어느 지역에서 B를 만날 의도로 여행하는 때
    - (b) 그 당시 그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 만나는 도중에 또는 후에 B에게 또는 B에 관하여 관련 범죄를 포함한 어떤 것을 하고자 의도하고,
    - (c) B가 16세 미만이며,
    - (d) B가 16세 이상이라고 A가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때
  - (2) (1)에서,
    - (a) B와 만났거나 의사소통한 A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 B를 만났거나, 세계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B와 어떤 수단에 의하여 의사소통을 하였던 A를 의미한다.
    - (b) “관련범죄”란
      - (i) 이 부에서의 범죄
      - (ii) 부칙 3조 61 내지 92의 어느 하나의 범죄
  - (3) 생략
  - (4) 이 조에 의항 유죄인 자는 다음에 처한다.
    - (a) 약식기소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법정 최고액을 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또는 병과한다.
    - (b) 정식기소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외국 학자인 Anne-Marie Mcalinden의 새로운 정의규정<sup>24)</sup>이 시사하는 바는 세계적으로 그루밍을 수반한 성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무상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이러한 그루밍을 수반한 성폭력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친족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폭행, 협박 등의 유형적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는 구조로 가해지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제문에서는 그루밍을 수반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외국과 국내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Kehoe v. Chanler 사건은 친족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양가감정에 입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으로 피해의 발고가 늦고, 가해자에 대하여 친밀한 표현을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입증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실관계들을 어떻게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사례인 연예기획사 사건은 많은 여성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법원에 대하여 엄벌을 촉구했던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전형적으로 ‘그루밍’을 수반한 성폭력범죄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매우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였던 구조를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사실심인 1심과 2심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러한 관점에서 제대로 판단하였고, 법률심에 불과한 대법원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배척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주변에 알리지 않고 계속 만남을 유지한 점을 판단근거로 삼는 것은 발제자의 지적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사례의 경우 국내의 친족성폭력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엄마의 재혼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피해 사실을 발고할 수 없었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한 논의의 지점이 된다.

그루밍을 수반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은 발제자의 지적대로 전문성을 갖춘 검사, 수사관, 재판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 현행 법률에서 처벌할 수 없는 범위의 그루밍 수반 성범죄에 대하여 신종 형사 범죄로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동감한다. 특히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유

24)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정 기술을 사용하는 것’ 「Grooming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인하는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그루밍 수반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입법화 하는 형식으로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의제강간 피해자 연령상향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16세로 상향하자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소년범들의 중대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소년법 폐지 주장과 맞물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편이다.

## II. ‘그루밍(Grooming)’ 수반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의 처벌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에서는 2008년 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이 규정의 신설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인단계에서 성매수자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처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었다.

이 규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상청소년을 유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루밍을 수반한 성범죄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규정의 도입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법률 당시 영국의 국무총리실 산하 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에서 단속하는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영국 성범죄법 2003 제15조)을 참고로 입법안이 마련되었다. 영국의 경우 전국을 관할하는 CEOP에서 경찰관이 함정수사를 통하여 그루밍 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런던경찰서로 신속히 이첩하여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90%이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 인터넷을 통한 그루밍 행위(유인행위) 단계에서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발제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그루밍을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어리고, 사리분별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배하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인 가해자가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

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루밍을 수반하여 성폭력에 이르고 반복적인 피해가 지속되는 것 이 통상적이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수사는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투입되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상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의 활용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참고로 2011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기소한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내고, 피해자 진술을 철저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소장을 작성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한 사례가 있다.<sup>25)</sup>

#### 다. 피해자 보호의 제 문제

그루밍을 수반한 성범죄에서 피해자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우선 판단능력이나 사리 분별력이 낮고, 사회·경제적으로도 가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조사기법과 재판 및 가해자의 처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통일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 성폭력 관련 법령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국선변호인 선정, 진술조력인 지정,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의 조사기법이 규정되어 있고, 경찰,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재판 단계에서 증인보호 프로그램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실무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2013년 UNODC에서 발간한 「여성폭력에 대한 검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Handbook on effective prosecution response to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sup>26)</sup>에 나와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취약한 피해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지를 시사해 주는 사례가 있다.<sup>27)</sup>

25) 별첨 영월지청 공소장 참고

26) 2013. 12. 성폭력전담검사 13명이 번역하여 번역본 발간

27) 별첨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 판결 참고

#### IV. 결어

그루밍(Grooming) 수반 성범죄는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피해자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의 개정과 수사 및 재판 관계자들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Mugridge v S (657/12)[2013] ZASCA 43 (2013. 3. 28.)

입양한 미성년 딸에 대한 성적 학대와 관련하여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Mugridge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항소와 그 선고가 이루어졌다(징역 1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든 상황과 행동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주관적으로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호도한 것이고, 사실 그녀는 그에게 스스로를 바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것은 항소심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는 그녀가 7살이었을 때, 교회의 수석 목사였던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15세가 되던 해에 정식으로 입양되었다. 입양되기 전, 피해자는 Mugridge가 자신이 샤워할 때나 일기를 쓸 때 이를 촬영할 수 있는 간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비밀을 공유하고 심지어 함께 레스토랑에 함께 가면서 관계는 점점 더 친밀해져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인 모르게 비싼 옷, 신발, CD 등을 선물로 사주었다. 마침내 Mugridge는 부적절하게 그녀를 종종 만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항상 그것은 사고였다고 하면서 사과하였다. 이것은 마약과 술을 이용한 성행위로 발전하였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에 동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를 확정적 범위를 가졌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다. 법원은 동의 문제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취약성 및 일반 상식을 포함하여 범행 당시 존재하던 전후 사정 및 그러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그녀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자가 생각한 것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할 만한 어떤 특정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천천히 사육하여 종국에는 피해자를 굴복시킬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어떠한 침묵도 동의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원은 동의는 적극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저 복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모든 제반사정은, 수동성이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는지, 드러내거나 실현하는 것이 두려워 성 행위에 대한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쓸모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단지 외적인 저항의 포기인지 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한다. 아이들과의 성적인 관계의 맥락에서는, 동의의 어떠한 외형에 관해서도 그러한 동의를 한 사람이 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특별한 주의와 함께 고도의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의 불평등은 어떠한 성관계에 대한 아이의 분명한 동의의 구조, 본질, 범위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법원은 또한 아이와의 장기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설계된 어떠한 행동도 성적으로 관계된 행동이거나 성적으로 길들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 South Africa

### Mugridge v S (657/12)[2013] ZASCA 43 (28 March 2013)

The appeal by Mr. Mugridge on his conviction on several charges relating to the sexual abuse of his adopted minor daughter (rape, indecent assault and crimen injuria) and the sentence imposed on the charge of rape (15 years). He argues that the complainant consented to the acts and in any event, he argued that he had subjectively believed that she had. He claimed further that she was in fact the one who had misled him and offered herself to him. The trial court rejected that argument and it was not challenged under the appeal. The court of appeal dismissed his appeal.

The complainant started to live with the appellant, who was a senior pastor of a church, when she was 7 years old and was formally adopted at the age of 15. The year before the adoption, the complainant discovered that Mugridge had installed a hidden video camera that could record images of her when using the shower as well as checking her diary. The relationship grew more intimate, with them starting to share secrets and even going to restaurants together. He regularly bought her gifts (expensive cloths, shoes, CDs) which were hidden from his wife. Eventually Mugridge came to frequently touch her inappropriately. He always apologized after claiming it was an accident. This evolved into sexual acts, use of drugs and alcohol. At trial, the court dealt with the evidence holistically in finding that the complainant did not consent to the acts and that the appellant had the requisite mens rea to commit same. The court rejected his defence as to consent by evaluating the complainant's behaviour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 that existed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including the vulnerabilities of the complainant and the application of general logic. The court noted that, on the facts, the complainant had not displayed any particular conduct which indicated her lack of consent over and above her objectives. However, any perceived acquiescence could not be construed as consent, as the appellant had slowly groomed her to ensure that she ultimately submitted.

The court noted that the consent to be active, and therefore mere submission is not sufficient. All the circumstanc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to determine whether passivity is proof of implied consent or whether it is merely the abandonment of outward resistance which the women, while persisting in her objection to intercourse is afraid to display or realize is useless. In the context of sexual relations involving children, any appearance of consent to such conduct is deserving of elevated scrutiny,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be paid to the fact that the person giving the consent is a child. The inequalities in the relationship is of great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construction, nature and scope of the child's apparent consent to any sexual relations. The court also noted that any behaviour that is designed to build up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a child with the longer-term goal of involving the child in some sexually related act or acts could constitute grooming.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1. 4. 14.

**사건번호** 2011년 형제 호

**수신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제 목 공소장

검사 ○○○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 (55XXXX-XXXXXX), 55세

**직업** 무속인,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경북

**죄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무고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156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2011. 4. 1. 구속 (2011. 3. 29. 체포)

**변호인** 국선변호인 변호사 □□□

### II. 공소사실

#### 1. 피고인과 김○○의 관계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김○○의 친어머니인 김△△이 남편 김△△의 외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08.경 별거를 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충북 제천시(그 후 경기 구리시로 함께 이사하였다)에서 김△△과 동거하면서 무속신앙 등을 가르치던 사람이고, 김○○은 친아버지인 김△△와 함께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김△△의 집에서 살면서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수시로 친어머니 김△△이 있는 제천과 구리의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친족, 동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사전에 저지하고 별다른 물리적 폭력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이른바 ‘피해자 길들이기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①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기 ② 피해자와 친밀한 행동 함께 하기 ③ 신체적 접촉에 둔감하게 만들기 ④ 아동·청소년을 고립시키기 ⑤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하도록 하기 등을 통해 진행된다.

한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징적 징표는 ① 애정궁핍 ② 내성적인 성격 ③ 소외 ④ 따돌림 ⑤ 자신감 상실 ⑥ 사람들에게 잘 속는 성격 ⑦ 순응하는 성격 ⑧ 타인의 기분에 맞추려는 성격 ⑨ 편모 가정 ⑩ 방치 등이 있다.

또한 피해자 길들이기 과정 중 ‘신체적 접촉에 둔감하게 만들기’ 과정은 ① 간지럼 태우기 등 자연스럽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한 수 있는 물리적 접촉을 통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접촉 유도 ② 신체적 접촉을 통한 피해자 반응 살피기 ③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기 등을 통해 진행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17세)이 수시로 피해자의 친어머니 김△△과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는 충북 제천시 및 경기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위 김△△을 통해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친할아버지로부터 ‘개만도 못한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들으며 멸시를 받아 왔고, 피해자의 친아버지는 잣은 외도 및 도박 습성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친어머니 또한 식당일 등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다소 외모가 낫고 학업성적도 비교적 우수한 동생과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왔으며, 다소 얼굴이 크고 허벅지 등이 통통한 자신의 외모에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시골에서 자란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보문고 본점에 데려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병아리’라는 친밀감 있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운명

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게 만든 다음, 평소 잣은 소화 불량 증상을 겪고 있으며 다소 퉁퉁한 외모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기치료를 하게 되면 혈의 순환이 잘되어 소화도 잘되고, 얼굴도 가름해지며, 허벅지도 날씬해진다”고 속여 수시로 피고인의 집에서 기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 각 부분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피해자 길들이기 과정을 거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이를 피해자의 친모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먼저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경우 간음에까지 나아가기로 마음먹고,

가. 2010. 9.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김○○(여, 17세)에게 기치료를 한다고 속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왼손으로는 배를 주무르는 시늉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전항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치료를 한다고 속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왼손으로는 배를 주무르는 시늉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위와 같은 2회의 추행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표해왔던 피고인의 친밀한 감정, 평소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 왔으며 피해자를 친손녀보다 가깝게 대해 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무속인으로서의 경외감 등으로 인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치료를 한다고 속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귀를 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몇 번 문지르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전항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치료를 한다고 속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귀를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몇 번 문지르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3. 무고

피고인은 2004. 경 친구와 동업으로 육류 수입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사업경험 및 자금의 부족으로 부도를 맞게 되자 이에 따른 신한카드 및 비씨카드 신용카드 대출 채무 약 1,000 만원이 연체 상태에 빠지고 이를 갚기 위해 진흥상호저축은행에서 약 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또한 갚지 못하였으며 그 무렵 자신 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대출금 4,000만원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위 주택도 매각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 후로도 위 신용카드 대출채무 등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아 오던 중, 2008. 10. 16. 경 ××파이낸셜에 신용대출을 받으려 시도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이마저 무산되자 2009. 3. 27. 경 법무법인 ○○에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을 하였으나 파산신청 비용 140만원도 마련하지 못하여 파산신청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이 성적으로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고, 김○○의 친아버지 김△△가 현직 경찰관으로서 자신 명의의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으며 김○○ 또한 자신의 친어머니인 김◇◇이 위 김△△의 잣은 외도 및 도박습벽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김△△가 김○○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에까지 이르게 되자 이에 격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김○○에게, 사실은 김△△가 친딸인 김○○을 장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김△△가 김○○을 장간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김○○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하도록 마음먹게 한 다음, 마치 김○○이 위와 같은 친아버지의 성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속세와 연을 끊고 불가에 입문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김○○을 경북 ××군 소재 사찰에 머물게 하고, 김○○의 친어머니 김◇◇에게도 갑자기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이를 믿도록 만든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김◇◇으로 하여금 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하도록 하여 김△△

를 무고하고 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김○○이 겨울방학을 맞아 경기 구리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 와 머물게 되자 김○○의 친어머니 김◇◇에게 “김○○이 몸에 잡신이 많아 자주 아프니 전국의 신당 등을 찾아다니며 잡신텔기를 하겠다”고 속여 김○○과 함께 신당 등에서 수련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0. 1. 13. 경 강원 강릉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면서 김○○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다음 날 경북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김○○과 투숙하고, 2010. 1. 15. 경북 군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면서 김○○에게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가 원하는 음악공부도 할 수 있고, 대학원에도 보내 줄 수 있다. 절에 들어가면 음악공부를 할 수 있으니 절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김○○을 유인한 다음, 그 다음 날인 2010. 1. 16. 경 경북 ××군 소재 ‘제2석굴암’이라는 사찰로 김○○을 데려가 김○○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사찰 주지스님에게 “절에 들어 와 공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11. 경 김○○이 강원 ▽▽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다시 경기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와 머물게 되자 김○○으로 하여금 재차 절에 들어 가 공부하겠다고 다짐하도록 한 다음, 김○○의 친어머니 김◇◇에게 김○○을 절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2011. 2. 26. 경 자신이 운전하는 37어970○호 그랜저 승용차에 김○○을 태워 경북 ××군에 있는 ‘제2석굴암’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김○○에게 “너는 이제 아빠에게 성폭행 당한거야. 처음은 네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쯤이야. 아빠는 항상 네가 아픈 날만 골라 널 건드렸어. 심한 날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어”라고 말하자, 김○○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무고하려는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계속하여 김○○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그치듯이 “너 아빠한테 강간당한 것 맞지?”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강요하여 김○○이 마지못해 “예”라고 하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함으로써 김○○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는 방법으로 김○○과 함께 김△△를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군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김○○과 투숙하여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그 다음 날인 2011. 2. 27. 김○○을 위 ‘제2석굴암’으로 데려가 사찰 입소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게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김○○의 친어머니 김◇◇에게 전화를 하여 “네 딸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김

◇ ◇ 이에 격분하여 “당장 정선에 있는 김○○의 친아버지 김△△를 찾아 가 따지겠다”고 하자 그 즉시 강원 정선군으로 모이기로 한 다음, 김○○을 위 승용차에 태워 강원 정선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하여 김○○에게 “너는 아빠에게 성폭행 당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김○○으로 하여금 자신의 친아버지를 만난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전 범행 계획 및 공모 과정을 통해, 사실은 김△△가 자신의 친딸 김○○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김◇◇에게 “너의 딸이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여 김◇◇으로 하여금 2011. 3. 16. 13:30경 강원 춘천 시에 있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김△△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위 ○○○에게 제출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경찰청 사무실에서 김△△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의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장 ○○○에게 “친딸인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김△△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하고, 피고인 자신도 같은 날 13:50경 위 경찰청 사무실에서 김△△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의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청 소속 경장 ○○○에게 “피해자로부터 친아버지 김△△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김○○은 같은 날 20:40경 경북 ××군에 있는 ××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김△△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의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에게 “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처음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무렵이고, 대부분 제가 몸이 아파 집에서 쉬고 있던 날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심한 날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 날이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지금 특정할 수 있는 것은 6회 정도로 기억한다. 현직 경찰관인 친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III. 첨부

1. 긴급체포서 1부
2. 구속영장(체포된피의자용) 1부
3. 구속기간연장결정서 1부
4.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1부

검사 (인)

## 토론3. 그루밍이 아동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 1. 들어가는 글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그루밍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그 중요성에 비해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토론자 자신도 금번 토론회를 통해 비로소 그루밍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국제사회의 노력, 법제화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에는 자칫 아동·청소년에 의해 성적행위가 시작되었을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발생의 책임소재를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에게 돌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

그루밍은 비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상황(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등)의 전 과정(준비단계와 지속단계)에서도 감지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그루밍 당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는 ‘왜 단둘이 만났느냐’, ‘왜 모텔(기타 위험한 장소)에 따라갔느냐’, ‘폭력이 지속되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폭행이 지속되는데 왜 헤어지지 않았느냐’, ‘가정폭력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으면 피해자 상담소에 찾아 도움을 받거나 이혼절차를 밟지 왜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다가 (남편)살해에 이르렀느냐.’는 등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비난에 동참하게 될 지 모른다.

따라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발생원인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루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성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협약(란사로테 협약)’은 제36조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이 아동 권리와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루밍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성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많은 범죄에서 가해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의 영향

탁틴내일연구소의 온라인그루밍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높은 비율의 아동 ·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낯선 이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만으로 우정과 연애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듯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계획하는 범죄자들에게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피해자를 모색하고 성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또,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활적으로 큰 사건을 겪은 경우나 겪지 않은 경우의 아동 · 청소년들 모두 인터넷을 통한 그루밍에 쉽게 노출되고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아동 · 청소년기는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목 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가 팽창하는 시기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 인지적 ·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그루밍을 통해 성적 목적을 충족시키려는 가해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시기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아동 ·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에게 그루밍 당한 뒤 접촉 · 비접촉 성적 학대를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에는 1:1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온라인의 속성으로 인해 아동 · 청소년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접촉이 시작되고, 피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피해가 지속 · 확장되는 피해의 연속선에 놓이게 된다. 온라인 그루밍을 이용한 성범죄 중에는, 아동의 개인정보와 신체 이미지를 확보한 뒤 신체 이미지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아동에게 이미지 삭제를 이유로 만남이나 돈을 요구한 뒤 성폭력을 지속하여 아동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배범위에 넣고자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가해자들이 아동, 청소년의 수치심과 또래, 가족관계의 파괴를 협박할 때, 이러한 협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피해자는 없을 것이다.

## 3. 그루밍 과정 몰이해로 인한 피해의 왜곡

아동 · 청소년이 그루밍 과정을 통해 성범죄의 피해를 겪은 뒤 가까스로 범죄의 덫에서 빠져 나오더라도 그루밍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를 인정되지 않거나

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였다는 비난이 가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아동, 청소년이 그루밍 이후 피해를 겪는 다양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덫을 벗기지 못하고, 그 덫에 가리워 사건을 해석하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왜곡하게 된다.

성학대,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스스로 찾아간 것 아니냐고 하면서 그루밍 과정에서 주고받은 온라인 대화에 기반하여 아동, 청소년과 성인 남성간에‘연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오히려 성인 남성과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지속하면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아동 · 청소년을 비난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 4. 결론

탁틴내일연구소의 제안과 같이, 아동에 대한 그루밍에 의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및 처벌하기 위해 외국의 수사기법과‘란사로테 협약’,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EU조정지침’, ‘사이버범죄협약’ 등 국제 협약 등을 참고하여 국내 법을 보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함께 아동 · 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현대 대중 문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함께 실제로 발생하는 상당수의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아동, 청소년의 주변(가정, 학교, 학원, 또래, 선후배)에서 발생하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예방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응전략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공중보건접근법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아동, 청소년들에게 ‘리스크 행동’을 경계하도록 교육하고 것이 현재의 ‘위협적인 개인’에 대한 주의를 넘어선 사회적인 각성을 불러올 수 있다(McAlinden, 2006)고 제안하고 있다. 아동들에게 적절한 행동 및 개인적 경계(personal boundaries), 자존감 및 타인에 대한 존중, 성보건, 성과 성정체성 및 건강한 대인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동의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상적이고 수용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길러주면, 잠재된 위협을 통제함과 동시에 ‘그루밍’ 행위에 대한 기회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건강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연령에 적합한 안전한 온라인 활동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금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 법무법인 (유) 원, 변호사

앤 마리 맥앨린든(2012), '그루밍'과 아동 성학대: 기관, 인터넷, 가족 차원, 옥스퍼드대학  
교 출판부/ Anne-Marie McAlinden(2012), 'Grooming'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 Institutional, Internet, and Familial Dimensions, OXFORD UNIVERSITY  
PRESS/탁턴내일(ECPAT Korea) 번역

## 토론4.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에 대한 토론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발제자가 밝히고 있듯이 그루밍 과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다양하기도 하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 과정상의 통제경험이 불일치한 경우도 있다. 성폭력 피해 전체 과정에서 그루밍의 단계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현행법에서 한계가 있기도 하다. 성적침해를 목적으로 한 것을 입증하거나 그 가능성이 인지되었다고 곧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적자기결정 능력 혹은 성적 합의에 불완전성을 가진 사람의 성적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사회인식과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제자는 결과적으로 성적 동의 연령 기준을 상향(만 18세미만)함으로서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연령 및 인지능력의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능력이나 자기옹호능력에 대한 지점과 연령 및 인지능력의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취약함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지점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토론자는 그루밍에 대한 판단의 문제와 지적장애인에게 드러나는 그루밍에 대해 의견을 덧붙임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 그루밍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발제자는 “그루밍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루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목적이 성적인 착취를 하기위함이라는 것과 ②성착취 대상의 취약한 환경을 이용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두 가지 요소가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의 자발적 행위를

가졌을 경우에 ‘그루밍’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성착취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행위결과로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 과정은 생략되거나 삭제되고 성폭력 현상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유무를 판단한다. 행위결과가 성범죄의 법적 구성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행위결과가 성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루밍의 단계만을 가지고 처벌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까? 만약 그루밍 단계에서 피해자가 발고를 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의 목적성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이러한 점은 처벌과잉이나 미성년자 및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항요소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또, 가해자가 성착취 대상의 취약한 환경을 이용하는 부분은 장애인성폭력 사건에서도 수사재판기관에 사건을 반드시 전체 맥락 안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자 혹은 지적장애인의 낮은 연령이나 인지능력, 빈곤한 환경으로 자원부족, 양육공백으로 인한 보호체계 미비, 관계에서 고립감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침해, 착취,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수 있다. 이는 발제자의 탁틴내일의 상담사례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무형의 물리력이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면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을 획득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세부적으로 소통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환경과 가해행위간의 화학적인 결합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의 행위능력에 따라서 저항여부 혹은 자발성과 동의여부 등을 질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루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 피해자의 구술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적인 문제로 남는다. 단지 피해자의 취약성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미 그루밍 단계에서 가해자가 제공되는 자원이 피해자의 취약한 환경에서의 자원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피해자의 구술은 힘을 잃게 되기도 한다.

현장에서 그루밍 피해를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가해자 처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 청소년,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실제 성인피해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성폭력을 발생하게 되는 사전적 요소일 수 있는데, 일상적 소통의 강화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지적장애 피해자에게 드러나는 그루밍에 대한 의견

전국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의뢰 경향을 살펴보면 장애인 피해자 중에 지적장애 피해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에도 그루밍 양상이 다수 있다.

성관계가 아빠라고 불리는 동거남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주고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등 성폭력과 친밀감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성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오빠라고 불리는 다른 남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반복하며 성관계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충족의 도구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ooo’ 게임사이트에서 지능지수 51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여, 24세)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11. 3. 7. 경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화를 내도 다시 연락을 해오며, 영상통화시 알몸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도 쉽게 응하는 등 피해자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 75의 경계선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박○○(여, 18세)가 가출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같이 살자는 내용으로 답글을 남긴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12. 5. 26. 17:0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같은 날 20:30경 oo시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5:00경 위 OOO아파트 OOO동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충전할 용돈을 달라며 다가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며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랑이란 성기를 빨아주고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피고인과 사랑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자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상에게 쉽게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 피해자의 부친은 청각장애가 있고, 모친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 언니들은 피해자와 떨어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실, 게다가 피해자에게는 친한 친구가 없고, 피해자의 집조차 인적이 많지 않는 곳에 있어 피해자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느끼면, 그 관계에 집착하게 되며 그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경우 그 사람에게 쉽게 복종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바와 원치 않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 피고인들은 음식을 사주고 친절하게 대한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단기간에 걸쳐 총 10여 차례에 걸쳐 간음을 한 사실~

위의 내용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유죄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 시 폭행이나 협박보다 피해자의 장애와 저치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을 하였다. 가해자는 평소 피해자를 알고 있어 낮은 지능을 이용하여 설득하거나 지시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성관계라고 학습시켜 피해자가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가해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쉽게 유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성적인 침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학교 등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회적/심리적 고립감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회유하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가해자가 접근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에서 그루밍이 드러나는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성으로 위해 고립감을 갖게 되고 차별과 억압이 축적된 삶을 살아간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의 조건을 이용하여 성적인 착취와 폭력을 하게 된다. 지적장애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경험이나 지지적인 관계가 부족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가벼운 위협에도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조건을 이용하여 회유하고 유인하고 설득하고 학습시켜 성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양상들을 살펴보고 성폭력 발생의 맥락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방법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적장애여성들은 성폭력 피해 외에도 다양한 착취와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계 맺기 방식에 그루밍의 양상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그만큼 그루밍과 그루밍이 아닌 것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 토론5.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분석’ 토론문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 고려해야 할 사항들

윤선영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

온·오프라인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는 행위인 그루밍(grooming)은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이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오프라인 그루밍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한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에서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 안전(the Youth Internet Safety)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온라인(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을 통해 원하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 요청(sexual solicitations)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Jones, Mitchell, & Finkelhor, 2012). 이번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상담사례 및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이하 탁틴내일 설문조사) 결과는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온·오프라인 그루밍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 부정적 영향은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상 부적절한 성적 요청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 중, 경험 후 28%가 매우 화가 났고, 20%가 몹시 두려웠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른 부정적 영향들로는 부끄러움, 고통스러움, 그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음, 매사에 흥미를 잃어버림 등이다(Wolak, Mitchell, & Finkelhor, 2006). 이는 탁틴내일 설문조사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더해, 어떠한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이 온라인 그루밍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지(resilience factors), 온라인 그루밍 타겟이 되도록 하는 위험 요인들(risk factors)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가족과 관련된 사항들

- 탁틴내일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응답자 모두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접근한다면 부모님/보호자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에 대해 알리겠다고 답변했다. 온·오프라인 그루밍에 의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가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존 연구는 보고하고 있다. 가족(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반면, 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부정적 비판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좌절감을 느끼고 가족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Whittle, Hamilton-Giachritsis, & Beech, 2013). 가족의 관심과 보호는 중요하며, 가족(특히 부모님/보호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할, 지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 학교와 관련된 사항들

- 미 전국 청소년 온라인 피해 연구(National Juvenile Online Victimization Study)에 의하면, 온라인으로 시작된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연령은 13~14세이었다(Wolak, Finkelhor, & Mitchel, 2004). 이는 탁틴내일 설문조사에서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34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성폭력 피해를 14~16세에 입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예, software education program, social events)으로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초기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

- 탁틴내일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인터넷)에서 성폭력이라 의심되는 순간,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그 사람을 차단했다고 가장 많이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는 (채팅방 등에서) 나왔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13~18세, 8명)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Whittle et al., 2013)에서는 성폭력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들이 인

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하기,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않기, 온라인에서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등이다(Whittle et al., 2013). 최근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접근하려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브로슈어 등을 제작·배포하여 성폭력이라 의심되는 순간 혹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행동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루밍에 의한 성범죄 발생 후, 관련된 사항들

- 온·오프라인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사, 치료사, 경찰, 변호사 등은 그루밍 특성 및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통념이나 자기 주관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 입장에서 공감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며, 전문가 훈련기회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확보도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 예방과 대책

- 온·오프라인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7가지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Education), 전문가 훈련(Training), 일반 국민 대상 홍보(Public Awareness), 정책 및 프로토콜 개발(Policy/Protocol Development), 시스템 협력(System Advocacy), 매뉴얼 개발(Manual Development), 그리고 연계 협조(Coordinated Response).

## 참고문헌

- Jones, L. M., Mitchell, K., & Finkelhor, D. (2012). Trends in youth internet victimization: Findings from three youth internet safety surveys 2000-2010.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ociety for adolescent health and medicine, 50(2), 179-186.
- Whittle, H. C., Hamilton-Giachritsis, C., & Beech, A. R. (2013). Victims' voices: the impact of online grooming and sexual abuse. *Universal Journal of Psychology*, 1(2), 59-71.
- Wolak, J., Finkelhor, D., & Mitchell, K. J. (2004). Internet-initiated sex crimes against minor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based on findings from a natio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5(424), 11-20.
- Wolak, J., Mitchell, K. J., & Finkelhor, D. (2006). Online victimization of youth: Five years later.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 토론6.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루밍 사례

박미혜 서울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2016년 4월 서울시내 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온 피해 청소년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동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 진술 녹화를 하기 위해 만나면서 피해자와의 짧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사건 내용은 2012년 경부터 학교에 가기 싫다는 자신을 “섹스를 해주면 안가도 된다”라고 하여 첫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후 가해자인 아빠는 수시로 간음하거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자위행위를 시켰으며 사건이 접수되기 전 2016년 4월 초순경 까지 간음행위가 지속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가족구성은 엄마, 아빠, 오빠 등 4명이고, 엄마는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정신분열로 인해 수시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한동안 엄마와 오빠는 친할머니 댁으로 요양을 가서 집에는 가해자인 아빠와 피해자 둘만 살고 있었으며 둘이 사는 동안 성폭력의 강도나 횟수는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진술녹화 과정에서 아빠가 지속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할 때 거부를 한 적도 있지만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아빠의 행동이 잘못 된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아빠가 “미안하다, 너가 여자로 느껴진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시골에서 둘이 살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다 망한다, 죄책감이 든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 측은하기도 하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쉼터로 분리시키고, 가해자인 아빠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그리고 담당형사, 나와도 연락을 끊고 “아빠가

죽으면 선생님들은 어쩔건가요, 저도 엄청 죄책감이 들고 아빠 감옥 보내면 저 죽을 거예요”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에 자신이 진술한 것은 인터넷 소설에서 읽은 것을 진술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글을 올리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 시켜 치료를 하기위해 가해자이긴 하나 법적 보호자였기 때문에 가해자인 아빠를 설득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아빠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피해자를 보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흔히 갖는 양가감정 이외의 감정도 피해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과 염려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정신분열로 인해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오빠만을 챙기는 엄마에게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 보통 아이들이 느끼는 엄마에 대한 정 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에서, 모든 생활을 해결해주는 아빠만이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가해자인 아빠는 그 믿음을 이용해 몇 년간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길들인 전형적인 그루밍의 사례로 보여 진다.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특히 친족이나 동네 지인 등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의 정도가 점점 커지면서 성폭력에 길들여지고, 피해가 자신이 잘못해서 일어났다는 생각과 이를 밟고 했을 때 가정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으로 스스로 괴로워하다 자해행위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참고자료

# 성적 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 모델 법률 및 외국 법제 검토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ICMEC)

번역: 엑팟ECPAT코리아탁틴

성적 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 모델 법률 및 외국 법제 검토(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의 원본 저작권은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엑팟ECPAT코리아탁틴 자체 번역본으로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ecpatkorea@naver.com, www.tacleen.net



## 개요

### 현안 소개

인터넷과 관련 기술을 통한 성적 목적의 아동 그루밍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이며 수많은 아동들을 성학대 및 성착취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sup>1</sup> 그루밍은 직접 만남 또는 인터넷과 관련기술을 통해 성인이 아동과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아동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성적 접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sup>2</sup><sup>3</sup>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 성학대물 및 성폭력물 제작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 성학대와 관련될 수 있다.<sup>4</sup> 영국아동학대예방기구(NSPCC)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강간, 그루밍, 학대 생중계를 포함하는 아동 성범죄의 2015년 일일 평균 8건이 인터넷을 이용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sup>5</sup>

해를 거듭할수록 인터넷 이용 가능성도와 접근 가능성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그 결과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50퍼센트가 넘는 인구가 인터넷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sup>6</sup> 38억이 넘는 오늘날의 인터넷 사용자<sup>7</sup> 중 70퍼센트가 15세에서 24세 사이<sup>8</sup>이며 약 75만 가해자들이 어느 때든 온라인에 접속해 있다.<sup>9</sup> 정보와 통신 기술에 대한 용이한

<sup>1</sup> According to the BBC, the term “grooming” was first used in the context of sexual exploitation in 1985 by the Chicago Tribune in an article regarding methods used by pedophiles. In the 1990s, the term became more mainstream and has become more widely used with the increased use of the Internet. The term has since been incorporated into numerous dictionaries including the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and Oxford English Dictionary. The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defines grooming as “the criminal activity of becoming friends with a child, especially over the internet, in order to try to persuade the child to have a sexual relationship.”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defines the verb ‘groom’ as “(of a paedophile) prepare (a child) for a meeting, especially via an Internet chat room, with the intention of committing a sexual offence.” See, *When did ‘grooming’ become a dirty word?*, BBC NEWS, Dec. 1, 2008, at <http://news.bbc.co.uk/1/hi/magazine/7758292.stm> (last visited Aug. 22, 2017). See also,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at <http://dictionary.cambridge.org/us/dictionary/english/grooming>; *OED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Jun. 2017, at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groom> (last visited Aug. 22, 2017).

<sup>2</sup> *Terminolog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Terminology and Semantics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t <http://luxembourgguidelines.org/> (last visited Jul. 7,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3</sup> In the context of this report, “online” refers to some act that has taken place on the Internet or by way of some for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s non-contact in nature; “offline” refers to some act that has occurred face-to-face that increases the risk of a contact (physical) offense.

<sup>4</sup> C. Emmanuel Ahia et al., *Protecting Children from Online Sexual Predators: Technological, Psychoeducational, and Legal Considerations*, 35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68 [hereinafter Protecting Children from Online Sexual Predators]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5</sup> Sandra Laville, *Internet used in eight cases of child sex abuse every day, NSPCC finds*, Jun. 20, 2016, THE GUARDIAN, at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6/jun/21/internet-used-in-eight-cases-of-child-sex-abuse-every-day-nspcc-finds> (last visited Sep. 1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6</sup> Internet World Stats, at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htm> (last visited Sep. 15, 2017).

<sup>7</sup> Id.

<sup>8</sup>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Facts and Figures 2017*, at <http://www.itu.int/en/ITU-D/Statistics/Documents/facts/ICTFactsFigures2017.pdf> (last visited Sep. 16,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9</sup>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9, Najat Mjid

접근과 점차 증가하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아동들을 성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돋기 위한 포괄적인 법과 다른 도구의 필요성을 자명하게 한다.<sup>10</sup>

가해자들은 기술 덕분에 아동들에게 상시 접근이 가능하다.<sup>11</sup> 2010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8세에서 18세 아동들은 일일 평균 7.5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다.<sup>12</sup> 그보다 앞선 스웨덴의 아동의 미디어 습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9세에서 11세 아동의 82퍼센트와 12세에서 16세 아동 95퍼센트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또한 9세-11세 집단 28퍼센트와 12세-16세 집단 54퍼센트는 인터넷을 매일 사용한다.<sup>13</sup> 이 연구 보고서들은 세계의 아동들이 많은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자신들의 삶에 통합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늘날 아동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며 그들의 사회적 영역은 대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둘 사이의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져 있다.<sup>14</sup>

어떤 연구들은 부정적 생활 사건(life events) 또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온라인 그루밍에 취약할 수 있다고 나타낸다.<sup>15</sup> 그러나 여러 산업화된 국가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피해를 당한 몇몇 아동들은 “그 이전에 그러한 부정적 사건과 같은 분명한 공통분모가 없으며 무작위로 (가해자에 의해) 목표물로 설정된 듯 하다..,” 고 나타내며 이는 “전형적인 피해자란 없으며 온라인에서 학대당한 아동들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서로 다르다는(heterogeneity) 것.”<sup>16</sup>임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3세에서 15세 사이이다.<sup>17</sup> 어떤 그루머(groomers)들

Maalla, UN Special Rapporteur 2009 A/HRC/12/23, at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09/146/27/PDF/G0914627.pdf?OpenElement> (last visited Sep. 14, 2017);

See also Henry, S., *Video: Shawn Henry on Cyber Safety*,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May 2011, at

[https://www.fbi.gov/news/videos/henry\\_051611](https://www.fbi.gov/news/videos/henry_051611) (last visited Sep. 14,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0</sup> Id.

<sup>11</sup> The terms *offender*, *groomer*, and *predator* are used interchangeably throughout this report.

<sup>12</sup> Victoria J. Rideout, et al., *Generation M2: Media in the Lives of 8- to 18-Year-Olds* 2, 11, Jan. 2010, The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at <http://www.kff.org/other/report/generation-m2-media-in-the-lives-of-8-to-18-year-olds/> (last visited Sep. 14,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3</sup> Medierådet, Ungar och media 2006, *Fakta om barns och ungas användning och upplevelser av medier*, (Facts about Children's Use and Experience with the Media) Stockholm: Swedish Media Council,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4</sup> English summary of Brå report No 2007:11, *The online sexual solicitation of children by adults in Sweden* (2007), Brottsförebyggande rådet,

<sup>15</sup> Dr. Mike McGuire and Samantha Dowling, *Cyber crime: A review of the evidence – Research Report 75 – Chapter 3: Cyber-enabled crimes – sexual offending against children 10-11*, Home Office, Oct. 2013, at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46754/horr75-chap3.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46754/horr75-chap3.pdf) (last visited Jul. 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Helen Whittle et al., “*Under His Spell*: Victims’ Perspectives of Being Groomed Onlin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SOC. SCI. 2014 404-426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6</sup> *Child Safety Online: Global challenges and strategies - Technical Report* 41, May 2012,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at [https://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ict\\_techreport3\\_eng.pdf](https://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ict_techreport3_eng.pdf) (last visited Jun. 26,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7</sup> Steven Webster et al., *European Online Grooming Project: Final Report* 51, European Commission Safer Internet Plus Programme, Mar. 2012, at <http://natcen.ac.uk/media/22514/european-online-grooming-projectfinalreport.pdf> (last visited Jul.

은 여러 명의 아동들과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며 관계를 맺고, 2012년 유럽 온라인 그루밍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여자 아동들이 남자 아동들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8</sup> 남자 아동들은 “피해자의 상당수 집단”<sup>19</sup>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학대 사건을 신고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적다.<sup>20</sup> 따라서 확인된 피해사실에 대한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의 차이는 신고 통계자료보다 적다.

온라인 그루밍은 이메일, 즉석 메시지(instant message) 앱, SNS, 채팅방, 온라인 게임 사이트, 사진 공유 사이트, 데이트 앱<sup>21</sup>을 통해서 발생하며 이 모든 수단은 개인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폰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2012년 영국 기반 설문조사 응답자 11-16세 아동 1,718명 중 42퍼센트가 낯선 이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첨부파일을 받은 적이 있고 37퍼센트가 낯선 이를 즉석 메시지 연락처에 추가한 적이 있고 35퍼센트가 낯선 이를 SNS에 친구 그룹에 추가한 적이 있다.<sup>22</sup> 이러한 기술들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실제 나이와 신분을 속일 수 있는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sup>23</sup>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아동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아동의 신뢰와 협조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에 성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sup>24</sup>

SNS는 특히 온라인 그루밍에 널리 이용된다.<sup>25</sup> 가해자들은 인터넷 및 관련 기술을 접촉을 시도하기 전, 아동의 개인 정보를 찾기 위해 SNS를 탐색함으로써 그들의 성적 취향에 맞는 취약한 아동을 찾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sup>26</sup> 예를 들어 가해자들은 SNS의 프로필 사진, 인구학적 정보, 관심사,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즉 뉴스피드, 상태 게시물, 게시물 댓글)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sup>27</sup> 따라서 가해자들은 그들이 접촉하고 결국에는 성착취를 할 취향에 맞는 아동을 찾아낼 수 있다. 인터넷 이용 아동들은 SNS와 소셜미디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으로 이용하며 특히 아동

---

<sup>23</sup>,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8</sup> Id. at 13

<sup>19</sup> Renée Kool, *Prevention by All Means: A Legal Comparison of the Criminalization of Online Grooming and its Enforcement* 50, 7 UTRECHT L. REV. 48 (2011)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0</sup> Kimberly Mitchell et al., *Trends in Youth Reports of Sexual Solicitations, Harassment and Unwanted Exposure to Pornography on the Internet* 120-122,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0 (2007), at <http://www.unh.edu/ccrc/pdf/CV135.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1</sup> Childline, *Online Grooming*, at

<https://www.childline.org.uk/info-advice/bullying-abuse-safety/online-mobile-safety/online-grooming/> (last visited Jun. 9, 2017).

<sup>22</sup> Steven Webster et al., *supra* note 21.

<sup>23</sup> Kim-Kwang Raymond Choo, *Online child grooming: A literature review on the mis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grooming children for sexual offenses*,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103 (2009)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4</sup> Id.

<sup>25</sup> Id.

<sup>26</sup> Steven Webster et al., *supra* note 21.

<sup>27</sup> Id.

들은 온라인에서 낯선 이와의 의사소통에 거리낌이 없다.<sup>28</sup> 낯선 이에 대한 개방성을 고려할 때 영국에서 시행된 사이버범죄 연구는 “2006년 동안 채팅방에서 일어난 원치 않는 온라인 성적 접근 약 85만건과 성적 그루밍 후 아동과의 만남 범죄 약 238건이 기록되었다.”<sup>29</sup> 미국의 2005년 연구는 10세에서 17세 아동의 25명 중 1명이 오프라인에서 접촉 시도를 포함하는 공격적인 성적 제의<sup>30</sup>를 받았으며 25명 중 1명은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는 온라인 가해자들에게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sup>31</sup> 불과 5년 후 시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10세에서 17세 미국 아동 11명 중 1명이 원치 않는 온라인 성적 제의를 받았다고 보고했다.<sup>32</sup>

지난 20년 동안 온라인 게임 또한 전 세계적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를 위한 활동으로 성장했다.<sup>33</sup> 온라인 게임 플랫폼(컴퓨터, 비디오 게임 콘솔 또는 소형 게임 시스템)의 기능은 진화해 인터넷 접근, 메시지 플랫폼 및 사진과 비디오 공유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과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sup>34</sup> 성범죄자들은 아동에게 접근하고 그들과 연결하려는 수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sup>35</sup> 결과적으로 더욱더 많은 아동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고 아동이 성범죄자와 접촉할 위험이 높아졌다.<sup>36</sup> 비디오 게임만의 독특한 기능특성상 아동과 가해자 간에 영상 및 음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sup>37</sup> 온라인 게임은 자동적으로 가해자와 아동 사이에 공통된 관심사를 제공하여 몇몇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낯선 이와 관계를 맺는 두려움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sup>38</sup> 또한 아동들은 성인의 감시가 거

<sup>28</sup> Id. at 106.

<sup>29</sup> Id.

<sup>30</sup> The terms *sexual solicitation* and *sexual grooming* are used interchangeably throughout this report.

<sup>31</sup> Janis Wolak et al., *1 in 7 Youth: The Statistics about Online Sexual Solicitations*, Crimes Against Children Research Center, at <http://cyber.harvard.edu/sites/cyber.harvard.edu/files/1in7Youth.pdf> (last visited Sep. 10, 2017). See also, Janis Wolak et al., *Online Victimization of Youth: Five Years Later*, 2006, Crimes Against Children Research Center, at [http://www.missingkids.com/en\\_US/publications/NC167.pdf](http://www.missingkids.com/en_US/publications/NC167.pdf) (last visited Sep. 14,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32</sup> Lisa M. Jones, Ph.D. et al., *Trends in Youth Internet Victimization: Findings from Three Youth Internet Safety Surveys 2000-2010*, Crimes Against Childre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New Hampshir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33</sup> Thomas-Gabriel Rüdiger, *The Real World of Sexual Predators and Online Gaming*, Oct. 21 2015, BeAKidsHero, at <http://www.beakidshero.com/posts/the-real-world-of-sexual-predators-and-online-gaming/>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34</sup> Calin Ciabai, *Naked Pictures via Xbox and PS3, Children and Parents Shocked*, Softpedia (Mar. 23, 2017), at <http://news.softpedia.com/news/Naked-Pictures-via-Xbox-and-PS3-Children-and-Parents-Shocked-80505.shtml> (last visited Jul. 11, 2014); See also, Phil Rogers, *Predators Using Gaming Systems' Live Video Features to Find Kids*, Oct. 9, 2012, NBC, at <http://www.nbcchicago.com/investigations/unit-5-video-games-internet-devices-child-predators-173429241.html> (last visited Jun. 19,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35</sup> Thomas-Gabriel Rüdiger, *supra* note 37. See also, Steven Webster et al., *supra* note 21.

<sup>36</sup> Victoria Baines, *Online Child Sexual Abuse: The Law Enforcement Response*, ECPAT International (2008), at [http://www.ecpat.org/wp-content/uploads/legacy/Thematic\\_Paper\\_ICTLAW\\_ENG.pdf](http://www.ecpat.org/wp-content/uploads/legacy/Thematic_Paper_ICTLAW_ENG.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37</sup> *Child Predator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11), at <https://www.fbi.gov/news/stories/child-predators>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38</sup> *How Predators "Groom" Children While Gaming Online*, 2016, TeenSafe, at <https://www.teensafe.com/blog/predators-groom-children-gaming-online/>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의 없는 상태에서 게임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가해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sup>39</sup> 일단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가해자는 아동이 1:1 채팅방, 즉석 메신저, 소셜미디어 앱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대화하도록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성적 대화와 이미지/비디오, 심지어는 성행위 생중계의 교환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sup>40</sup>

그루밍 과정이 면대면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그루밍은 대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가해자가 인터넷이 제공하는 익명성 뒤에 숨어 아동이 협조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고 조종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영국 기반 수사팀의 발견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머들은 불과 30분 만에 만남을 위해 아동을 설득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아동을 완전히 설득하는데 1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힌다.<sup>41</sup> 마찬가지로 미들섹스 대학교(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온라인에서 아동들과 채팅을 할 때 불과 3분 만에 성적인 주제를 꺼내며 8분 만에 아동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sup>42</sup> 그루밍 과정은 복잡하며 “신뢰 형성, 고립 및 성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항상 같은 순서는 아니지만 일련의 과정과 전략들”을 포함한다.<sup>43</sup> 아동 그루밍에 단일적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온라인 그루머들도 하나의 프로필(공통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sup>44</sup>

그러나 온라인 아동 그루밍에 이용되는 공통적인 전략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캐나다 사이버 조언 웹사이트 Cybertip.ca는 평균 연령 13세 피해자들의 그루밍 사건 264건을 분석한 결과 93.4퍼센트 사건에서 용의자들이 성적 이미지를 요청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체의 24퍼센트 경우에서 아동이 넘겨준 이미지 배포 또는 다른 위협으로 협박당했다. 성적 이미지를 실제로 보낸 경우는 전체 30퍼센트였다. 또한 전체 사건 중 35.5퍼센트에서 용의자가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피해 아동에게 웹캠으로 의사소통할 것을 요청했다.<sup>45</sup>

그루밍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만남 또는 온라인상의 아동 성학대이다.<sup>46</sup> 인터넷은 성적으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39</sup> Joy L. Daggs et al., *Entrapping the Innocent: Toward a Theory of Child Sexual Predators' Luring Communication* 240, 17 COMMUNICATION THEORY 231 (200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40</sup> Thomas-Gabriel Rüdiger, *supra* note 37.

<sup>41</sup> Nicola Davis, *Online grooming of children often ‘alarmingly fast’*, researchers find, THE GUARDIAN, Sep. 7, 2016, at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6/sep/08/online-grooming-of-children-often-alarmingly-fast-researchers-find> (last visited Sep. 9,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42</sup> *Paedophiles “Internet Groom” Minors for Sex in Just 8 Minutes*, INHOPE, (Mar. 30, 2012) at [http://inhope.org/tns/news-and-events/news/12-03-30/Paedophiles\\_internet\\_groom\\_minors\\_for\\_sex\\_in\\_just\\_8\\_mins.aspx](http://inhope.org/tns/news-and-events/news/12-03-30/Paedophiles_internet_groom_minors_for_sex_in_just_8_mins.aspx)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43</sup> Nicola Davis, *supra* note 45.

<sup>44</sup> *Id.*

<sup>45</sup> Cybertip.ca, *Luring Prevention Sheet*, at [https://www.cybertip.ca/pdfs/CTIP\\_LuringPrevention\\_InterventionSheet\\_en.pdf](https://www.cybertip.ca/pdfs/CTIP_LuringPrevention_InterventionSheet_en.pdf) (last visited Sep. 11,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46</sup> *Online Grooming: How does it work?*, THINKUKNOW.co.uk, at <https://www.thinkuknow.co.uk/parents/articles/Online-grooming/> (last visited Sep. 11,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로 노골적인 정보 또는 이미지의 온라인 전송을 통해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옮겨가지 않고도 미성년자들이 조종당하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되고 착취 당하고 학대당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sup>47</sup> 인터넷이 제공하는 많은 이점들은 이용자들이 오프라인 그루밍을 온라인 그루밍으로 장소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sup>48</sup> 인터넷은 지리적 위치의 경계를 허물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다.<sup>49</sup> 온라인 환경의 익명성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실제 신분을 감출 수 있게 하며 대개 가해자들이 가해 행동 수준을 유지하고 심지어 그 행동의 단계를 높일 수 있도록 대담하게 만든다.<sup>50</sup> 바로 이 익명성 때문에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아동은 어색함을 덜 느낄 수 있고 어떤 아동들은 의도치 않게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sup>51</sup> 아동들은 점점 더 웹캠 앞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속고 있으며 이는 “접촉”성학대만큼이나 아동에게 피해를 준다.<sup>52</sup> 온라인 가해자들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도록, 웹캠 앞에서 포즈를 취하도록, 사이버섹스를 하도록 아동을 설득함으로써 더욱 직접적인 성적만족을 달성하고자 한다.<sup>53</sup>

온라인 성학대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지만 현존하는 온라인 그루밍 법 대다수는 아동과의 의사소통이 만남, 아동과 만남을 위한 명확한 계획, 예를 들어 아동과 만남을 위한 이동 또는 이동 주선과 같은 계획으로 이어지는 경우만 범죄로 인정한다.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 과정은 대개 성적 대화, 피해자에게 성인 포르노그래피 그리고/또는 아동 성학대물 보여주기, 아동이 자신의 성적이미지를 찍어 공유하도록 압박 또는 강요하기를 포함한다. 2017년 2월에 통과되고 제정된<sup>54</sup> 2014년 아일랜드 형법 법안 주석 (아동 그루밍) 법안(Ireland's Explanatory Memorandum for the Criminal Law(Child Grooming) Bill<sup>55</sup>)에는 다음이 표기되어 있다.

만남이나 만남을 위한 단계가 (법 적용에) 요구되면 그루밍이 이미 발생했을지라도 위험에

<sup>47</sup> Ilene R. Berson, *Grooming Cybervictims: The Psychosocial Effects of Online Exploitation for Youth*, JOURNAL OF SCHOOL VIOLENCE, VOL. 2(1), 2003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48</sup> Stefan Fafinski, *UK Cybercrime report 15*, Garlik: powerful stuff (200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49</sup> Sébastien Wachs et al., *Cybergrooming: Risk factors, coping strategies and associations with cyberbullying* 628-29, 2012, PSICOTHEMA Vol. 24, n°4, p. 628-633, University of Bremen (Germany)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50</sup> *Id.*

<sup>51</sup> Steven Webster et al., *supra* note 21, at 61.

<sup>52</sup> Online Grooming: How does it work?, *supra* note 50.

<sup>53</sup> Rachel O'Connell, *A typology of child cyberexploitation and online grooming practices*, Preston: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Cybersex Research Unit (2003); Rachel O'Connell et al., *Cyber stalking, abusive cyber sex and Online grooming. A programme of education for teenagers*, Preston: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Cybersex Research Unit (2004)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54</sup> Criminal Law (Sexual Offences) Act 2017 of Ireland, at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7/act/2/enacted/en/print#part2>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55</sup> *Explanatory Memorandum, Criminal Law (Child Grooming) Bill 2014, Ireland*, Houses of the Oireachtas, at <http://www.oireachtas.ie/documents/bills28/bills/2014/8914/b8914d-memo.pdf> (last visited Sep. 1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처했을지 모를 아동이 직면한 위협을 제거하기에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상 면대면 만남이 없어도 비접촉 성학대가 가능하다.<sup>56</sup>

최근 보고서에서는 점점 더 많은 그루밍 사건들이 온라인 내부에서만 발생하며 가해자가 아동과 오프라인에서 만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sup>57</sup> 그러므로 가해자가 오프라인상의 만남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그루밍 법이 모든 종류의 아동 그루밍을 범죄화해야 함은 필수적이다.

## 보고서

각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법 개발을 권고하기 위해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ICMEC)는 현존하는 국제 및 국내법 검토를 시행했다. 인터넷상의 아동 그루밍에 대한 충분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루밍 행동을 구분하는 것을 중요하다. 성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 협약(란사로테 협약)은 온라인 그루밍에 특화된 유일한 국제법이다.<sup>58</sup> 란사로테 협약은 그루밍을 명확히 정의(아동에게 성적인 목적의 제의)하고 있지만 만남 제안이 실질적 행위으로 이어지는 물질적 행위(material acts)을 요구한다.<sup>59</sup> 이 협약은 주요 시작점으로써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가해자가 아동을 직접 만날 의도는 갖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루밍 또한 다루어야 한다. 이는 성학대가 많은 경우 직접 만남 이전에 시작되거나 온라인상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동 성착취에 대한 모델 법률 개발과 옹호는 전 세계의 이같은 범죄를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척 중요하다.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의 연구는 196개국을 포함하며 다양한 국가들의 온라인 그루밍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와 자원 견본, 현존하는 온라인 그루밍 법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각국의 국내법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적 목적의 온라인 아동 그루밍과 관련한 국내법이 존재한다.

(2) 국내법이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 그루밍의 정의를 제공(또는 설명) 하고 컴퓨터 용어와

<sup>56</sup> Explanatory Memorandum, Criminal Law (Child Grooming) Bill 2014, *supra* note 58.

<sup>57</sup> Dr. Mike McGuire and Samantha Dowling, *supra* note 19, at 4 and 9.

<sup>58</sup>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CETS 201) Article 23, Oct. 25, 2007, at <http://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rms/0900001680084822> entered into force Jul. 1, 2010 (last visited Sep. 1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59</sup> *Id.*, See also, Explanatory Report to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23, Jul. 12, 2007, C.E.T.S. No. 201, at <https://rm.coe.int/16800d3832> (last visited Sep. 18,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인터넷 용어를 사용한다.

- (3) 국내법이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만남 의도가 있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한다.
- (4) 국내법이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만남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한다.
- (5) 국내법이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것을 범죄화한다.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규범의 중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모델 법률은 실질적 법적 언어가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의 목록(a menu of concepts)과 좀 더 유사하다. 모델 법률은 온라인 그루밍 근절을 위한 포괄적 법적 전략에 필수적인 다수의 근본적 주제/조항(provis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 법률은 (1) 정의, (2) 가해, (3) 처벌 및 선고,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후 법 시행과 좋은 이니셔티브(good initiatives)의 토론, 관련된 지역법과 국제법에 대한 개요가 진행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각국 국가법을 알아보는 외국 법제 검토를 다룬다.

모델 법률을 수반하는 법적 검토는 온라인 그루밍의 현재 상태와 이 문제에 대한 의식 평가,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일러둔다. 또한 어느 국가에 성적 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 법이 부재한다고 해서 아동 성착취와 아동 성학대와 같은 다른 형태의 범죄까지 범죄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 방법론

각국의 온라인 그루밍 국가법에 관한 연구는 2012년 봄에 최초로 시작되었다. 정보의 주요 자료는 “웨스트로”(Westlaw), 유럽협의회 출판물인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부다페스트와 란사로테협약의 형법 벤치마크”<sup>60</sup>, “유럽 온라인 그루밍 프로젝트”<sup>61</sup>,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및 여러 유사 보고서를 포함한다.

유사 정보가 취합된 후 법적 분석이 진행되었고 1차적 결과가 작성되었다. 다음 과정으로 미국에 있는 각국에 파견된 대사에게 관심 촉구를 위한 서한이 발송되었다. 등재된 대사관의 응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뉴욕의 유엔 상임 공관들에게 서한이 발송되었다. 모든 서한은 우리

<sup>60</sup> Protecting children against sexual violence: The criminal law benchmarks of the Budapest and Lanzarote Conventions, Global Project on Cybercrime, Council of Europe Data Protection and Cybercrime Division, Dec. 4, 2012, at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2fa3e2> (last visited Sep. 18, 2017).

<sup>61</sup> Steven Webster et al., *supra* note 21.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 또는 정정에 대한 요청, 모델 법률 프로젝트의 요약, 국가별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정된 정보를 받자마자 정보를 검토하고 사실이 검증된 부분을 보고서에 포함했다. 비록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의 요구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국가라도 정보가 이용 가능하도록 응답 서신과 텍스트 또는 발췌문 보고서의 외국 법제 검토에 포함한 경우도 있다.

## 결과

이 보고서는 196개국에 현존하는 국가법을 살펴본다.

제1판(2017)	
성적 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법	63개국에 법이 존재 그중 24개국이 5개 기준 충족
온라인 그루밍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전혀 없음	133개국에는 그러한 법 부재 • 그중 51개국에는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 존재 • 82개국은 5개 기준 모두 불충족
컴퓨터 용어와 인터넷 용어를 포함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설명	51개국
아동과 오프라인상 만남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비접촉 학대)	34개국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범죄화	106개국

## 거론된 주제들

이 보고서의 모델 법률에서 거론된 근본적인 주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온라인 그루밍에 있어 “아동”을 성적 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18세 미만으로 정의
- (2)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하는 “그루밍” 행동을 정의/설명하고 그 정의가 컴퓨터 용어 및 인터넷 관련 용어를 포함하도록 확보
- (3) 국가 형법에 온라인 그루밍 과정에 특화된 범죄 – 아동을 만날 의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아동을 만날 목적을 가진 온라인 그루밍 범죄화 등 – 생성
- (4) 그루밍 수단으로써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것을 범죄화
- (5)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의 그루밍에 참여한 부모/보호자 처벌
- (6)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역외 관할권 제공
- (7) 그루밍 범죄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아동친화적 과정 제공
- (8) 재범 및 다른 각종 요소(위협, 성적 협박,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선고 강화

## 모델 법률

온라인 그루밍을 근절하기 위해 고안된 포괄적 법적 전략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 이 모델 법률은 비접촉 성범죄 및 접촉 성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은 국가 형법 내에 “온라인 그루밍”을 충분히 정의해야 하며 관련이 있지만 성격이 다른 접촉과 비접촉 아동 성범죄를 인지해야 하며 인터넷 또는 다른 기술을 이용해 아동을 착취하려는 의도를 범죄화하고 형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이 보고서의 모델 법률 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 (1) 정의
- (2) 범죄
- (3) 처벌과 선고

### 정의

#### 온라인 그루밍을 위한 “아동” 정의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의 법적 연령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한 국가 내에서도 주(州) 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다.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성학대로부터의 일관적이고 통합된 아동 보호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18세 미만의 사람은 성적 관계에 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온라인 그루밍 법을 목적으로 한 “아동”은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 보호에 관한 다른 국제 협약들과 동일하며 온라인 그루밍의 본질적 착취성을 감안한 것이다.<sup>62</sup>

####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하는 “그루밍” 행동 정의/설명

성학대 및 착취 문맥에서 그루밍(또는 “성적 그루밍”)은 성행위를 위해 아동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아동과 친해지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때때로 아동의 가족까지 이 행위에 포함된다.<sup>63</sup> 온라인 그루밍은 비접촉(온라인) 또는 접촉(오프라인) 성적 관계를 용이하게 할 목적

<sup>62</sup> Se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A. Res. 44/25, 61st plen. Mtg., UN Doc. A / RES/ 44/ 25 (Nov. 20, 1989), entered into force Sep. 2, 1992. Article 3 (a) defines “child” as “any person under eighteen years of age”.

<sup>63</sup> Trisha Randhawa and Scott Jacobs, *Child Grooming: “Offending all the way through from the start” - Exploring the call for law reform* 11, Dec. 2013, Child Wise, at <http://childwise.blob.core.windows.net/assets/uploads/files/Grooming%20-%20Exploring%20the%20call%20for%20law%20reform%20-%20Child%20Wise%20%28Web%29.pdf> (last visited Sep. 1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으로 18세 미만 아동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인터넷 또는 다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sup>64</sup>

이러한 정의들은 그루밍이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두 장소 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sup>65</sup> 그루밍은 “일반적으로 매우 미묘하고 지속적, 계산적, 통제적이고 계획적인 심리적 조종,”을 포함하며 목적은 아동의 불편함/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적 연결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sup>66</sup> 그루밍 과정을 통해 가해자는 적발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동에게 비밀을 유지시키도록 순응적으로 만들고자 한다.<sup>67</sup> 어떤 가해자들은 아동 한 명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명의 아동과 동시에 천천히 관계를 맺는다. 또 다른 가해자들은 “무작위(scattergun)” 접근법을 이용해 동시에 수백 명의 아동에게 접촉하여 그루밍에 대해 가장 반응이 좋은 아동을 골라낸다.<sup>68</sup> 가해자들은 대개 채팅방, SNS, 또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와 같은 공개적 장에서 피해자를 찾아내어 둘 만의 온라인 환경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옮겨간다.<sup>69</sup> 그리고 나면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 및 즉석 메시지, 그리고 다른 모바일폰 앱과 같은 매체를 통해 그루밍 과정을 전개한다.<sup>70</sup>

가해자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거나 선물을 주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방법으로 아동과 친해짐으로써, 또는 가족 친구 문제에 대해 공감해주며 자신을 친구로 믿게 함으로써 아동을 조종할 수 있다.<sup>71</sup> 이 접근법은 가해자가 아동의 신뢰를 얻고 아동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고 아동이 성착취를 당할 수 있도록 또는 성착취를 허락하도록 조종하는 것을 돋는다.<sup>72</sup> 이후 가해자

<sup>64</sup> *Id.* at 4 (emphasis added). See also, Terminolog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upra* note 6.

<sup>65</sup> Protecting Children from Cybercrime: Legislative Responses in Asia to Fight Child Pornography, Online Grooming, and Cyberbullying, The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A Joint Report) (2015), at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21566>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66</sup> Betrayal of Trust: Inquiry into the Handling of Child Abuse by Religious and Other Non-Government Organisations xxxvii, Parliament of Victoria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2013), at [https://www.parliament.vic.gov.au/images/stories/committees/fcdc/inquiries/57th/Child\\_Abuse\\_Inquiry/Report/Inquiry\\_into\\_Handling\\_of\\_Abuse\\_Volume\\_1\\_FINAL\\_web.pdf](https://www.parliament.vic.gov.au/images/stories/committees/fcdc/inquiries/57th/Child_Abuse_Inquiry/Report/Inquiry_into_Handling_of_Abuse_Volume_1_FINAL_web.pdf) (last visited Aug. 23,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67</sup> Dr. Zsuzsanna Rutai, *Online Grooming of Children: Experiences to be used in Cyprus* 8, 2013, Hope for Children UNCRC Policy Centre, at [http://www.uncrcpc.org/assets/images/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pdf](http://www.uncrcpc.org/assets/images/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68</sup> Claire Lilley, *Do You Really Know Who Your Children Are Talking To Online?*, THE HUFFINGTON POST, Apr. 30, 2015, at [http://www.huffingtonpost.co.uk/claire-lilley/children-online-safety\\_b\\_7177968.html](http://www.huffingtonpost.co.uk/claire-lilley/children-online-safety_b_7177968.html) (last visited Sep. 1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69</sup> Rachel O'Connell, *supra* note 57.

<sup>70</sup> Dr. Zsuzsanna Rutai, *supra* note 71.

<sup>71</sup> *Id.* at 7

<sup>72</sup> Grooming Cybervictims: The Psychosocial Effects of Online Exploitation for Youth 11, 2003, at [http://www.cs.auckland.ac.nz/~john/NetSafe/I\\_Berson.pdf](http://www.cs.auckland.ac.nz/~john/NetSafe/I_Berson.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Tony Krone et al.,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offenders: A study of Australian law enforcement data, Report to the Criminology Research Advisory Council*, Jan. 2017, at <http://crg.aic.gov.au/reports/1617/58-1213-FinalReport.pdf>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는 온라인 관계를 좀 더 성적으로 전환하며 어떤 경우에는 직접 성착취를 지속하기 위해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할 수도 있다.<sup>73</sup> 가해자들은 아동을 성학대에 둔감하게 만들기 위해 그 동안 쌓은 신뢰를 이용한다. 가해자들은 성인 포르노그래피와 아동 성학대물과 같은 성적으로 생생하고, 외설적이거나 노골적인 이미지를 아동에게 보낼 수 있으며 아동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영상물을 보내도록 설득하기도 한다.<sup>74</sup> 가해자는 처음에 일반적 환경에서 찍은 사진을 아동에게 요구하고 아동이 점점 더 성적으로 노골적인 스스로의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압박한다.<sup>75</sup> 이미 언급했듯, 미들섹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온라인 채팅을 시작한지 단 3분만에 성적 주제를 꺼내는 경우가 많으며 불과 8분만에 아동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sup>76</sup>

법적 조항들은 아동 성학대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과정 중에 이용되는 다양한 단계와 기술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조건들을 통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피해 아동이 결과적으로 겪는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 또한 고려해야 한다. 최소한 “온라인 그루밍”的 정의는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아동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성행위를 강요하는 성인의 의사소통, 유인, 유혹, 제안, 제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루어야 한다. 사용될 수 있는 용어로는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성적 그루밍, 유인, 제의, 유혹, 조장, 조종, 성적 의사소통, 접촉 성범죄, 비접촉 성범죄 등이 있다.

12살 소년 저스틴 블록섬은 친구네 집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저스틴은 밤 11시에 10대 소녀로 추정되는 “앰버”에게 문자를 받았다. 저스틴은 답장을 했고 “앰버”는 나체 사진을 보냈다. 저스틴은 “너 내가 12살밖에 안됐다는 걸 알아야 해,”라고 답장하며 화제를 전환하려고 했다. “앰버”는 네 시간 동안이나 문자를 계속했고 새벽 3시쯤 저스틴이 자신을 직접 만나도록 교묘히 설득했다. 실제로 “앰버”는 34세 택시 운전사 ‘브라이언 훈’이었다. 2010년 3월 30일 저스틴은 목이 졸려 숨진 채 고속도로에서 발견되었다. 저스틴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들은 너무나 빨리 진행되었다. 둘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란 존재하지 않았다. 저스틴은 “앰버”와의 온라인 의사소통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네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저스틴의 엄마 에이미는 말했다. “그날 밤 첫 번째 문자부터 네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온라인 (인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렉스 탈라모, 아동들은 가해자와 집안에서 의사소통한다 – SNS를 통해서 더타임즈, 2017년 5월 25일 (\*Lex Talamo, *Kids interact at home with predators – via social media, THE TIMES, May 25, 2017*)

<sup>73</sup> C. Emmanuel Ahia, *supra* note 8.

<sup>74</sup> David Finkelhor et al., *Online “Predators” and their Victims: Myths, Realities an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63 AMERICAN PSYCHOLOGIST 111 (2008), at <http://www.apa.org/pubs/journals/releases/amp-632111.pdf>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75</sup> Deon Minnie, *The Grooming Process and the Defence of Consent in Child Sexual Abuse Cases* 46, Master of Laws in the Faculty of Law at the Nelson Mandela Metropolitan University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76</sup> *Paedophiles “Internet Groom” Minors for Sex in Just 8 Minutes*, INHOPE, Mar. 30, 2012, at [http://inhope.org/tns/news-and-events/news/12-03-30/Paedophiles\\_internet\\_groom\\_minors\\_for\\_sex\\_in\\_just\\_8\\_mins.aspx](http://inhope.org/tns/news-and-events/news/12-03-30/Paedophiles_internet_groom_minors_for_sex_in_just_8_mins.aspx)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 범죄

### 그루밍 및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형법에 포함

형사범죄 및 그에 상응하는 처벌 및 형량을 자세히 특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아동 성착취를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국가적 법안은 불충분하다. 이와 유사하게, 법이 아동의 성적 그루밍을 “성착취”的 정의에 포함은 시키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성적 그루밍과 그 형벌과 함께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그루밍 과정은 강간, 성폭력, 희롱, 아동 성학대물, 성적 비하 및 납치와 같은 다른 범죄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루밍 과정의 명시적 범죄화 시행은 중요하다.<sup>77</sup>

오프라인/접촉 그루밍을 포함하는 법적 조항들은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그루밍의 복잡성(intricacies) 또한 다루어야 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아동과 지속적인, 대개는 오랜 기간의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sup>78</sup> 가해자는 (보호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많은 아동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욱 취약한 아동을 목표로 할 수 있다.<sup>79</sup> 가해자의 온라인 프로필에 등재된 나이, 외모 등의 개인 정보를 익명성 유지, 아동의 신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sup>80</sup> 또한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이 오프라인 그루밍에서보다 더욱 빠르게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가해자가 아동을 조종할 수 있게 한다.<sup>81</sup>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위한 특정 조항을 담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아동에 대한 추가적 착취 방지는 물론 법의 효율적 시행 확보를 도울 수 있다.

### 온라인 그루밍 과정을 범죄화

최근까지만 해도 인터넷 이용 성범죄 연구의 상당수에서는 그루밍을 가해 행동의 한 (부수적) 요소로 여기고 아동 성학대물의 특정 범죄 관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 그루밍을 “과정 자체가 가해 offence specific process”로 간주하지 않았다.<sup>82</sup> 이는 마찬가지로 법에서도 그루밍이 하나의 독립된 범죄가 아닌 또 다른 가해의 구성요소로 다루어졌다. 연구와 법 모두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아동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성행위를 위해 행해지는 범죄로 인정하고 그

<sup>77</sup> C. Emmanuel Ahia, *supra* note 8.

<sup>78</sup> *Online grooming and UK law: A submission by Childnet International to the Home Office* 4, at <http://www.childnet.com/ufiles/online-grooming.pdf> (last visited Aug.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79</sup> Id.

<sup>80</sup> Explanatory Memorandum, Criminal Law (Child Grooming) Bill 2014, Ireland, *supra* note 58.

<sup>81</sup> Online grooming and UK law, *supra* note 82.

<sup>82</sup> Juliane Kloess et al.,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Prevalence, Process,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127, TRAUMA VIOLENCE & ABUSE (Apr. 2014)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자체로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학대적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그루밍 이후 아동과의 만남만을 범죄화하고 그루밍 행위는 단지 준비과정으로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sup>83</sup> 만약 가해자가 성학대를 저지를 목적으로 만남을 활용할 의도가 있으면 아동을 만나려는 시도는 범죄화될 수 있다.<sup>84</sup> 비접촉 성학대는 유해하며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아동을 만날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온라인 그루밍 과정을 범죄화하는 국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온라인 가해자는 크게 두 분류로 “만남을 원하는” 또는 “판타지를 원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sup>85</sup> 만남을 원하는 가해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과의 만남인 반면 판타지를 원하는 가해자는 그루밍 과정 자체에 만족하며 의사소통을 온라인상으로만 한정한다.<sup>86</sup>

온라인 그루머들은 채팅방, SNS, 온라인 게임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들과 만난다.<sup>87</sup> 온라인 그루밍 과정은 가해자가 아동과 정기적으로 매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러한 만남의 빈도는 가해자가 아동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돌보미가 아닌 이상 실제(오프라인)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sup>88</sup> 그루밍 과정은 긴 시간 동안 발생할 수도 있고 가해자의 목표나 욕망에 따라 몇 분,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성적으로 변할 수 있다.<sup>89</sup>

영국의 15세 케일라이 헤이우드는 28세 루크 할로우에게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받았다. 루크는 “안녕?”이라고 했고 케일赖이는 “안녕, 넌 누구야?”라고 답했다. 십 분 만에 둘은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고 이후 2,600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주 후, 케일赖이는 자신을 그루밍한 루크와 그의 아파트에서 만났고 상당한 양의 알코올을 마신 후 강간, 살해당했다. 할로우와 그의 이웃에 사는 공범 29세 스테픈 비드맨은 체포되어 각각 형을 더해 총 47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에서 상당한 화제가 된 이 사건은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영국 아동학대예방기구(NSPCC)는 케일赖이의 죽음을 “슬프고 비극적”이며 “아동의 SNS 사용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경증”이라 일컬었다. 케일赖이 가족의 도움으로 레스터셔 경찰은 케일赖이가 죽기 전 마지막 2주 동안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고 이는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많은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잠재적 그루밍 사건을 스스로 신고했다.

\*레스터셔 경찰, ‘케일赖이의 러브스토리, 케일赖이 우드워드: 살해당한 아이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그루밍 당했는가’, 2016년 7월 1일, BBC뉴스. 벤 러셀, 살해당한 아이 케일赖이 우드워드의 마지막 순간, 아동 20명을 그루밍에게서 구하다, 2016년 11월 19일, 미러. (\*Leicestershire Police, Kayleigh's Love Story, *Kayleigh Woodward: How murdered schoolgirl was groomed online*, Jul. 1, 2016, BBC NEWS, Ben Russell, *Chilling film about murdered schoolgirl Kayleigh Woodward's last moments has SAVED 20 children from groomers*, Nov. 19, 2016, MIRROR)

<sup>83</sup> Deon Minnie, *supra* note 79.

<sup>84</sup> Renée Kool, *supra* note 23

<sup>85</sup> Ian A. Elliott and Anthony Beech, *Understanding Online Child Pornography Use: Applying Sexual Offence Theory to Online Sex Offenders* 29, Ministry of Justice, UK (May 2016)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86</sup> Id.

<sup>87</sup> Dr. Mike McGuire and Samantha Dowling, *supra* note 19, at 4.

<sup>88</sup> Online grooming and UK law, *supra* note 82.

<sup>89</sup> Steven Webster et al., *supra* note 21, at 42. See also, Child Safety Online: Global Challenges and Strategies Technical Report, *supra* note 20.

수많은 연구에서 그루밍 과정은 다양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우정, 관계 형성 단계, 위험 평가, 둘만의 관계/고립, 그리고 성적 단계 등이 있다.<sup>90</sup> 가해자가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는 그루밍 초기 단계에서 관찰되는 어떤 그루밍 행동들은 독립적으로 봤을 때 “순수한 의도를 가진 전형적인 성인과 아동 간의 의사소통으로 보일” 수도 있다.<sup>91</sup> 그러나 강요, 조종의 요소와 의사소통에 성적 주제/내용의 도입,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성착취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명백하다.<sup>92</sup>

최초의 연락 후 그루머는 남들이 모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1:1 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할 수 있다.<sup>93</sup> 관계의 성적 단계는 보통 가해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포르노그래피적 내용을 아동에게 보내며 아동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나 비디오를 가해자에게 보내도록, 웹캠을 통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는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sup>94</sup> 피해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을 보내도록 조종하는 그루머의 능력(ability)은 띄워주기, 협박, 위협, 성적 게임, 기만, 뇌물 등의 전략을 통해 향상된다.<sup>95</sup> 아동 성학대는 성적 내용에 아동이 노출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따라서 학대는 가해자가 아동을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서도 일어날 수 있다.<sup>96</sup>

### **아동과 만남 의도를 가진 온라인 그루밍 범죄화**

그루밍 과정의 일부로써 가해자는 아동을 성학대하기 위한 개인적 만남을 주선하려고 할 수 있다.<sup>97</sup> 그루머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을수록 신체적 성학대를 가능하게 하는 면대면 만남을 갖도록 아동을 설득<sup>98</sup>할 수 있다.<sup>99</sup> 실제 세계에서 아동을 설득하는 과정은 아동이 편안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sup>100</sup> 그루밍 과정 자체가 아동에게 성적 이미지를 보여주

<sup>90</sup> Rebecca Williams, et. al, *Identifying Sexual Grooming Themes used by Internet Sex Offenders*, Feb. 2013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Georgia M. Winters and Elizabeth L. Jeglic, *Stages of Sexual Grooming: Recognizing Potentially Predatory Behaviors of Child Molesters*, *DEVIANT BEHAVIOR* 38:6 724-733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91</sup> Georgia M. Winters and Elizabeth L. Jeglic, *Stages of Sexual Grooming: Recognizing Potentially Predatory Behaviors of Child Molesters* 725, *DEVIANT BEHAVIOR* 38:6 724-733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92</sup>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Useful Definitions for Reporting on Child Sexual Abuse*, at <http://victimsocfcrime.org/media/reporting-on-child-sexual-abuse/useful-definitions> (last visited Aug. 2,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93</sup> Online grooming and UK law, *supra* note 82, at 3.

<sup>94</sup> Rachel O'Connell, *supra* note 57, at 4.

<sup>95</sup> Helen Whittle et al., *supra* note 19, at 405.

<sup>96</sup> Helen Whittle et al., *supra* note 2, at 60.

<sup>97</sup> Jo Bryce, *Online Sexual Exploitation of Young People*, Cyberspace Research Unit, 15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98</sup> Rachel O'Connell, *supra* note 57, at 10.

<sup>99</sup> Steven Webster et al., *supra* note 21.

<sup>100</sup> Online grooming and UK law, *supra* note 82, at 3-4.

거나 성적 대화에 아동을 참여시키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해자에게 보내도록 아동에게 요청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착취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가해자들은 이러한 온라인 착취 과정 후에야 더 많은 신체적 행위를 통한 착취로 확장하기 위해 아동을 실제로 만나고자 할 것이다.<sup>101</sup>

캐나다 형법은 제172조의 1(1)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또는 아동의 유인을 다룬다. 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의 유인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41세 션 팔릴릭으로 2014년 체포되어 13세 아동 유인죄, 아동 성학대물 소지,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SNS 사이트인 *Tagged*를 통해 션 팔릴릭을 만났다. 수사에 따르면 션은 피해 소녀와 직접 만남에 이르기 전까지 2년 동안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소녀는 직접 만남 당시 15세였다.

\* 심대 유인 혐의로 기소된 스트라스코나 카운티 남성 유죄 인정, 2016년 4월 6일, CBC 뉴스(\*Strathcona County man accused of luring teen pleads guilty, Apr. 6, 2016, CBC News)

### 아동과 만남 의도와 무관하게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어떤 국가들은 온라인 그루밍의 결과로 아동과 만나는 것을 범죄화하지만 온라인상에서만 일어나는 성착취 예방을 위한 법은 부재한다.<sup>102</sup> 온라인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성착취를 범죄화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어떤 온라인 (성적) 제의들은 오프라인상에서 성적인 만남을 위한 것 이기도 하지만 많은 가해자들은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는 비접촉 범죄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다.<sup>103</sup>

온라인 그루밍은 성행위에 참여, 개인의 성적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공, 온라인 의사소통의 결과로 일어나는 다른 성적 접근(sexual advances) 등에 대한 요청 등 다양한 성적 행위를 포함한다.<sup>104</sup> 예를 들어 가해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고,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웹캠을 통해 아동의 성적 행위를 관찰할 수도 있으며 채팅, 문자, 이메일을 통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아동을 만나기 위한 명확한 의도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아동이 그루밍을 당했거나 비접촉 온라인 성학대를 당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기에 "너무 늦을" 수 있다.<sup>105</sup>

<sup>101</sup> Threat Assessment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10,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 Jun. 2013, at [http://ceop.police.uk/Documents/ceopdocs/CEOP\\_TACSEA2013\\_240613%20FINAL.pdf](http://ceop.police.uk/Documents/ceopdocs/CEOP_TACSEA2013_240613%20FINAL.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02</sup> Enhancing Child Safety & Online Technologies: Final Report of the Internet Safety Technical Task Force 20-22, Dec. 31, 2008, at [https://cyber.law.harvard.edu/sites/cyber.law.harvard.edu/files/ISTTF\\_Final\\_Report.pdf](https://cyber.law.harvard.edu/sites/cyber.law.harvard.edu/files/ISTTF_Final_Report.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Julianne Kloess et al., *supra* note 86, at 131.

<sup>103</sup> Jo Bryce, *supra* note 101, at 15

<sup>104</sup> David Finkelhor et al., *Online Victimization: A Report on the Nation's Youth*,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Jun. 2000, at <http://www.unh.edu/ccrc/pdf/jvq/CV38.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05</sup> Explanatory Memorandum, Criminal Law (Child Grooming) Bill 2014, Ireland, *supra* note 58.

뉴사우스웨일스 형사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R(Cth) v Poynder[2007] 사건에서 로스맨 판사는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온라인 그루밍 조항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입법부는 이 조항을 통해 부적절한 성행위를 위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실행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 과정은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아동의 학대뿐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아동의 “그루밍”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자신이 가진 판타지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가 없을 수도 있으며 이 행위는 그루밍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에게 상당히 유해한 영향을 준다.

\*트리샤 랜다와, 아동 그루밍: 시작부터 줄곧 가해, 차일드와이즈, 2013년 12월. R(Cth) v Poynder[2007] NSWCCA 157(JUN. 14, 2007) (\*Trisha Randhawa, *Child Grooming: Offending All the Way From the Start*, Childwise, Dec. 2013. R(Cth) v Poynder[2007] NSWCCA 157(JUN. 14, 2007))

영국의 아동착취및온인보호센터(CEOP)는 온라인 성범죄가 최근 몇 년간 아동이 성적인 사진을 찍도록 혹은 성적 대화나 비디오 채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등 웹을 기반으로 한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발견했다.<sup>106</sup> 영국아동학대예방기구(NSPCC)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기술의 사용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영국 내에서 3천 건이 넘게 발생했다.<sup>107</sup> 이는 온라인에서 세 시간마다 한 명의 아동이 성학대를 당하는 것과 같다.<sup>108</sup>

아동착취및온라인안전(CEOP)에 따르면 2012년 1,145건의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건 중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만남 의도가 명백한 사건은 7퍼센트 미만인 반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온라인 환경에 한정되어 있었다.<sup>109</sup> 예를 들어 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CEOP)는 2010년 “해티 작전(Operation Hattie),”이라고도 알려진 수사를 지휘했다. 해티 작전에서는 영국 아동 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학대/착취 행위를 저지른 쿠웨이트의 두 형제가 체포되었다.<sup>110</sup> 두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날 의도가 전혀 없었다.<sup>111</sup> 란사로테 협의회는 란사로테 협약 제23조의 의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아동에 대한 성적 제의가 반드시 직접 만남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가해가 온라인상에만 머무를 수도 있음에도 아동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재천명했다.<sup>112</sup>

<sup>106</sup> Threat Assessment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upra* note 105

<sup>107</sup> Tom Pettifor, *Paedophiles using the internet to commit child sex crimes every three hours*, MIRROR ONLINE (2016), at <http://www.mirror.co.uk/news/uk-news/paedophiles-using-internet-commit-child-8242065> (last visited Sep. 1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08</sup> *Id.*

<sup>109</sup> *Alarming New Trend in Online Sexual Abuse*, CEOP Command, Feb. 4, 2013, at

<http://ceop.police.uk/Media-Centre/Press-releases/2013/ALARMING-NEW-TREND-IN-ONLINE-SEXUAL-ABUSE/>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Dr. Mike McGuire and Samantha Dowling, *supra* note 19, at 9; Threat Assessment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upra* note 105, at 11.

<sup>110</sup> *Id.*

<sup>111</sup> *Id.*

<sup>112</sup> Lanzarote Committee, Committee of the Parties to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T-ES), *Opinion on Article 23 of the Lanzarote Convention and its explanatory note 6*, adopted Jun. 17, 2015, at <https://edoc.coe.int/en/sexual-exploitation-of-children/7064-lanzarote-committee-opinion-on-article-23-of-the-lanzarote-convention-and-its-explanatory-note.html> (last visited Jun. 27,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어떤 경우에서 온라인 그루밍은 또 다른 경종을 올리는 트렌드로 이어진다. 가해자가 아동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신의 영상/이미지를 보내도록 아동을 설득하고 더욱더 노골적인 내용을 보내도록 그 영상/이미지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이다.<sup>113</sup> 극단적인 경우에 피해자는 자신이 보낸 내용이 친구나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협박을 받는다.<sup>114</sup>

전형적인 성적 협박은 다음과 같은 많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 용의자와 미성년자 간의 대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한 접촉
-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미성년자 스스로 또는 가해자가 웹 캠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제작
- 그 이미지들의 배포
- 미성년자가 더 많은 이미지를 제작하도록 설득하는 가해자의 시도
- 오프라인 접촉을 강제하거나 원활히 하기 위한 이미지 이용
- 미성년자가 추가 이미지 제작 또는 가해자의 기타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재 또는 친구나 가족에게 공개한다는 협박
- 아동이 성적 자해나 자살 등 자해 행위를 하도록 협박<sup>115</sup>

정책 입안가들은 만남 의도 없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하는 법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 이유는 범죄의 시작점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sup>116</sup> 모든 국가들이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아동을 성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들이 집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호주와 캐나다 두 국가의 법은 가해자가 아동을 만날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법은 성행위 의도를 갖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다.<sup>117</sup> 이 두 국가의 법을 참고로 하여 모델 법률을 작성하는 것

---

Children).

<sup>113</sup> *Glendale Man Who Admitted Hacking into Hundreds of Computers in Sextortion Case Sentenced to Five Years in Federal Prison*, US Attorney's Office, Dec. 9, 2013,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Los Angeles Division, at <https://www.fbi.gov/losangeles/press-releases/2013/glendale-man-who-admitted-hacking-into-hundreds-of-computers-in-sextortion-case-sentenced-to-five-years-in-federal-prison>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14</sup> Ari Mason and Tara Joyce, *Woman Takes Lewd Video of Cheshire Teen, Demands Money: Cops*, NBC, Feb. 20, 2015, at <http://www.nbcconnecticut.com/news/local/Cheshire-Teen-Falls-Victim-to-Sextortion-Crime-292747121.html>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15</sup> Virtual Global Taskforce, *Frequently Asked Questions*, at <http://virtualglobaltaskforce.com/resources/faqs/> (last visited Jul. 31,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16</sup> Deon Minnie, *supra* note 79, at 31

<sup>117</sup> *Criminal Code Act 1995*, Australia, as amended, Article 272.15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Canada, Article 172.1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은 온라인 그루밍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다.<sup>118</sup>

###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행위를 범죄화**

성행위에 대해 아동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은 그루밍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다.<sup>119</sup> 이 과정은 아동이나 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느리게 또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에 관계없이 목표는 아동을 성행위에 대해 편안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을 아동이 어른과의 성관계가 정상적이고 받아들일만하다고 믿게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하다.<sup>120</sup>

관계가 진전될수록 온라인 그루머들은 피해 아동의 어색함/불편함을 없애고 성행위를 “정상화”함으로써 이에 둔감하게 만들고, 성행동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인 포르노그래피나 아동 성학 대물을 아동에게 보여줄 수 있다.<sup>121</sup>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이미지와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동의 성적 호기심을 증가시킬 수 있고 성적 관계(relationship)를 진전시키는 성적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sup>122</sup> 가해자들은 아동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치고, 성적 자세를 취하고, 오랄 섹스를 행하고, 성관계 및 다른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이용한다.<sup>123</sup> 대개 가해자는 피해자를 “주류” 성인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고, 그다음으로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아동의 더욱 가학적 이미지로 점차 강도를 높인다.<sup>124</sup> 그러한 포르노물 노출은 피해 아동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가해자에게 보내도록 조종 받을 수 있는 준비작업이 된다.<sup>125</sup>

그루밍 사례들은 채팅방이나 SNS 상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인터넷 관련 기술의 성장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웨일스에 사는 23세 아담 아이작은 각각 12세, 14세인 남자 아동들을 그루밍할 목적으로 인기 있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했다. 대화가 성적으로 변해가면서 그들은 스카이프, 문자 메시지, 스냅챗을 이용해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했다. 아이작은 페이팔을 통해 소년들에게 게임에서 이용할 선물을 사주었고 신뢰를 얻었다. 마침내 아이작은 성적인 이미지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소년들을 설득했고 온라인에서 자신의 음부를 보여주었다. 아이작은 2016년 1월 체포되었고 아동에 대한 8건의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2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작은 평생 성범죄자 등록자 명단에 등재된다

\*마인크래프트: 온라인 게임상 아동의 그루밍 위험. 웨일스 게이머 마인크래프트에서 두 소년 그루밍으로 실형, 2017년 1월 20일, 가디언 (\*Minecraft: Grooming dangers for children gaming online, Jan. 20, 2017, BBC NEWS. Welsh gamer jailed for grooming two boys on Minecraft, Jan. 20, 2017, THE GUARDIAN)

Missing & Exploited Children).

118 Dr. Zsuzsanna Rutai, *supra* note 71.

119 Joy L. Daggs et al., *supra* note 43, at 242.

120 Deon Minnie, *supra* note 79, at 50.

121 C. Emmanuel Ahia, *supra* note 8, at 67.

122 Deon Minnie, *supra* note 79, at 49.

123 Raphael Cohen-Almagor, *Online Child Sex Offenders: Challenges and Counter-Measures* 196,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52, NO. 2, May 2013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124 Child Safety Online: Global Challenges and Strategies Technical Report, *supra* note 20, at 43.

125 *Id.*

가해자가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을 입수하면 그것들이 대중에게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아동의 두려움을 비밀적, 복종적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한다.<sup>126</sup> 캐나다 아동보호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그루밍의 93퍼센트에서 가해자가 아동에게 사진을 요구했고 그중 30퍼센트가 가해자의 요구를 따랐다.<sup>127</sup> 같은 연구에서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24퍼센트는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았으며 가장 흔한 것은 피해자 이미지 배포에 관한 협박이었다.<sup>128</sup>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보내는 것은 아동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심각한 아동 성범죄로 반드시 인지되어야 하며 범죄화 되어야 한다.

###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 그루밍에 참여한 부모/법적 보호자 처벌**

자신이 기르는 아동의 그루밍에 참여한 부모/법적 보호자는 아동 성학대를 저지르고 이 범죄를 지지한다. 이 범죄는 명백히 신뢰, 부모의 의무, 양육의 책임을 위반한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자신들도 그루밍 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사례는 면대면 그루밍에서 좀 더 흔하게 발견된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자신의 자녀 그루밍에 연루된 부모들을 포함하는 사례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체포의 18퍼센트(460) 건이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을 포함했다.<sup>129</sup> 이 체포 건 중 대략 절반이 가족 구성원(44퍼센트) 절반이 지인(이웃, 친척, 가족의 친구, 교사)(56퍼센트)였다.<sup>130</sup> 대부분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루밍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했다.<sup>131</sup>

자신이 양육하는 아동에게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루밍 행위를 방조, 아동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학대에 참여한 부모 및 법적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학대를 통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sup>126</sup> Deon Minnie, *supra* note 79.

<sup>127</sup> *Preliminary Findings Provide New Insight Into the Crime of Online Luring*,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Oct. 19, 2012, at [https://protectchildren.ca/app/en/media\\_release\\_online\\_luring](https://protectchildren.ca/app/en/media_release_online_luring)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28</sup> *Id.*

<sup>129</sup> Kimberly Mitchell et al., *The Internet and Family and Acquaintance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VOL. 10, NO. 1, Feb. 2005, 49-60, at <http://www.unh.edu/ccrc/pdf/jvq/CV93.pdf> (last visited Jun. 3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30</sup> *Id.*

<sup>131</sup> *Id.*

최근 미국의 사례에서 14세 소녀가 인스타그램에서 16세 남자 아동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연락을 받았다. 최초의 접촉 후 문자 메시지가 이어졌고 온라인 관계로 발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이 성적 이미지를 보내고 소녀에게도 똑같이 할 것을 요구하면서 채팅은 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소녀가 거절하자 소년은 노골적인 대화와 이미지를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했다. 소년은 10대로 가장한 그 소녀의 아버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41세 남성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하고 전송받고 전송하기 위해 아동을 유인한 1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 남성은 20년 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평생 보호관찰을 받는다.

\*피터 홀리, 딸의 온라인 남자친구로 가장해 딸에게 나체 사진 요구한 남성. 2016년 3월 17일, 워싱턴포스트. 존 오브라이언, 허커미 카운티 아버지 딸 이용 포르노 제작 유인 죄로 20년 형 선고받아, 2016년 8월 2일 시라큐스닷컴 (\*Peter Holley, *The man who posed as his daughter's online boyfriend to get nude photos of her*, Mar. 17, 2016, WASHINGTON POST. John O'Brien, *Herkimer county dad gets 20 years for tricking daughter into making porn*, Aug. 2, 2016, SYRACUSE.COM)

## 온라인 그루밍을 독립적 범죄로 처벌

그루밍 또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표준적 법적 정의 또는 정립된 용어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그루밍 행동을 감지하고 찾아내는 것은 힘들다.<sup>132</sup> 일반 대중, 부모, 보호자, 법 집행부가 그루밍 행동을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은 반드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범죄의 하나로 처벌 가능해야 한다.<sup>133</sup> 온라인 그루밍이 강간, 아동 성학대물 등과 같은 또 다른 성범죄의 한 요소로써만 처벌된다면 어떤 종류의 그루밍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관련 있는 성범죄에 대해 온라인 그루밍 역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처벌 및 선고

###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역외 관할권 제공

아동 성범죄와 관련한 역외 관할권은 매우 중요하다. 역외 관할권은 국경 밖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자국민을 기소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범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국가에 제공한다.<sup>134</sup>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로 가해자가 기소되기 위해서는 가해자 자국에서 또한 해당 행동이 범죄여야 한다는 쌍방 가별성 조항(Dual Criminality provisions)은 사라져야 한다. 이런 조건은 역외 관할권의 효율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35</sup>

<sup>132</sup> Deon Minnie, *supra* note 79, at 34.

<sup>133</sup> *Id.*

<sup>134</sup> Naomi Svensson, *Extraterritorial Accountability: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Child Sex Tourism Laws*, 28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641 (2006), at <http://digitalcommons.lmu.edu/cgi/viewcontent.cgi?article=1611&context=ilr> (last visited Sep. 1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35</sup> *Id.*

쌍방 가별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기소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공통적인 나이 기준 – 이상적으로 18세 – 이 적용되는 것은 중요하다.

2017년 4월 호주 시드니에서 어느 부모가 16세 딸을 실종 신고했다. 소녀는 1개월 뒤 미국에서 39세 미국 남성 션 프라이스와 함께 있는 것으로 위치가 추적되었다. 프라이스는 SNS 앱 스냅챗에서 약 6개월 동안 소녀를 그루밍했고, 그녀의 불안 장애와 가족 문제를 이용했다. 프라이스는 소녀의 나체 사진을 받아냈고 결국 가출하여 자신을 만나도록 설득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프라이스는 소녀에게 미화 1천 6백달러를 송금 하여 비행기 표를 사도록 했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소녀를 만났다. 둘은 뉴욕으로 운전해 가는 도중 여러 주(州)에서 성관계를 했다. 프라이스는 2017년 5월 체포되어 3급 강간 및 범죄에 해당하는 성행위를 의도로 미성년자를 운송한 죄 등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는 뉴사우스웨일스 경찰, 호주 연방경찰, 인터폴, 내무부 및 뉴욕 경찰 등 다양한 관할권의 법 집행부가 관여했다. 성적 목적의 아동 그루밍은 호주에서도 범죄이므로 프라이스는 자국에서도 기소를 당할 수 있다.

\*기소된 살인자 션 프라이스의 별거 중인 아내 성관계 목적으로 호주의 소녀 유인에 '충격', 2017년 5월 19일, NEWS.COM.AU. 캐틀린 캠더우드 스냅챗 그루밍: 뉴욕 남성 16세 호주 소녀 성관계 목적으로 미국으로 유인, 2017년 5월 19일, ABC.NET.AU(\*Estranged wife of convicted killer Sean Price 'horrified' over claims he lured Sydney girl to US for sex, May 19, 2017, NEWS.COM.AU. Kathleen Calderwood, Snapchat grooming: New York man allegedly lures 16yo Sydney girl to America for sex, My 19, 2017, ABC.NET.AU)

### 아동은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와 관련한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아야

피해 아동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그루밍 관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추궁당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법은 이 원칙을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온라인 그루밍 상황에서 착취당한 아동은 피해자이다. 형사 책임은 아동의 나이/어림, 미숙함, 또는 삶의 상황을 이용하고 아동 착취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정신 건강, 의료 및 다른 서비스가 피해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아동의 신뢰는 가해자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이러한 신뢰 배반은 아동이 삶에서 훗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sup>136</sup> 온라인에서 그루밍을 당한 아동은 학대에 책임 또는 학대를 당할만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아동이 학대 사실을 밝히길 어렵게 만들 수 있다.<sup>137</sup>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루밍을 겪은 후 수치심, 쉽게 짜증 남, 불안, 스트레스, 우울, 약물 남용과 같은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sup>138</sup> 신체적 성학대가 없었을지라도 아동은 트라우마를 입고 비접촉 성학대로 인한 기나긴 감정적 피해를 겪을 수 있다.<sup>139</sup> 그러한 성학대는 성행동과 문란한 성행위에 관련한 피해자의 태도와 사회적 가치관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sup>140</sup>

<sup>136</sup> Trisha Randhawa and Scott Jacobs, *supra* note 67, at 16.

<sup>137</sup> *Id.*

<sup>138</sup> Helen Whittle et al., *supra* note 2, at 60

<sup>139</sup> *Id.*

법이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 건강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료와 회복 과정을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다.<sup>141</sup>

### **사법 절차에서 중인 아동 보호**

법은 사법 절차에서 중인으로 참석하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법정에서 피해 아동 변호인(advocates) 참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CCTV를 이용한 증언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수용 사항들은 성착취 피해 아동이 법정 내 잠정적 가해자의 존재(출석)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도록 작성되었다.<sup>142</sup>

###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최저형 확립**

아동 성범죄와 같이 특별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 최저형을 확립하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이 적절하고 일관적 형벌과 맞도록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sup>143</sup> 그러한 접근법의 이점은 온라인 그루밍 사례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최저형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특정, 대개는 심각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억지 효과를 준다.<sup>144</sup> 또한 최저형은 중범죄자 또는 폭력 범죄자들에게는 무거운 형량을 내리면서도 형벌에 있어 격차를 방지할 수 있다.<sup>145</sup> 가해자들은 형기 동안 무력한 상태(incapacitated)이므로 재범을 줄일 수 있고 대중을 그 기간 동안 보호할 수 있다.<sup>146</sup> 궁극적으로 그러한 요건들은 특별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확립할 수 있다.<sup>147</sup> 형벌은 그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집

<sup>140</sup> Child Safety Online: Global Challenges and Strategies Technical Report, *supra* note 20, at 42.

<sup>141</sup> John Carr and Zoe Hilton, *Combating child abuse images on the Internet – International Perspectives* 73, INTERNET AND CHILD ABUSE: CURRENT RESEARCH AND POLICY (2011), edited by Julia Davidson and Petter Gottschalk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42</sup> Wendy Murphy, *Traumatized Children Who Participate in Legal Proceedings are Entitled to Testimonial and Participatory Accommodations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2014), at <http://rogerwilliamslawreview.org/files/2013/12/murphy.pdf>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43</sup> *A Victim's Guide to Sentencing*, Victims of Violence, at <http://www.victimsofviolence.on.ca/victim-information-library/a-victims-guide-to-sentencing/#mandatory-minimum-penalties-mmps> (last visited Jun. 3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44</sup> *Report to Congress: Mandatory Minimum Penalties in the Federal Criminal Justice System*, Chapter 5, at [http://www.ussc.gov/sites/default/files/pdf/news/congressional-testimony-and-reports/mandatory-minimum-penalties/20111031-rtc-pdf/Chapter\\_05.pdf](http://www.ussc.gov/sites/default/files/pdf/news/congressional-testimony-and-reports/mandatory-minimum-penalties/20111031-rtc-pdf/Chapter_05.pdf) (last visited Jun. 3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Evan Bernick and Paul J. Larkin, Jr., *Reconsidering Mandatory Minimum Sentence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Potential Reforms*, Heritage Foundation, Legal Memorandum No. 114, Feb. 10, 2014, at [http://thf\\_media.s3.amazonaws.com/2014/pdf/LM114.pdf](http://thf_media.s3.amazonaws.com/2014/pdf/LM114.pdf) (last visited Jun. 3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45</sup> *Id.*

<sup>146</sup> *Id.*

<sup>147</sup> *Id.*

행되어야 한다.<sup>148</sup>

### 재범자와 형벌 가중 요소에 대한 형량 강화

국가법은 재범자 또는 범죄 계획의 일부로 아동 온라인 그루밍을 감행한 가해자와 같은 극단적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확보해야 한다. 재범자/재범에 대한 적당한 억지는 단순히 벌금형과 경범죄로 분류한 처벌로 끝나선 안된다.<sup>149</sup>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형벌 가중 요소는 다음과 같은 양한 요소에 대한 형벌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야 한다.<sup>150</sup>

- 피해자의 나이
-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해
- 범죄의 계획 정도
-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의 지속 정도
- 잠정적 피해자의 숫자
- 온라인 그루밍 과정의 정교성
-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요청한 성적 내용의 심각성
- 온라인 성학대 이후 오프라인 만남의 발생
- 다른 이와 공모(complicity, conspiracy)
- 권력적 위치의 남용
- (만약 있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전 관계의 특성
-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 또는 공유하겠다는 협박(성적 협박)

<sup>148</sup> Child Safety Online: Global Challenges and Strategies, *supra* note 20, at 12.

<sup>149</sup> Eva J. Klain, *Prostitution of Children and Child-Sex Tourism: An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ponses* 47,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at* <https://www.ncjrs.gov/pdffiles1/Digitization/189251NCJRS.pdf> (last visited Jun. 3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50</sup> Sentencing Council, *Sexual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s*, UK, effective from Apr. 1, 2014, *at* [http://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Final\\_Sexual\\_Offences\\_Definitive\\_Guideline\\_content\\_web1.pdf](http://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Final_Sexual_Offences_Definitive_Guideline_content_web1.pdf) (last visited Jul. 7,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 지역법 및 국제법

성적 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은 협력적 전 지구적 대응이 요구되는 다중 관할권 문제이다. 세계국가들이 단일법을 도입하는 것은 정의, 범죄, 형벌을 통일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온라인 그루밍과 다른 형태의 아동 성착취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있어 국가들 간의 협력을 원활히 한다. 국가별로 상이한 법들은 아동 성착취에 대항하는 국제사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아동을 공격하는 가해자들이 기소 가능성의 낮은 국가들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범죄화와 처벌에 일관성을 제공하는 전체론적 접근법은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늘리며 온라인 그루밍과 다른 형태들의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는데 필수적인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법 집행 노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

국제법은 국가들이 아동의 온라인 그루밍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도록 만드는 아동 보호 노력에 대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아동의 성적 그루밍은 국제적 차원에서 아직 완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동 매매, 포르노그래피와 같이 아동 성학대 및 착취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수많은 국제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온라인 그루밍 상황과 관련 있으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 및 정의를 보여준다. 그러나 성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온라인 그루밍(성적 목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제의)을 구체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제법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2011/93/EU 조정 지침(directive)만이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4/68/JHA를 대체한 2011년 12월 13일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아동 포르노그래피 근절을 위한 유럽협의회의 온라인 그루밍(성적 목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제의)과 아동이 성행위를 목격하게 야기하거나 성학대적/착취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관련된 범죄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국제적, 지역적 기준을 인지하고 부응하고 나면 (1) 국가법으로 도입 및 시행과 (2) 국가적 프로그램과 공공정책을 포함하는 온라인 그루밍 근절을 위한 국가적 계획 수립 (3) 이 법들의 이해와 집행을 장려하기 위한 법 집행 교육 및 사법 교육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 장에서는 연관 있는 조항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각 법의 주요 사항들이 강조된다.

## 성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협약

성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협약(란사로테 협약)<sup>151</sup>)은 학대와 착취의 예방,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국가적 국제적 법 집행 협력의 장려를 통해 아동의 최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란사로테 협약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각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회원국, 조약 작성에 참여한 비회원국, 유럽연합은 란사로테 협약에 서명할 수 있으며 비회원국은 가입 할 수 있다. 현재 42개 회원국이 란사로테 협약에 비준했으며, 5개 비회원국이 서명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이다.<sup>152</sup>

란사로테 협약은 아동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성착취 및 학대의 유해한 영향을 인지한다. 이 조약은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증가와 내재된 위험에 대해 말하며 성적 목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제의를 독립적 범죄로써 확립했다.<sup>153</sup> 란사로테 조약 설명 보고서(explanatory report)에서 명확히 하듯, 이 범죄는 “그루밍” 문제를 국제법에서 최초로 구현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폰을 이용하는 방식인 아동을 그루밍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sup>154</sup> 그 과정에서 이 협약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 제3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를 성착취 또는 학대의 대상인 아동으로 정의한다.
- 제5, 6, 8조는 각 당사국이 아동 관련 직업군, 아동, 일반 대중에 대해 아동 성착취 및 아동 학대에 관한 훈련, 교육,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 제12, 13조에서는 전화, 인터넷 핫라인과 함께 아동 성학대 또는 착취 의심 건에 대한 책임 기관으로의 신고를 다룬다.
- 제18조는 “성학대”를 정의하고 아동 성학대 범죄화를 요구한다.
- 제20, 21조는 아동 성학대물(제작, 배포, 소지를 포함)과 관련한 범죄, 성적으로 학대적/착취적 행위에 아동의 참여를 다룬다.
- 제22조는 각 당사국이 성학대물 또는 성행위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sup>151</sup>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CETS 201), *supra* note 62

<sup>152</sup> Se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CETS 201):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at <http://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201/signatures> (last visited Jun.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53</sup>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supra* note 62.

<sup>154</sup> Explanatory Report to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supra* note 63 (explaining “[t]he solicitation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is more commonly known as ‘grooming’”)

아동의 오염 해결을 요구한다.

- 제23조는 각 당사국이 제18, 20조에 정의된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갖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아동과 만남을 제안하는 성인의 행위를 범죄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조건은 성인이 아동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경우, 그 제안 후 실제 만남이 이어졌을 경우이다. [EU 기관 전체는 물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제23조를 “온라인 그루밍”으로 간주한다.]
- 제25조는 쌍방 가별성 조건 없는 역외 관할권을 포함하는 관할권을 다룬다.
- 제28조는 극단적 가해, 재범, 가족의 일원, 범죄단 일원으로써의 범죄와 같은 “형별 가중 상황(aggravating circumstances)”을 정의한다.
- 제30조는 각 당사국이 필요한 경우의 비밀 수사와 같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제34조(1)항과 (2)항에서는 각국이 아동 성학대 및 착취 수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특정한다. 또한 각국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사를 시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 제35조는 각국이 해당 기관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과의 인터뷰가 시행되도록, 인터뷰가 이 목적을 위해 고안되고 맞춤화된 건물에서 시행되도록, 모든 인터뷰가 동일 인물에 의해 진행되도록, 가능하다면 인터뷰 횟수가 최소한으로, 피해 아동이 법적 대표인에 의해 동반될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 제36조는 형사 재판 절차를 다루며 각 당사국이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동 권리와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심리가 대중 앞에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 출석하지 않고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판사가 허락하는 것을 확보한다.
- 제38조는 국제 협력을 위한 일반적 원칙과 조치를 다룬다.

##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EU 조정 지침(directive)

2011년 12월 13일,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각료 이사회는 2011/93/EU 조정 지침(directive)만이 EU의 결의 2004/68/JHA를 대체한 2011년 12월 13일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아동 포르노그래피 근절을 위한 유럽협의회의 온라인 그루밍(성적 목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제의)와 아동이 성 행위를 목격하게 야기하거나 성학대적/착취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관련된 범죄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룬다.<sup>155</sup> 조정 지침은 2010 란사로테 협약을 발전시키고 업데이트한다.

조정 지침은 도입되자마자 시행되었다. 준수를 위해 조정 지침을 비준한 회원국들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법, 규정, 행정적 조항을 시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2017년을 기준으로 27개 회원국이 국가법에 의해 이 조정 지침을 시행하는 조치를 취했다.<sup>156</sup> <sup>157</sup>

조정 지침은 성학대, 성착취, 성학대물, 특히 그루밍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다수의 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통일시키고 강화한다. 또한 조정 지침은 회원국들이 개입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sup>158</sup> 및 재범 가해자<sup>159</sup>들로부터 제기되는 위험을 찾아내고 평가하며 포괄적이고 선제적 접근 아동과 정기적 접촉을 포함하는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방지하고, 수사와 법적 절차 과정 동안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는 치들을 포함하는 예방법 시행을 목표로 한다.<sup>160</sup>

나아가 조정 지침은 아동 성범죄에 정보통신 기술 사용의 증가를 언급하며 “SNS와 채팅방<sup>161</sup>을 통한 성적 목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온라인 제의”를 명백히 인지한다. 조정 지침은 인터넷에 내재된 특정한 위협(익명성, 가짜 신분)을 인정하는 반면 온라인 그루밍을 하나의 독립된 범죄로 정립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sup>162</sup> 조정 지침은 회원국들이 인터넷 환경 바깥에서 발생하며 제의가 “아동의 존재하는 가운데 또는 아동의 근처에서 발생하는 오프라인 그루밍을 특정해 범죄

<sup>155</sup> Directive 2011/92/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11 on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4/68/JHA,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1L0093&from=EN> (last visited Jun. 27, 2017). Corrigendum to Directive 2011/92/EU, ‘2011/92/EU’ to be read as ‘2011/93/EU’, <http://db.eurocrim.org/db/en/doc/1715.pdf> (last visited Jun. 27, 2017).

<sup>156</sup> National Implementing Measures (NIM) communicated by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Directive 2011/92/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11 on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4/68/JHA, at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NIM/?uri=CELEX:32011L0093> (last visited Aug. 20, 2017).

<sup>157</sup> Denmark did not take part in the adoption of the Directive and is not bound by or subject to its application. See, Directive 2011/92/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11 on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4/68/JHA, *supra* note 159, at Paragraph 52.

<sup>158</sup> Directive 2011/92/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11 on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supra* note 159, at Article 22.

<sup>159</sup> *Id.* at Article 24.

<sup>160</sup> *Id.* at Article 20

<sup>161</sup> *Id.* at Paragraph 12

<sup>162</sup> *Id.* at Paragraph 19.

화한다.<sup>163</sup> 그러나 온라인 제의는 조정 지침 하에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그러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물질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sup>164</sup> 끝으로 회원국들은 법 집행부 관료들이 수사 중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sup>165</sup>

조정 지침은 회원국들이 법적 성적 동의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아동에 대한 성인의 (성적) 제의가 그러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물질적 행위가 따른 경우를 범죄화하도록 요구한다.<sup>166</sup>

조정 지침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연관된 다른 문제들을 다룬다.

- 제3조(2), (3)항은 아동이 성적 행위(포르노그래피), 또는 성학대에 참여하지 않고도 목격하게 야기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
- 제4조(2)항은 아동이 성적으로 학대적/착취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야기하는 행위(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을 포함하는 관중을 대상으로 한 생중계)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1)항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성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아동을 만나려는 제안이 그러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물질적 행위에 뒤따랐을 경우 그 제안을 “성적 목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제의”로 정의한다.
- 제6조(2)항은 회원국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아동이 아동 성학대물을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시도를 범죄화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 제7조(2)항은 조정 지침에 포함된 모든 범죄 시도를 범죄화한다.
- 제9조는 형별 가중 상황이 고려되도록 다룬다.
- 제15조는 수사와 기소 조치들을 다룬다.
- 제16조(1)항과 (2)항은 회원국들이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비밀 보장 규칙이 성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을 신고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아동 성범죄나 용의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당국에 신고하도록 장려할 것이 요구된다.
- 제17조는 역외 관할권을 포함하는 관할권, 기소 노력에 있어 국경을 넘는 협력의 필요성을 정의한다.
- 제23조는 회원국들이 온라인에서 아동에게 제기되는 위험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며 교육을 제공할 것, 피해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법 집행부와 타기관 관료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sup>163</sup> *Id.*

<sup>164</sup> *Id.* at Article 6.

<sup>165</sup> *Id.* at Paragraph 27.

<sup>166</sup> *Id.* at Article 6

## 시행

온라인 그루밍은 점점 더 세계의 아동들에게 제기되는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된다. 이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그루밍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온라인 그루밍들이 타깃으로 하는 아동들은 누구인지, 가해자들이 어떤 온라인 장소와 기술들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지를 정책 입안가들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각국이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 개발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법들이 집행되도록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광범위한 지지적 노력과 신고 메커니즘의 개발 및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의 이니셔티브들은 법적 조항의 효과적 시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아동 보호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틀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포괄적 접근법은 예방적, 보호적 요소들을 모두 통합해야만 한다. 보호적이고 예방적 접근법을 포함하는 우수 사례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예방적	보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전략/행동 계획</li> <li>• 아동 온라인 보호 프레임워크</li> <li>•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li> <li>•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li> <l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li> <li>• 연구와 데이터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상된 법적 도구</li> <li>• 정식화된 법적 절차(체포, 기소 및 유죄판결)</li> <li>•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li> <li>• 모니터링 및 신고 메커니즘</li> </ul>

국경을 넘나들고 영역을 넘나드는 협력과 더불어 정부와 민영기업의 협력은 예방적이고 보호적인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는 시행 과정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민간 영역은 법 집행부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와 자원에 접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들은 아동에 대한 범죄를 포함하는 상업적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함으로써 법 집행부를 도울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접근을 막음으로써 법 집행부를 도울 수 있다.<sup>167</sup>

아동 성학대 해결에 있어 협력은 핵심이다. 협력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러 학문의 다양한 전문가의 전 지구적 네트워크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역 간 및 국가 간 협력은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국경이 없고 다중 관할권적 특성을 지닌 범죄를 해결하고 범죄자가 그들의 행위의 합법성과 관련해 국가법과 국가별 처벌의 차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sup>168</sup> 예를 들어 스페인 경찰이 인터폴, 유로폴과 협력해 착수한 탄탈리오 작전에 중앙아메

<sup>167</sup> Kim-Kwang Raymond Choo, *Responding to Online Child Sexual Grooming: An Industry Perspective* No. 379,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Jul. 2009, at [http://www.aic.gov.au/media\\_library/publications/tandi\\_pdf/tandi379.pdf](http://www.aic.gov.au/media_library/publications/tandi_pdf/tandi379.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68</sup> Cristiana De Paoli,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ckl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t

리카, 남아메리카 및 유럽의 15개국이 참여했다.<sup>169</sup> 2016년부터 이 작전은 모바일 메시지 앱을 통한 아동 성학대물의 교환을 수사했으며 2017년 4월부로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38건을 체포했다. 콜롬비아 인터폴 국가 중앙국 호르헤 모라 코르테스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찾아내고 국가들 간 수사의 연결점을 밝혀내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말했다.<sup>170</sup>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력은 지원을 극대화하고 이중 업무를 방지하며 정보의 교환을 촉진시킨다.

## 예방적 및 보호적 이니셔티브

성적 목적을 가진 아동 온라인 그루밍 근절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들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실행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 정부 협동조합, 국제 및 국내 법 집행부 기관, 기업 지도자 및 비정부 기구들 – 이 아동을 인터넷 그루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안전을 장려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들은 그러한 행동을 범죄화하는 국가법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것을 도우며, 법 집행부가 가해자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수사하며 기소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노력의 목표와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적이고 보호적인 이니셔티브들이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 국가적 전략/행동 계획<sup>171</sup>

국가적 전략 또는 국가적 행동 계획은 국가의 특정 정책 우선화를 위한 장기적 청사진으로써 역할을 한다. 유관 액터(actors)들이 이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고 일관적인 정책, 과정, 기준, 메커니즘, 기술, 다른 대응들을 정립하는 것은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국가적 전략은 유관 당국 간, 모든 영역의 기관들 간에 협력을 조장할 수 있다.<sup>172</sup>

2017년 4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안전에 관한 국가적 행동 계획

<https://rm.coe.int/1680471128> (last visited Jul. 11,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69</sup> Global operation targets child sexual abuse material exchanged via messaging apps, Apr. 18, 2017, INTERPOL, at <https://www.interpol.int/en/News-and-media/News/2017/N2017-047> (last visited Jul 21,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70</sup> *Id.*

<sup>171</sup> A National Strategy Plan provides a comprehensive, long-term blueprint for a country that seeks to prioritize a particular issue, such as child protection or sexual exploitation, on its political, social and legislative agendas. It can be a very valuable tool for helping relevant stakeholders to understand the scope of the issue and to establish cohesive policies, procedures, standards, mechanisms, technologies, and other resources to address it.

<sup>172</sup>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weden, *National Action Plan for Safeguarding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4, Article no. S.2008.024, Dec. 2007, at <http://www.government.se/contentassets/fb78975ee42f41349f782189fbe929a/national-action-plan-for-safeguarding-children-from-sexual-exploitation> (last visited Aug. 18,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을 도입했다.<sup>173</sup> 이 계획의 전제는 2010 아동과 인터넷 안전에 관한 스코틀랜드 정부의 행동 계획과 2011/12 아동 인터넷 안전과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행동 계획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국가 행동 계획은 대중에게 아동과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술, 지식 및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이 계획은 좀 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sup>174</sup> 또한 이는 이전 행동 계획에서 성취한 발전을 토대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파트너십과 다양한 국가적 이니셔티브들<sup>175</sup> – ‘5권리 연대<sup>176</sup>’, ‘지금멈추세요! 스코틀랜드<sup>177</sup>’와 같은 예방적 노력 및 스코틀랜드의 라티세 작전(*Operation Latisse*<sup>178</sup>)과 같은 보호적 노력, 시행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호주 정부는 2009-2020 호주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 전략에 착수했다.<sup>179</sup> 국가 전략 결과 6은 아동 성학대 및 착취를 다루며 목표 대상이 분명한 예방 전략을 통한 모든 형태의 성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특정한 치료적 법적 대응을 통한 생존자 지원을 추구한다. 특히나 아동 성착취를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인터넷의 역할은 중심 과제로 기술되어 있다. 결과 6 아래 전략 6.1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온라인 착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 교육 이니셔티브, 지역사회 기반 인식 제고 행사, 조기 개입 전략들과 같은 행동들에 대해 논의한다.<sup>180</sup> 온라인 성착취의 발견, 수사, 기소 작업을 확장함으로써 전략 6.3은 법 집행과 사법 과정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sup>181</sup>

<sup>173</sup> *National Action Plan on Internet Safet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tish Government, Apr. 2017, at <http://dera.ioe.ac.uk/28891/1/00516921.pdf> (last visited Jul. 18,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74</sup> *Id.*

<sup>175</sup> *Id.* at 3, 13-14.

<sup>176</sup> 5Rights Youth Commission is a group of 18 young people ages 14-21 from all over Scotland investigating the online world and the rights of young people in that space. See, YoungScot, *5Rights Youth Commission*, at <http://young.scot/5rights/> (last visited Ju. 27, 2017); see also, Scottish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on Internet Safet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t <http://www.gov.scot/Publications/2017/04/1061/8> (last visited Jul. 27,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77</sup> Stop it Now! Scotland is a national program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they offer direct intervention to individuals in the country who are worried about their “sexual thinking or behavior, have been recently arrested or are a concerned family member”. *Stop it Now! Scotland*, at <https://www.stopitnow.org.uk/scotland.htm> (last visited Jul. 21,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78</sup> Operation Latisse is the first-ever national operation solely focused on the various forms of online sexual abuse; and this project has identified over 500 children who were either victims or potential victims of online child sexual abuse or related abuse. See, *Thirty million images of child sexual abuse recovered*, Jul. 29, 2016, Police Scotland, at <http://www.scotland.police.uk/whats-happening/news/2016/july/thirty-million-images-of-child-sexual-abuse-recovered-during-operation> (last visited Jul. 21,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79</sup>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 Jun. 200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t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publications-articles/protecting-children-is-everyones-business>?HTML (last visited Jul. 21,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80</sup> *Id.*

<sup>181</sup> *Id.*

## 발전된 법적 도구와 법적 과정

세계의 국가들은 모든 법이 포괄적이거나 효과적이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아동 대상 범죄 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진전을 이루었다. 법적 도구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개정은 효율성 향상, 형별 조정, 범죄 동향 및 지속적으로 변하는 전체 그림의 최신 업데이트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아동학대예방기구(NSPCC)는 영국에서 2014년 10월 ‘법의 허점Flaw In The Law’ 캠페인을 발족했다. 이 캠페인은 성인이 아동에게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범죄화 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서명운동으로 온라인 아동 보호부 장관에게 새로운 법 제정을 요구했다. 2014년 12월, 영국 수상은 새로운 법이 곧 제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2015 중범죄법의 일부로 마침내 통과되었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성인들은 기소될 수 있으며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될 수 있다.

\*영국아동학대예방기구, ‘법의 허점Flaw In The Law’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Flaw in the Law*)

스웨덴 정부는 2008년 성착취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을 업데이트했다.<sup>182</sup> 국가적 행동 계획의 협조하에, 스웨덴 정부는 성범죄법 공포를 통해 형법의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법을 개정에 초점을 맞추는 조치를 취했다.<sup>183</sup>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현존하는 형법이 성적 목적을 갖고 아동과 접촉(아동 그루밍) 하려 하는 성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을 수사하고 현존하는 법이 아동을 보호하기에 충분한지를 고려하기 위해 법무부에 의해 위원회가 설립되었다.<sup>184</sup> 위원회는 성적 목적을 가진 아동과의 접촉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sup>185</sup> 궁극적으로 성적 목적으로 아동과의 접촉에 관한 이 새로운 조항, 제10a절은 형법에 도입되었고 2009년 7월 1일 시행되었다.<sup>186</sup> 제10a절은 15세 미만의 아동과 만나기로 동의하고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한 사람을 처벌 가능하도록 한다.<sup>187</sup>

위장 수사에서 붙잡힌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실제 아동(a real child)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법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sup>188</sup> 또한 법은 위장 수사에 관여한 법 집행 관료의

<sup>182</sup>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National Action Plan for Safeguarding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10, at <http://www.government.se/contentassets/fb78975ee42f41349f782189fbec929a/national-action-plan-for-safeguarding-children-from-sexual-exploitation> (last visited Jul. 11,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83</sup> *Id.* at 10.

<sup>184</sup> *Id.* at 11.

<sup>185</sup> *Id.*

<sup>186</sup> ECPAT Sweden, *Comments to the fifth Swedish governmental report from ECPAT Sweden* 13, Feb. 28, 2014, at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RC/Shared%20Documents/SWE/INT\\_CRC NGO\\_SWE\\_18037\\_E.pdf](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RC/Shared%20Documents/SWE/INT_CRC NGO_SWE_18037_E.pdf) (last visited Jul. 25, 2017).

<sup>187</sup>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Swedish Penal Code, Chapter 6*, Sep. 22, 2014, at [http://www.government.se/contentassets/602a1b5a8d65426496402d99e19325d5/chapter-6-of-the-swedish-penal-code\\_unofficial-translation\\_20140922.pdf](http://www.government.se/contentassets/602a1b5a8d65426496402d99e19325d5/chapter-6-of-the-swedish-penal-code_unofficial-translation_20140922.pdf) (last visited Sep. 14,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88</sup>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Online Child Grooming Laws*, HIGH TECH CRIME BRIEF, NO. 17 (Apr. 2008), at

보호와 책임(liabilities)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아래에 추가적으로 논의된다).<sup>189</sup> 온라인 채팅에서 신빙성 있게 잘 대화하고 온라인 성범죄자들과 조심스럽게 대화하도록 수사관들이 특별히 훈련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함정 수사가 아니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해자들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함정수사의 방어를 위함이다.<sup>190</sup>

단순히 특정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법 집행부에 수사를 진행하고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권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수사, 체포, 기소 및 유죄 판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때 목표는 이러한 전략들의 효능을 향상시키고 이 사건들의 성공적인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사 방식에서 함정 수사는 특히 온라인 학대를 포함하는 아동 성학대 및 착취의 발견, 예방, 기소에 있어 이점을 제공한다. 위장 온라인 작전은 수사관들이 아동으로 가장해 채팅방에 들어가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 오프라인 수사에서처럼 물리적 신분을 바꾸거나 위장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 몇 달 간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선제적 방법이다.<sup>191</sup> 선제적 작전은 범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집행부 관료가 범죄 억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며 이는 범죄 발생 후에 대처하는 사후 조치와 반대 개념이다.<sup>192</sup> SNS, 채팅방, P2P 사이트, 유사한 포럼, 이미 그루밍 당한 아동의 프로파일 넘겨받기 또는 가짜 프로필 생성, 이미 알려진 성범죄자의 행위 모니터링과 같은 선제적 단속이 이용될 수 있다.<sup>193</sup>

특히나 온라인 그루밍에 관련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만남의 부재 시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성적으로 착취적인 의사소통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학대를 밝히고 나서, 또는 선제적 위장 경찰 수사의 결과로써만 경찰 당국에게 알려질 수 있다.<sup>194</sup> 그러므로 온라인 위장 작전은 피해 아동이 신고하기 전에 법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를 밝히는 것을 돋는다.<sup>195</sup> 함정 수사는 범죄 활동 발견을 넘어 신뢰성 있고 직접

---

<sup>189</sup> [http://aic.gov.au/media\\_library/publications/htcb/htcb017.pdf](http://aic.gov.au/media_library/publications/htcb/htcb017.pd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90</sup>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Study on the Effects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on the Abuse and Exploitation of Children* 57, 2015, at [https://www.unodc.org/documents/organized-crime/cybercrime/Study\\_on\\_the\\_Effects.pdf](https://www.unodc.org/documents/organized-crime/cybercrime/Study_on_the_Effects.pdf) (last visited Jul. 2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91</sup> Louise Tickle, *How Police Investigators are Catching Paedophiles Online*, THE GUARDIAN, Aug. 22, 2012, at <https://www.theguardian.com/social-care-network/2012/aug/22/police-investigators-catching-paedophiles-online> (last visited Jul. 2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92</sup> UNODC, *supra* note 193, at 43.

<sup>193</sup> Jon Taylor, *Policing social networking sites and online grooming*, INTERNET CHILD ABUSE: CURRENT RESEARCH AND POLICY 126, 143, (Julia Davidson and Petter Gottschalk eds. 2011).

<sup>194</sup> *Id.* at 143. See also, Gregor Urbas, *Protecting Children from Online Predators: The Use of Covert Investigation Techniques by Law Enforcement*, University of Canberra,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6(4) 410-425 (2010)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95</sup> Juliane Kloess, *supra* note 86, at 132.

<sup>196</sup> Jon Taylor, *supra* note 196, at 145.

적(정황적(circumstantial)과 반대되는)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기소와 범죄 억지를 도울 수 있다.<sup>196</sup>

“스위티” 사건은 경찰들이 가해자를 잡기 위해 컴퓨터로 만든 cg 아동을 사용한 위장 수사의 예시이다. 2013년 네덜란드 인간의 대지는 대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널리 퍼져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만 수천명의 피해자를 낳은 어느 아동 성착취 형식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바로 웹캠 아동 성관광이다. 인간의 대지 연구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아동들에게 웹캠 앞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1천 명이 넘는 성인들을 스위티라는 10세 필리핀 소녀의 도움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이 가상의 미끼는 인간의 대지 연구자들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창조되었다. 2만 명이 넘는 성인들이 이 가상의 소녀와 의사소통하고 있었고 연구자들은 SNS를 통해 이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위장 수사의 결과는 각국의 정부들에게 아동을 온라인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수사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전 세계적 서명을 지지하는데 이용되었다.

인간의 대지 보도자료, 국제적 온라인 성범죄사건의 수만명 아동 피해자 인간의 대지에 의해 드러나, 인간의 대지, 2013(\**Terre des Hommes Press Release, Tens of thousands of child victims in international online sex crimes case disclosed by Terre des Hommes, Terre des Hommes, 2013*)

호주 아동 학대 인터넷 유닛(CEIU)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성학대 및 착취에 대해 아직도 진행중인 수사에서 스트라이크 포스 트라울러는 온라인 그루밍 수사를 위한 잠복 수사 이용의 또 다른 예이다. 호주 아동 학대 인터넷 유닛(CEIU)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정기적으로 온라인 잠복 수사를 시행한다. 이 잠복수사에서 체포 건은 2016년 거의 일주일에 1건이었으며<sup>197</sup> 2017년 4월 기준 벌써 체포 8건이 보고되었다.<sup>198</sup> 체포된 사람들은 십대부터 70대로 교사, 신부, 사제, 경찰 사관학교 학생 등으로 다양했다.<sup>199</sup> 호주 아동 학대 인터넷 유닛(CEIU)은 가상의 아동(음란물)을 포함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70%에 육박하는 대다수의 사건은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며 자녀의 온라인 대화를 눈치챈 부모들에 의한 제보가 법 집행부로 신고되었다고 밝혔다.<sup>200</sup> 이러한 수사에서 위장 경찰관은 채팅 사이트, SNS, 다른 앱을 살살이 뒤지며 가해자가 접근하기를 기다린다.<sup>201</sup> 위장 경찰관들은 가해자와 성적 대화를 시작하지 않도록, (잠재적) 가해자가 뒷을 놓지 않았다면 저지르지 않았을 범죄를 저지에 걸려 무죄를 주장

<sup>196</sup>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Compliance with the Attorney General's Investigative Guidelines (Redacted), Special Report (2005), Chapter Four: The Attorney General's Guidelines on FBI Undercover Operations* 138,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at <https://oig.justice.gov/special/0509/final.pdf> (last visited Jul. 2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97</sup> Rachel Olding, *Online grooming: Strike Force Trawler undercover police expose a dark world*, Dec. 19, 2016, THE SYDNEY MORNING HERALD, at <http://www.smh.com.au/nsw/online-grooming-strike-force-trawler-undercover-police-expose-a-dark-world-20161215-gtc600.html> (last visited Jul. 28,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98</sup> Nick Hansen and Sarah Crawford, *Alleged Dee Why paedophile nabbed after 'dad' turned out to be undercover cops*, Apr. 21, 2017, THE DAILY TELEGRAPH, at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45cb1acd8a4599ddcc9e7164e.html> (last visited Jul. 28,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199</sup> *Id.*

<sup>200</sup> *Id.*

<sup>201</sup> Rachel Olding, *supra* note 201.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sup>202</sup>

법이 온라인 그루밍 근절을 위해 온라인 위장 수사를 허용해야만 한다. 또한 실제 아동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sup>203</sup> 온라인 위장 수사는 법 집행부가 온라인 아동 성학대를 근절하고 그루밍 과정과 새로운 트렌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온라인 가해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장하여 범죄 억지 역할을 할 수 있다.<sup>204</sup> 이러한 점에서 캐나다, 그리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들은 온라인 가해자 체포에 이용된 온라인 위장 수사가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연구하고 업데이트했다.<sup>205</sup>

### 신고 메커니즘

온라인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임이다. 신고 메커니즘은 개인들이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전화 핫라인과 온라인 “팁라인”과 같은 신고 메커니즘들은 수상한 범죄에 관련한 실마리와 언질을 접수한다. 예를 들어 국제 인터넷 핫라인 협회(INHOPE)는 45개국 51개 핫라인 조직으로 의심스러운 아동 성학대물이나 수상한 다른 범죄를 익명으로 신고할 방법을 대중에게 제공한다.<sup>206</sup> 신고가 접수된 핫라인에서는 신고된 내용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가 진전될 수 있도록 유관 법 집행 기관으로 사건을 넘긴다.<sup>207</sup> 그러한 기관 중 하나는 미국의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로(NCMEC)이다. 미국실종·아동센터(NCMEC)는 “사이버팁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FBI, 이민세관법 집행부(Immigration and Customs Law Enforcement), 미국우편조사서비스(US Postal Inspection Service), 미국 비밀경호국(US Secret Service) 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한다.<sup>208</sup> 1998년과 2016년 6월 사이 의심스러운 아동 성착취건이 1천2백만 7천 건이 사이버팁라인으로 접수되었다.<sup>209</sup> 영국의 범죄물 신고 핫라인인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대중이 의심스러운 온라인 아동 성학대물을 익명으로 신고

<sup>202</sup> *The Sting Operation: How Law Enforcement Catches Online Predators*, Aug. 25, 2016, TeenSafe, at <https://www.teensafe.com/blog/sting-operation-law-enforcement-catches-online-predators/> (last visited Aug. 22,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03</sup> Gregor Urbas, *supra* note 197

<sup>204</sup> Online Grooming and UK Law, *supra* note 82, at 10.

<sup>205</sup> 5 men arrested in child luring sting operation, Feb. 26, 2013, CBC NEWS, at

<http://www.cbc.ca/news/canada/nova-scotia/story/2013/02/26/ns-ice-child-luring-arrest.html>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Crimes Amendment Act (No. 3) 2011,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ee also Legislation – Grooming, at <http://www.safeline.gr/en/legislation/grooming> (last visited Jul.. 20, 2017)

<sup>206</su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INHOPE), *At A Glance*, at

<http://www.inhope.org/gns/who-we-are/at-a-glance.aspx>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07</sup> *Id.*

<sup>208</sup>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 *Cybertipline*, at <http://www.missingkids.com/cybertipline>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09</sup> *Id.*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접수된 신고를 분석한다.<sup>210</sup>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2016년 웹사이트와 뉴스 단체에 관한 105,420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7,790)이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포함했다고 확인했다.<sup>211</sup> 인터넷 감시 재단(IWF)는 수집과 분석을 넘어 아동 성학대 이미지와 영상 삭제에도 주력한다.<sup>212</sup> 캐나다의 텁라인도 이와 유사하게 온라인 아동 성착취 신고를 접수하고 법 집행부와 협력하며 대중에게 정보 및 다른 인터넷 자원을 제공한다.<sup>213</sup> 웹사이트 Cybertip.ca는 1개월 평균 신고 3천 건과 페이지뷰 8만 건이 접수된다.<sup>214</sup>

### **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법이 제정되고 나면 법 집행부는 관련된 법 조항들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 집행부 관료, 사회복지사, 변호사, 판사 및 아동과 일하는 다른 직업군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동 성학대 및 착취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문제의 이해, 아동 성학대 및 착취 인지, 아동에 대한 사이버 범죄 수사 및 증거 수입, 피해 아동 찾기 및 인터뷰가 포함된다. 역량 강화는 온라인 아동 성학대 예방과 수사에 더 큰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고 광범위한 토의, 경험과 아이디어 교환의 장을 제공한다.<sup>215</sup>

예를 들어 2016년 10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엘살바도르 검사 아카데미와 협력해 수많은 엘살바도르 도시의 검사 26명 교육을 마쳤다.<sup>216</sup> 검사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아동범죄 및 그루밍, 사이버 따돌림, 성적 협박(sextortion)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법적, 수사적 기술적 측면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sup>217</sup> 이번 교육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도 적용 가능한 국가법, 법정에서의 디지털 증거 제출, 증인 인터뷰와 준비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이후 모의 법정이 이어졌다.<sup>218</sup>

<sup>210</sup> 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What We Do*, at <https://www.iwf.org.uk/about-iwf>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11</sup> 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IWF Annual Report 2016*, at <https://annualreport.iwf.org.uk/> (last visited Jul. 28,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12</sup> IWF, *supra* note 214.

<sup>213</sup>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About Cybertip.ca*, at <https://www.cybertip.ca/app/en/about> (last visited Jul. 28,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14</sup> *Id.*

<sup>215</sup>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weden, *supra* note 176, at 35.

<sup>216</sup> UNODC Continues Strengthening El Salvador Capabilities to Fight Crimes against Children Facilitat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at <http://www.unodc.org/ropan/en/unodc-continues-strengthening-el-salvador-capabilities-to-fight-crimes-against-children-facilitated-by-information-and-communication-technologies.html> (last visited Jul. 24,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17</sup> *Id.*

<sup>218</sup> *Id.*

##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대중이 지역 사회 내 아동이 성학대 또는 착취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행동하고 대응하기 위해 법, 자원, 가용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 성학대 문제에 초점을 둔 교육, 콘퍼런스, 대중 아웃리치(Public outreach)는 부모, 아동, 교사 및 학교에 근무하는 아동 직업군, 지역사회 전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sup>219</sup>

점점 증가하는 온라인 그루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 2016년 차일드라인(Childline)이 #당신의셀피를들어요(#ListenToYourSelfie) 캠페인<sup>220</sup>을 발족했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성착취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sup>221</sup> 이 캠페인은 온라인 성학대에 대해 걱정하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상담 회기가 2015년 24% 증가했다는 차일드라인(Childline)의 자료에 따라 문제 대응을 위해 고안되었다.<sup>222</sup>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앱과 웹캠 사용의 증가 때문이다.<sup>223</sup> 2015년 3,716건의 상담이 제공되었으며 그중 65%의 내담자가 12세에서 15세, 28%는 16세에서 18세 아동이었다.<sup>224</sup> 캠페인은 두 단편영화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파티/The Party”와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The Gam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래 간 관계 학대, 성착취의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 동성 온라인 그루밍을 다룬다.<sup>225</sup> 차일드라인(Childline)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이 캠페인은 최대한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루밍의 정후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다른 불건전한 관계를” 인지하도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에서 진행되었다.<sup>226</sup>

## 민간 부문 참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터넷과 다른 정보통신기술의 도래, SNS 플랫폼의 성장으로 가해자들이 아동들을 성적으로 착취할 기회가 많아졌다. 법적 접근이 온라인 환경에 내재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

<sup>219</sup>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weden, *supra* note 176, at 22.

<sup>220</sup> Childline – *Info and advice*, at

<https://www.childline.org.uk/info-advice/friends-relationships-sex/sex-relationships/healthy-unhealthy-relationships/> (last visited Jul. 24,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21</sup> Jessica Goodfellow, *Childline unveils ‘ListenToYourSelfie campaign to tackle online grooming*, THE DRUM, at <http://www.thedrum.com/news/2016/09/19/childline-unveils-listentoyourselfie-campaign-tackle-online-grooming>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22</sup> *Id.*

<sup>223</sup> Pete Henshaw, *#ListenToYourSelfie campaign aims to tackle online sexual abuse*, Sep. 21, 2016, SECED, at <http://www.sec-ed.co.uk/news/listentoyourselfie-campaign-aims-to-tackle-online-sexual-abuse/> (last visited Jul. 24,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24</sup> *Id.*

<sup>225</sup> Jessica Goodfellow, *Childline unveils ‘ListenToYourSelfie campaign to tackle online grooming*, THE DRUM, at <http://www.thedrum.com/news/2016/09/19/childline-unveils-listentoyourselfie-campaign-tackle-online-grooming>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26</sup> *Id.*

한 중요한 일부이지만 민간 부문 액터(actors)들은 법 집행부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예방과 근절을 도울 수 있다. SNS, 테크 기업, 전자 서비스 제공자, 금융 서비스 업계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기회 감소와 향상된 범죄 발견도에 기여하고 있다.<sup>227</sup>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카이프, 우부(Oovoo)와 같은 SNS와 앱들은 아동과 접촉하고 그들을 그루밍하기 위한 온라인 가해자들에 의해 사용된다.<sup>228</sup> 이 회사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 행동 예방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SNS들은 모든 프로필 상단에 “패닉 버튼”을 두어 클릭 시 인터넷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그루밍 또는 다른 위협적 행동을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신고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sup>229</sup>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아동착취및 온라인보호센터(CEOP)는 2010년 협력을 통해 영국의 13세에서 18세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만들었다.<sup>230</sup> 이 앱은 사용자가 추가하면 프로필의 상단에서 볼 수 있고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다양한 위험한 온라인 의사소통에 대하여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아동들에게 위험한 온라인 행동 신고를 위한 단순하고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sup>231</sup> 시행 1개월 만에, 이 앱은 영국에서 5만 5천 회 다운로드 되었으며 온라인 학대 211건이 신고되었다.<sup>232</sup> 또한 어떤 SNS 회사들은 온라인 그루밍 또는 학대에 관한 법 집행부의 질의에 응답하는 독립적인 핫라인을 운영한다.<sup>233</sup>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과 활동들은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몇몇 주요 기업들은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아동을 성학대로부터 예방하는 곳에 적용했다. 테크 기업들은 특히 아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구글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순간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다른 테크 기업들도 그들의 전문성을 기여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법 집행부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아동 학대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토 DNA를 개발했다.

\*엑팻 인터내셔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동 성학대 근절을 위한 책임 강화(\*ECPAT Internation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in the Fight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2012)

<sup>227</sup> Kim-Kwang Raymond Choo, *supra* note 171.

<sup>228</sup> *Paedophiles using Clash of Clans and Instagram to groom children as young as seven*, Jan. 5, 2016, MIRROR ONLINE, at <http://www.mirror.co.uk/news/uk-news/paedophiles-using-clash-clans-instagram-7117707>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29</sup> *Facebook 'Panic Button' to Launch*, HUFFINGTON POST, Aug. 11, 2010, at [http://www.huffingtonpost.com/2010/07/12/facebook-panic-button-to\\_n\\_642590.html](http://www.huffingtonpost.com/2010/07/12/facebook-panic-button-to_n_642590.html) (last visited Aug.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30</sup> *Id.*

<sup>231</sup> *Id.*

<sup>232</sup> *Facebook Panic Button App 'Success'*, THE TELEGRAPH (Aug. 13, 2010) at [www.telegraph.co.uk/technology/facebook/7944466/Facebook-panic-button-app-success.html](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facebook/7944466/Facebook-panic-button-app-success.html) (last visited Aug.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33</sup> Kim-Kwang Raymond Choo, *supra* note 171.

법 집행부와의 협작을 넘어 SNS 회사들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아동 성학대 예방을 목표로 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조정하였다. 주요 SNS 플랫폼들은 법 집행부를 다루기 위한 프라이버시 등의 정책을 포함하며 소환장, 법정 명령, 체포 영장과 같은 개인 정보 이용 공개를 위한 법적 서류를 요구한다.<sup>234</sup> 플랫폼은 극단적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각각의 플랫폼은 그러한 응급 상황이 무엇 인지를 평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sup>235</sup>

SNS 회사와 유사하게 거대 테크 기업들도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을 만드는데 그들의 역할을 인지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CEOP)와 팀을 구성해 영국 인터넷 사용자를 위해 빨간 패닉 버튼을 만들었다.<sup>236</sup> 사용자가 패닉 버튼 클릭 시 컴퓨터 프로그램이 국가 범죄 경찰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온라인 성학대 신고를 위한 정보 페이지를 띠운다.<sup>237</sup>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동에게 인터넷 안전에 대해 교육하고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낯선 이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한다.<sup>238</sup>

아르헨티나의 대중적 모바일 기업 - 클라로, 텔레콤 퍼스널, 텔레포니카 모비스타 - 은 모바일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둔 최초의 GSM 협회 이니셔티브에 주력하고 있다. 이 모바일 회사들은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 모바일 기기 절도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들은 Equipo Nin@s의 아동 성학대 및 그루밍 근절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정보 및 인식 캠페인을 발족할 예정이다. 또한 자사의 소매점과 학대 신고 무료 헬프라인을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를 통해 인식 제고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적 헬프라인(0800-222-1717)을 통해 법과인권부의 폭력 피해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전자는 심리학 교수들과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24시간 신고를 접수하는 사회복지사들 집단으로 구성되어있다. 후자는 전화를 건 사람들이 아동 청소년 성학대 또는 모든 종류의 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아르헨티나 모바일 기업들 GSM 협회와 협력하여 모바일 폰 절도 및 아동보호 캠페인 발족, 2016년 4월 6일 (\*Mobile Operators Argentina Launch Mobile Phone Theft and Child Protection Campaigns in Partnership with GSMA, Apr. 6, 2016)

<sup>234</sup> *How Do We Respond to Legal Requests or Prevent Harm?*, Facebook, Jan. 30, 2015, at <https://www.facebook.com/about/privacy>; see also *Guidelines for Law Enforcement*, Twitter, 2014, at <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41949>; See also, *Information for Law Enforcement*, Instagram, 2015, at <https://help.instagram.com/494561080557017/>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35</sup> *Information fo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Emergency Requests*, Facebook Safety Center, <https://www.facebook.com/safety/groups/law/guidelines/>; *Guidelines for Law Enforcement – Emergency disclosure requests*, Twitter, at <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41949#14>; and *Information for Law Enforcement*, Instagram – *Emergency Requests*, Instagram, at <https://help.instagram.com/494561080557017/> (last visited Jul. 24, 2017).

<sup>236</sup> Zack Whittaker, *Microsoft, CEOP Adds Panic Button to IE8 to Fight Online Child Abuse*, ZD NET (Feb. 9, 2010) <http://www.zdnet.com/article/microsoft-ceop-adds-panic-button-to-ie8-to-fight-online-child-abuse/>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37</sup> *Id.*

<sup>238</sup> *How to help your kids use social websites more safely*, MICROSOFT, <http://www.microsoft.com/security/family-safety/kids-social.aspx>, (last visited Jul. 20, 2017); see also *Online predators: Help minimize the risk*, MICROSOFT, <http://www.microsoft.com/security/family-safety/predators.aspx>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다른 예시들로는 대중을 위한 인식 개선 자료, 테크 회사와 법 집행부 간의 협력, 법 집행부와 다른 관료들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정식 절차 등이 있다. 구글의 “알아두면 좋은” 캠페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과 유사하게 나이 확인, 프라이버시 세팅 사용 등 아동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들을 논의한다.<sup>239</sup>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정부, 비정부기구 등과 협작하여 온라인 안전 정보가 희소한 국가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장려했다.<sup>240</sup>

기업들, 특히 청소년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사이트, 앱, 게임으로 온라인 존재감이 높은 기업들은 안전하고 나이에 적합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 동의, 이 기업들의 플랫폼에서 금지된 활동과 행동을 개괄하는 행동규칙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신고 메커니즘과 온라인 그루밍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적 정책을 포함하는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온라인 착취 건을 처리하기 위한 정식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인력 또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내용 모니터링 역시 유해한 커뮤니케이션 및 내용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

모바일 기술의 부상과 향상된 연결성은 특수한 위험을 제기하지만 최근 이니셔티브들은 아동을 위한 온라인 안전을 향상시키는 다른 방법들을 제공한다.<sup>241</sup> 많은 모바일 폰 생산자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을 제한하고 부모들이 모든 모바일 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는 통제 방법을 제공한다. 다른 기술들은 부모들이 자녀의 모바일 폰 활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부모들은 웹캠 사용이나 문자 사진 전송과 같은 특성 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sup>242</sup> 게다가 어떤 모바일 폰 기술들은 아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아동의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패닉 코드 전송을 위한 안전 도구를 제공하기도 한다.<sup>243</sup>

마지막으로, 글로벌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남녀노소 불문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고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3세에서 17세 아동 72%는 컴퓨터, 게임 콘솔, 휴대용 기기로 비디

<sup>239</sup> Family Safety Basics, Google, at <http://www.google.lk/safetycenter/families/start/basics/> (last visited Jul. 23,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40</sup>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Making the Internet a Better and Safer Place: A Global Directory of the Online Safety Space*, at <http://fosigrid.org/about> (last visited Jul. 23, 2017); See also, Google Safety Center, Google, at <http://www.google.lk/goodtoknow/>.

<sup>241</sup> A Parents' Guide to Mobile Phones, ConnectSafely, at [http://www.connectsafely.org/wp-content/uploads/mobile\\_english.pdf](http://www.connectsafely.org/wp-content/uploads/mobile_english.pdf) (last visited Jul. 23,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42</sup> 11 Mobile Parental Controls from AT&T, Verizon, Sprint & T-Mobile, Your Sphere, at <http://Internet-safety.yoursphere.com/2011/09/mobile-parental-controls-att-verizon-sprint-t-mobile/> (last visited Jul. 20, 2017); see also Sara Yin, *Parental Control Apps for Smartphones*, PC MAG, <http://www.pc当地.com/article2/0,2817,2407509,00.asp>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43</sup> Panic Button, Safe Kidzone, at <http://safekidzone.com/features/panic-button/> (last visited Aug.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오게임을 하며<sup>244</sup> 온라인 게임을 하는 아동의 절반 이상(52%)이 낯선 이와 게임을 한다고 밝혔다.<sup>245</sup> 많은 온라인 게임들은 오디오 또는 텍스트 요소를 갖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따라서 성범죄자들이 아동에게 연락하고 아동을 조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sup>246</sup> 퓨 리서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게임을 하는 10대 남학생의 71%, 10대 여학생의 28%가 온라인 음성 연결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소통한다.<sup>247</sup>

2012년 *게임 오버* 작전(Operation Game Over)은 뉴욕 법무장관과 협약 이후 수많은 비디오 게임 회사가 뉴욕 주에 있는 3천 5백 명이 넘는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계정을 삭제해야 했던 사태로 이어졌다.<sup>248</sup> 협약의 목적은 낯선 사람들과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는 수백만 남녀노소 무리들 중에 성범죄자를 없애는 것이었다.<sup>249</sup> 성범죄자와 연결된 계정을 차단하는 것에 동의한 기업으로는 엑스박스 라이브를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 및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소유한 소니가 있다.<sup>250</sup>

2017년 2월 캐나다 아동보호센터는 부모들과 청소년 게이머들에게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 사이트 로블록스를 유의할 것을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인(그루밍) 시도와 노골적인 메시지 전송 관련 사건이 다수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아동보호센터는 Cybertip.ca를 통해 캐나다 전역에서 로블록스 채팅 기능을 이용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채팅 메시지와 직접 만남 요청에 관련한 신고를 접수했다. 로블록스 대표자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모든 사용자들의 계정은 친구들과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도록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로블록스는 채팅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공격적 언어를 찾아 차단하며 중재 네트워크(moderator network)를 이용해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각각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파일을 검토한다. 로블록스를 이용한 그루밍 시도와 관련해 유사한 경고들이 호주와 영국에 발령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수사가 진행되었다.

\*아동보호단체, 부모들에게 게임 사이트 로블록스에서 행해지는 유인, 노골적 대화에 대해 경고, CBC, 2017년 2월 24일  
(\*Child protection group warns parents about luring, explicit chat on game site Roblox, CBC, Feb. 24, 2017. Popular Online Gaming Site for Kids is Breeding Ground for Child Sex Predators, Mother says, NBC, Apr. 6, 2017)

<sup>244</sup> 11 Mobile Parental Controls from AT&T, Verizon, Sprint & T-Mobile, Your Sphere, at

<http://Internet-safety.yoursphere.com/2011/09/mobile-parental-controls-att-verizon-sprint-t-mobile/> (last visited Jul. 20, 2017); see also Sara Yin, *Parental Control Apps for Smartphones*, PC MAG,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407509,00.asp> (last visited Jul. 20,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45</sup> Aaron Katersky, *Online Gaming is Becoming Predators' Playground*, Apr. 5, 2012, ABC NEWS, at <http://abcnews.go.com/US/online-gaming-predators-playground/story?id=16081873> (last visited Jun. 16,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46</sup> Joseph Goldstein, *Video-Game Companies Agree to Close Sex Offenders' Online Accounts*, Apr. 5, 2012, NEW YORK TIMES, at <http://www.nytimes.com/2012/04/06/nyregion/video-game-systems-close-sex-offenders-online-accounts.html?mcubz=2> (last visited Jun. 16,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47</sup> Amanda Lenhart, et al., *Teens, Technology & Friendship*, Aug. 6, 2015, Pew Research Center, at <http://www.pewinternet.org/2008/09/16/teens-video-games-and-civics/> (last visited Jun. 16,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48</sup> Joseph Goldstein, *supra* note 250.

<sup>249</sup> *Id.*

<sup>250</sup> *Id.*

마인크래프트<sup>251</sup>, 런이스케이프<sup>252</sup>, 위자드101<sup>253</sup>과 같은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들 다수는 부모와 아동들이 온라인 그루밍 및 안전 채팅 기능, 특정 사용자 차단 리스트, 게임 내 채팅 조정 기능, 부적절하고 공격적 언어 차단을 위한 필터링 도구, 학대 신고 기능과 같은 다른 형태의 착취 예방을 돋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을 위한 멀티 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인 팝트로피카(Poptropica)는 미리 작성된 채팅 시스템을 사용하여 플레이어들이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질문과 답변 선택지를 활용한다.<sup>254</sup> 아동을 위한 안전한 가상 세계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유로운 채팅은 허락하지 않는다.<sup>255</sup> 또한 플레이어 아동의 신원을 확인할만한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sup>256</sup>

### 연구와 데이터 수집

아동 그루밍을 포함하는 아동 성착취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책 입안가들이 한 국가에서 이 문제의 실제 범위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돋는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는 범죄 동향을 평가하고 범죄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 건수를 줄이며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을 위한 필요한 인적 자원과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특히나 유용하다.

영국의 대표적인 아동 자선단체인 바나도스(Barnardo's)는 2016년 12월 선별된 성착취 사건들에 초점을 둔 “스냅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sup>257</sup> 이 설문의 목적은 영국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잉글랜드에서 두 곳, 북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sup>258</sup>에서 각각 한 곳, 아동 센터 총 다섯 군데에서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모든 아동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이 다섯 센터들에서만 지원한 아동의 숫자가 702명이었으며 그중 42%(297명)가 온라인에서 그루밍을 당했다.<sup>259</sup>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 중 3분의 2(182명)이 온라인에서 가해자를 만났으며 오프라

<sup>251</sup> NSPCC, *Minecraft: A parent's guide*, at

<https://www.nspcc.org.uk/preventing-abuse/keeping-children-safe/online-safety/minecraft-a-parents-guide/> (last visited Jul. 2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52</sup> Runescape, *Parent's Guide*, at <https://support.runescape.com/hc/en-gb/articles/206747519-Parent-s-Guide> (last visited Jul. 2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53</sup> Wizard101, *A Safe Game for Kids*, at <https://www.wizard101.com/game/kid-safe> (last visited Jul. 26,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54</sup> Poptropica, *FAQs*, at <http://www.poptropica.com/Poptropica-FAQ.html> (last visited Jul. 25,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55</sup> *Id*.

<sup>256</sup> *Id*.

<sup>257</sup> Carron Fox and Gunes Kalkan, *Barnardo's Online Grooming Survey 2016*, Dec. 2016, at

<http://www.barnardos.org.uk/barnardos-online-grooming-survey-2016.pdf> (last visited Aug. 24,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sup>258</sup> *Id*.

인에서 성착취를 당했다.<sup>260</sup> 이 아동의 대다수는 14세에서 17세였고 가장 어리게는 10세 아동도 있었다.<sup>261</sup> 기술을 이용해 발생한 착취에는 섹스팅, 영상/사진의 교환, 유해한 성적 행동, 온라인 게임을 통한 성적 롤플레이 등이 있었다.<sup>262</sup> 이 보고서는 정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동들이 성과 건전한 관계,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나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sup>263</sup>

---

<sup>259</sup> *Id.*

<sup>260</sup> *Id.*

<sup>261</sup> *Id.*

<sup>262</sup> *Id.*

<sup>263</sup> Wendy Smith-Yau, *Research Monitor December 2016*,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Dec. 2016, at [https://yjresourcehub.uk/our-community/resources-for-sharing/item/download/473\\_086970e71d310e2e2e3b4a7799a62386.html](https://yjresourcehub.uk/our-community/resources-for-sharing/item/download/473_086970e71d310e2e2e3b4a7799a62386.html) (last visited Sep. 18, 2017) (on file wit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 외국 법제 검토

○: 존재 / X: 부재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sup>1</sup>	“온라인 그루밍” 정의 <sup>2</sup>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sup>3</sup>
알바니아	X	X	X	X	○
알제리	X	X	X	X	○
안도라	X	X	X	X	○
앙골라	X	X	X	X	○
앤티가바부다	○	○ <sup>4</sup>	○	○	X
아르헨티나	○	○	○	○	○
아루바	○ <sup>5</sup>	○ <sup>6</sup>	○	X	○
호주	○ <sup>7</sup>	○	○	○	○
오스트리아	○ <sup>8</sup>	○ <sup>9</sup>	○	X	○
방글라데시	X	X	X	X	○

1.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각국의 아동은 18세 미만을 가리킨다.
2. 이 보고서에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연구임에도 그루밍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이므로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다. 따라서 다음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에 ○ 표시했다.
  - 의사소통, 유도, 유인, 제안, 꾀어냄 (또는 유사한 행동)
  - 성인에 의한 (18세 미만)아동
  - 인터넷 또는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서
  - 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나려고 하거나 온라인 성행위로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기 위함
3. 성범죄자는 아동의 어색함/불편함(inhibitions)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을 성행위에 둔감하게 만들기 위해, 성적 행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동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기 위해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루밍 과정의 일부로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4.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2013앤티가바부다 전자기기법 제10절은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법적인 정당성이나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나 혹은 전자 시스템에서 합리적(reasonable) 성인에 대한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아동 혹은 성인과의 관계를 구축, 유인 혹은 유도하는 행위).
5. 이 법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6. 아루바 형법의 제2:207조는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아동권리선언의 제23조의 시행이다. 이 조항에는 “그루밍”的 정의가 서술되어 있으며 우리 법안으로 넘어왔다. 또한 그루밍 용어의 해석은 형법에서 단 한번만 나타나며 이는 법안의 지시사항에 따라 그 어떤 정의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루바 정부 오라녜스타드 사회부 정책 담당관 M.A. 사샤 Z. 지어맨(Sasha Z. Geerman)씨가 국제실종·착취 아동센터로 보낸 이메일(2016년 11월 8일). 또한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루바 형법의 제2:207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컴퓨터 기기를 이용해 16세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에게 음란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만남을 제안하거나 그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행위 이미지를 생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 이 만남의 달성을 목표로 행동을 취했을 경우 2년 미만 형 또는 네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Afl. 25,000])
7. 이 법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8. 이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9.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오스트리아 형법(2015)의 제208a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1.통신수단, 컴퓨터 시스템 이용 또는 2.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 의도를 속이고 미성년자에게 개인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제안에 동의하고, 아동과 개인적 만남을 위해 구체적 준비 조치를 취하여 제201절부터 207a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누구라도 최대 2년형에 처할 수 있다…)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벨라루스	X <sup>10</sup>	X	X	X	○
벨기에	○ <sup>11</sup>	○ <sup>12</sup>	○	X <sup>13</sup>	○
부탄	X	X	X	X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X	X	X	X	○
보츠와나	○	○ <sup>14</sup>	X	X	○
브라질	○ <sup>15</sup>	○	○	○	○
브루나이	○ <sup>16</sup>	X <sup>17</sup>	○	X	○

10. 2015년 내무부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성적 특성을 가지거나 포르노그래피물을 제작하거나 포르노그래피 성격을 띤 영상물의 대상으로 명백히 16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과 성적 성격의 행위 또는 포르노그래피를 제작 또는 포르노그래피적 성격의 영상 제작 목적을 갖고 연락을 하는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 초안(인터넷 또는 다른 공공 전자 네트워크 또는 전용 전자 네트워크 사용 포함)… 현재 이 법안은 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주미 벨라루스 대사관 패이블 시들로브스키(Pavel Shidlovsky)씨가 벨라루스 공화국 내무부를 대표해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에 보낸 이메일(2016년 12월 18일).
11. 이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12.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지만 벨기에 형법(2014) 제377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13. 란사로테 협약 주석에 따라 아동을 만날 목적이 없이 행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현재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기소는 사실상 SW(스토킹) 제442bis조와 443~444조(명예훼손)에 근거한다. 주미 벨기에 대사관에서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로 카운셀러 데비 드만(Evy Deman)씨가 보낸 이메일.
14.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보츠와나 사이버범죄 및 컴퓨터 관련 범죄법 제16(4)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수단을 이용해 (a)18세 미만이거나 피의자가 18세 미만으로 여긴 자와 이 법(act)에 적용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 감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 또는 형법에 따른 성매매, 강간 또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를 목적… 또는 (c) 16세 미만이거나 피의자가 16세 미만으로 여긴 사람에게 오염 또는 형법에 따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15. 이 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16.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17. 16세 미만인 사람의 성적 그루밍에 관련하여 브루나이 형법(2012) 제377G조는 의사소통 수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불가리아	○	X <sup>18</sup>	○	○	○
캄보디아	X	X	X	X	○
캐나다 <sup>19</sup>	○	○	○	○	○
칠레	○ <sup>20</sup>	○	○	○	○
중국 <sup>21</sup>	X	X	X	X	○
콜롬비아	○	○	○	○	X
코스타리카	○ <sup>22</sup>	X	○	○	○

18. 제93조는 단어와 표현의 정의만을 제공함으로써 애매모호하거나 모순적인 판례법을 결과로 낳는 해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일러둔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표현이 충분히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지만 불가리아 입법가들은 형법 제93조에 이 표현의 법적 정의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택했다. 주미 불가리아 대사관 정치부의 차관 미하일 보즈코브(Mihail Bozhkov)이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로 보낸 이메일.

19.

「캐나다 형법전 제172조의1」 [법률 제46호, 2017.7.3.개정] 제5장 성범죄, 미풍양속 및 치안문란행위 아동유인 제172조의 1 원문

- (1) 전자통신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과 통신을 하는 사람은 범죄자이다.
  - (a) 제153조제(1)항, 제155조, 제163조의1, 제170조, 제171제 또는 제279조의011 또는 제 279조의02제(2)항, 제279조의03제(2)항, 제286조의1제(2)항, 제286조의2제(2)항 또는 제286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를 꾀할 목적으로 18세 이하 또는 피의자가 18세 이하라 믿었던 사람
  - (b) 제151조 또는 제152조, 제 160조제(3)항 또는 제173조제(2)항 또는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80조에 따른 범죄행위를 꾀할 목적으로 16세 이하 또는 피의자가 16세 이하라 믿었던 사람
  - (c) 제281조에 따른 범죄행위를 꾀할 목적으로 14세 이하 또는 피의자가 14세 이하라 믿었던 사람

**처벌**

- (2) 제(1)항에 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 (a) 중범죄로 유죄를 받고 최소 1년에서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는
- (b) 즉결판결로 처벌가능한 행위로 유죄가 되고 최소 6월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연령 관련 전제**

- (3) 제(1)항(a)호,(b)호 또는 (c)호의 사람이 피의자에게, 경우에 따라, 18세이하, 16세이하, 14세 이하에 해당 된다는 증거는, 반대증거가 없어서, 피의자가 그 사람이 그 나이 이하임을 믿었다는 증명이 된다.

**변론제한**

- (4) 경우에 따라, 피의자가 그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었다면 피의자가 제(1)항(a)호,(b)호 또는 (c)호의 사람이 적어도 18세, 16세, 14세가 된다고 믿었다는 것이 이 단락에 따른 기초에 대한 변론이 안 된다.

출처/국문번역: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20. 이 법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21. 2016년 11월, 홍콩의 법개혁위원회(LRC)는 아동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관한 법개혁을 위한 1차 제안을 담은 자문 보고서를 발간했다. 법개혁위원회는 권고사항 22에서 아동의 성적 그루밍 범죄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안의 초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응답 제출의 마감일은 2017년 3월 10일이었다. 법개혁위원회의 전체 보고서는

<http://www.hkreform.gov.hk/en/publications/sexfollowchild.htm>에서 열람할 수 있다. 마카우와 타이완의 법은 다섯 가지 기준 중 그 어떤 것도 다루지 않는다.

22. 이 법은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크로아티아	○ <sup>23</sup>	○ <sup>24</sup>	○	X	○
쿠바	X	X	X	X	○
키프로스	○ <sup>25</sup>	○	○	X	○
체코 공화국	○ <sup>26</sup>	X <sup>27</sup>	○	X	○
콩고 민주공화국	X	X	X	X	○
덴마크	X	X	X	X	○
도미니카 공화국	X	X	X	X	○
에콰도르	○	○	○	X	○
엘살바도르	○	○	○	○	○
에리트레아	X	X	X	X	○
에스토니아	○ <sup>28</sup>	X <sup>29</sup>	○	X	○
에티오피아	X	X	X	X	○
핀란드	X <sup>30</sup>	X <sup>31</sup>	X	X	○

23. 이 법은 1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24.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크로아티아 형법(2011) 제161항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정의한다(성인 스스로 또는 제삼자가 이 법[“15세 미만 아동의 성학대”] 제158조에 해당하는 형사범죄를 저지 를 의도를 갖고 정보통신기술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 15세 미만의 사람과 만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제안이 그러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물질적 행위가 뒤따르는 경우 최대 3년형에 처한다.)
25. 이 법은 1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26. 이 법은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27. 아동과의 불법적 접촉 성립에 관련한 체코 공화국 형법(2012) 제 193b항은 의사소통의 수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28. 이 법은 14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29. 성적 목적으로 아동과의 만남에 대한 동의에 관련하여 에스토니아 형법(2017)은 의사소통의 수단을 언급하지 않는다(형법 제178.1조).
30. 이 법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31. 성적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제의를 하는 것과 관련된 핀란드 형법(2015) 제20장 8(b)절은 가능한 의사소통 의 수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프랑스	○ <sup>32</sup>	○ <sup>33</sup>	○	○	○
김비아	X	X	X	X	○
독일	○ <sup>34</sup>	○ <sup>35</sup>	○	○	○
가나	X	X	X	X	○
그리스	○ <sup>36</sup>	○	○	○	X

32. 이 법은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33.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프랑스 형법(2004) 제227-22-1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전자 통신 기술을 이용해 미성년 아동(15세 미만) 또는 미성년 아동으로 가장한(위장 경찰) 사람에게 대한 성적 제의를 (최대)2년형 및 3만 유로 또는 온라인 의사소통이 실질적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5년 징역 및 7만 유로 벌금형에 처한다.) 주미 프랑스 대사관 마리-로렌스 나바리(Marie-Laurence Navvari)씨가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로 보낸 이메일(2016년 9월 28일).

「프랑스 형법」 [2017.9.17. 개정] 원문

제2편: 사람에 대한 중죄와 경죄/제2장: 사람에 대한 침해/제7절: 미성년과 가족에 대한 침해/제5관: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제L227-22-1조 원문

성년자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자에게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제안을 하는 행위는 징역 2년과 벌금 30,000유로에 처한다.

이 제안이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 징역 5년과 벌금 75,000유로에 처한다.

출처/국문번역: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34. 이 법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35.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독일 형법(2005) 제176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독일 형법 제176조」 [2017.3.1. 개정] 제176조 아동의 성적 학대 원문

(1) 14세미만의 사람(아동)과 성행위를 하거나, 아동이 자신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람은 6개월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2) 제3자와 성행위를 하도록 아동을 유인하거나 제3자가 아동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3) 특히 중대한 사건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4) 누구든 다음과 같은 경우, 3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1. 아동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사람

2. 행위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처벌의 위험이 없지만, 아동을 유인해 성행위를 하게하는 사람

3. 글(제11조제(3)항) 또는 정보나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a) 아동을 가해자와 또는 가해자나 제3자 앞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하도록 하는 성행 위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또는

b) 제184b조제(1)항(3)호 또는 제184b조제(3)항에 의거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또는

4. 음란한 사진이나 표상을 보여줌으로써, 음란물의 음반을 재생하거나, 정보와 통신기술 또는 적절한 연설을 통해 음란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5) 아동에게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행동을 제안하거나 약속을 주선한 사람 또는 다른 이에게 그러한 행위를 약속한 사람은 3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6) 미수도 처벌이 가능하다. 제(4)항제(3)호와 (4)호 그리고 제(5)항에 따른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국문번역: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36. 이 법은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그레나다	○	○ <sup>37</sup>	X	○ <sup>38</sup>	X
과테말라	X	X	X	X	○
가이아나	○ <sup>39</sup>	○	○	X	○
바티칸 시국	○	X <sup>40</sup>	○	○	○
온두拉斯	X	X	X	X	○
헝가리	○ <sup>41</sup>	X <sup>42</sup>	○	○	○
아이슬란드	○ <sup>43</sup>	○ <sup>44</sup>	○	X	○

37.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2013그레나다 전자범죄법 제12절2조c항은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38. 2013전자범죄법 제12조(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아동이 성적으로 노골적 행위를 위한 온라인 관계로 길들이기 (cultivate), 유인을 목적으로 한 전자 시스템 사용을 범죄화한다. 아동과 면대면으로 만나야 한다는 요구조건은 없다.
39. 이 법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40. 성적 목적의 아동의 온라인 그루밍 활동은 대부분이 바티칸 시국법 하에 처벌이 가능하지만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므로 온라인 상의 아동에게 성적 제의, 즉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다. 바티칸 시국의 법적 전통에서는 사용된 단어의 분명한 의미로써 명시된 것에 대해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형법 해석에 있어 판사에게 더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법 집행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확보한다고 여겨졌다. 주미 바티칸 대사관 대주교 크리스토프 피에르(Christophe Pierre)씨가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로 보낸 서신(2016년 11월 14일).
41. 이 법은 14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42. 14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하는 것에 관련한 헝가리 형법(2012)의 제198(4)(1)조는 가능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43. 이 법은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44. 아이슬란드의 일반형법(2012) 제202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동을 정의한다(성관계 또는 성적 관계를 목적으로 15세 미만의 아동과의 만남을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을 통하여거나 다른 정보 통신 또는 통신 기기 또는 다른 방식으로 주선하는 자를 최고 2년형에 처한다.).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인도	○	○ <sup>45</sup>	○	○	○
인도네시아	X	X	X	X	○
이란	X	X	X	X	○
아일랜드	○ <sup>46</sup>	○	○	○	○

45.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인도 정보통신법(개정)(2008) 제67B절은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c)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 또는 컴퓨터 상에서 합리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하는 방식으로 한 명 이상의 아동과 온라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아동을 길들이거나(cultivate) 유인하는 자 또는 (d) 온라인 아동학대를 원활하게 하는 자 또는 (e) 전자기기로 스스로의 학대 또는 아동과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이들을 촬영하는 자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다.)

「인도 정보통신법(2008년 개정) 부분번역본」 [2000년 제정, 2008년 개정] 원문

제 67조 B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 등에 아동이 묘사된 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유포 또는 전송하는 다음의 자에 대한 처벌

제(a)항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나 행동에 아동을 연루된 전자적인 자료를 유포 또는 전송 및 유포 또는 전송을 야기

제(b)항 음란하고 외설적이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묘사하는 전자적 자료를 문자 또는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 수집, 자료 탐색, 검색, 다운로드, 광고, 홍보 및 교환하거나 유포

제(c)항 아동에 대하여 온라인 관계로서 다른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아동과 함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 육성, 유인 및 유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합리적인 성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게 하는 것

제(d)항 온라인상 아동 학대 조장

제(e)항 자적인 방법으로 본인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아동을 학대한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0 lakh 루피를 부과할 수 있고, 재범 혹은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10 lakh루피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 제67조의 A 및 이 조는 다음에서 정하는 전자적인 형태의 책, 팜플렛, 종이본, 서면, 소묘, 그림, 형태나 모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i)호 그 책, 팜플렛, 종이본, 서면, 소묘, 그림, 형태나 모양의 유포가 과학, 문학, 예술 또는 대중의 관심의 목적이나 교육의 근거로 유포된 경우에는 정당화된다.

제(ii)호 문화유산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전래되었거나 이용되었던 경우

추가설명: 이 조에서 “아동” 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출처/국문번역: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46. 이 법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이탈리아	○ <b>47</b>	○	○	○	○
자메이카	○ <b>48</b>	○	○	X	X
요르단	X	X	X	X	○
케냐	X	X	X	X	○
코소보	X	X	X	X	○
라오스	X	X	X	X	○
라트비아	○ <b>49</b>	○ <b>50</b>	○	○	○
라이베리아	X	X	X	X	○
리히텐슈타인	○ <b>51</b>	○ <b>52</b>	○	X	○
리투아니아	○ <b>53</b>	x <b>54</b>	○	X	○
룩셈부르크	○ <b>55</b>	○ <b>56</b>	○	○	○

47. 이 법은 16세 미만의 개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48.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49. 이 법은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50. 형법 제162.1절 1장에는 성인이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16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조장하거나 성행위 또는 성적관계를 시작할 목적을 갖고 자신을 만나도록 조장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진다.  
라트비아 법무부의 이메일(2016년 11월 17일).
51. 이 법은 14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52.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리히텐슈타인 형법(1988) 제209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정보통신기술의 도움으로 개인적인 연락/제205조(미성년자에 대한 심각한 성학대), 206조(미성년자 성학대), 또는 219조(미성년자의 포르노그래피적 이미지)를 위반할 목적으로의 만남을 시작하고 그러한 연락/만남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적 행동을 취한자는 누구라도 최대 3년형에 처한다.).
53.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54. 16세 미만의 사람의 그루밍에 관련한 리투아니아 형법(2015) 제152.1조는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55. 이 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56.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룩셈부르크 형법(2016) 제385-2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통해 성적 제의를 하는 범죄를 1년에서 최대 3년형 및 251유로에서 최대 5만 유로 벌금형에 처한다. 성적 제안이 만남으로 이어졌을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형 및 251유로에서 7만5천 유로 벌금형에 처한다.)

「룩셈부르크 형법」 [2017. 4.1. 개정] 원문  
**제2편 – 개별적인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제7장 – 가족의 안정과 공중 도덕에 반하는 중죄와 경죄/제7절 – 미풍양속의 훼손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례 조항/제385-2조**  
 (2011년 7월 16일) 성년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자에게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제안을 하는 행위는 징역 1개월부터 최대 3년과 벌금 251유로부터 최대 50,000유로에 처한다. 이 제안이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 징역 1년부터 최대 5년과 벌금 251유로부터 최대 75,000유로에 처한다.

출처/국문번역: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국가	온라인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마케도니아	○ <sup>57</sup>	○ <sup>58</sup>	○	X	○
마다가스카르	X	X	X	X	○
말레이시아	○	○	○	○	○
몰타	○	○ <sup>59</sup>	○	X	○
마셜제도 공화국	X	X	X	X	○
멕시코	X	X	X	X	○
모나코	○ <sup>60</sup>	○	○	○	X
몽고	X	X	X	X	○
몬테네그로	X	X	X	X	○
미얀마	X	X	X	X	○
네덜란드	○ <sup>61</sup>	○ <sup>62</sup>	○	X	○
뉴질랜드	○ <sup>63</sup>	○	○	X	○
니카라과	X	X	X	X	○
나이지리아	○	○ <sup>64</sup>	○	X	X
노르웨이	○ <sup>65</sup>	X	○	X	○
오만	○	X	X	○	○
파키스탄	X	X	X	X	○
파나마	X	X	X	X	○
파라과이	X	X	X	X	○
페루	○ <sup>66</sup>	○ <sup>67</sup>	○	○	○

57. 이 법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58.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마케도니아 형법(2009) 제193-B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컴퓨터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해 만날 약속을 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법적 강간 또는 다른 성행위를 위해 또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을 위해 유인하는 자 또는 그런 의도를 가진 간접적 만남이 미성년자와 이루어진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형에 처한다.)
59.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몰타 형법(2010) 제208AA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60. 이 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61. 이 법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용된다.
62.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네덜란드 형법(2017) 제248e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63. 이 법은 16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용된다.
64.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나이지리아 2015사이버 범죄법 형법 제23절은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65. 이 범죄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용된다.
66. 이 법은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용된다.
67.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페루 형법(2014) 제183B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페루 형법」 [DL 제635호, 1991.4.3. 제정] 원문

제2부 특별판: 죄/제4편 자유의지에 반하는 범죄/제1장 공연음란/제182조의A 대중매체에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자유범죄 유포

이동매춘·이동성관광 18세미만인 자의 매매를 광고하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출판물 또는 편집물 전송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는 2년 이상 6년 미만의 자유형에 처한다.

행위자 또한 제36조제4호에 따른 자격박탈 및 370일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83조 외설물의 전시 및 제작

공공장소에서 전시, 몽자, 접촉, 행위, 그 밖에 외설적인 성격의 행동을 한 자는 2년 이상 4년 미만의 자유형에 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6년 미만의 자유형에 처한다.

1. 18세 미만인 자에게 외설적 성격으로 인한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으로 빨리 조숙해지게하거나, 외설적 매체, 물품, 도서, 문서, 이미지, 사천각물을 보여주거나, 판매 또는 전달하는 자

2. 18세 미만의 자로 하여금 외설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업소 또는 그 밖의 타락한 장소에 입장하게 하는 자

3. 18세 미만인 자의 입장을 허가하는 외설물을 상영하는 영화관 또는 공연장을 관리, 감시하거나 감독할 권리이 있는 자

제183조의A 이동음란물

14세 이하인 자를 이용하는 외설적 성격의 물품·도서·문서·이미지·영상물·녹음물 등 모든 매체를 통해 소지, 조장, 제작, 배포, 상영, 제공, 판매, 출판,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현장 공연하는 자는 6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유형 및 20일에서 365일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상 12년 미만의 자유형 및 50일에서 365일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2. 음란물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제173조죄종합이 정하는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행위자가 아동음란물에 종사하는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유형에 처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자격박탈에 처한다.

제183조의B 남아, 여아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재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얻거나 성적행위를 하기 위해 접촉하는 자는 4년 이상 8년 미만의 자유형과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직위박탈에 처한다.

피해자가 14세에서 18세 사이인 경우 3년 이상 6년 미만의 자유형과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직위박탈에 처한다.

출처/국문번역: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필리핀	○	○	○	○	○
폴란드	○ <sup>68</sup>	○ <sup>69</sup>	○	○	○
포르투갈	○ <sup>70</sup>	○ <sup>71</sup>	○	○	○
루마니아	○ <sup>72</sup>	○ <sup>73</sup>	○	X	○
러시아	X	X	X	X	○
사모아	○	○	○	X	X
상투메프린시페	X	X	X	X	○
세네갈	X	X	X	X	○
세르비아	○	○ <sup>74</sup>	○	X	○
시에라리온	○	X <sup>75</sup>	○	X	○

68. 이 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용된다.
69.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폴란드형법(2012) 제200(a)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70. 이 법은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용된다.
71.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포르투갈 형법 제176-A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72. 이 법은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73.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루마니아 형법(2012) 제222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74.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세르비아 형법(2009) 제185(b)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75. 성적 목적 아동과의 만남과 관련된 시에라리온의 2012 성범죄에 관한 법 제23조는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싱가포르	○ <sup>76</sup>	X <sup>77</sup>	○	X <sup>78</sup>	○
슬로바키아 공화국	○ <sup>79</sup>	○ <sup>80</sup>	○	○	○
슬로베니아	○ <sup>81</sup>	○ <sup>82</sup>	○	X	○
남아프리카	○	○	○	○	○
대한민국	X	X	X	X	○

76.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77. 성적 목적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만남과 관련된 싱가포르 형법(2008) 제376E조는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78.

「싱가포르 형법전 제376E조」 [법률 제224호, 2017.10.1.개정] 원문

16세 미만 미성년의 성적 그루밍

제376E조 (1) 21세 이상의 사람(A)이 둘 이상의 앞의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B)과 만났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범죄로 유죄가 된다.

- (a) A가 의도적으로 B를 만나거나 B를 만날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 (b) 제(a)호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때에,
  - (i) A가 B에게 또는 B에 대하여, 만나는 동안 또는 만난 이후, 만약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이 A가 관련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포함하는 무언가를 할 의도가 있다,
  - (ii) B가 16세 미만이다, 그리고
  - (iii) A는 B가 16세 또는 그 이상의 나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믿지 못한다.
- (2) 제(1)항에서, “관련범죄”란 다음의 범죄를 의미한다.
  - (a) 제354조, 제354A조, 제375조, 제376조, 제376A조, 제376B조, 제376F조, 제376G조, 또는 제377A조,
  - (b) 「아동 및 청소년 법」(제38호) 제7조, 또는
  - (c) 「여성헌장」(제353호) 제140조제(1)항
- (3) 이 조항의 목적상, 제(1)항에 언급된 A가 B와 만났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앞의 상황이 싱가포르 국내나 국외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4) 이 조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가 된 사람은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둘 다의 처벌을 받는다.

출처/국문번역: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79. 이 법은 1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80.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슬로베니아 형법(2012) 제173(a)절은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81. 이 법은 1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82.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슬로베니아 형법(2012) 제173(a)절은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스페인	○ 83	○ 84	○	○	○
수단	X	X	X	X	○
수리남	X	X	X	X	○

83.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84.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스페인 형법(2015) 제183조는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스페인 형법」 [DFL 제1호, 2015.4.21. 개정] 원문

제8장 성적 자유 및 완전성에 반하는 범죄/제2장의2 16세 미만인 자에 대한 추행 및 강간/제183조

1.16세 미만인 자와 성적 행위를 한 자는 아동추행의 책임자로서 2년에서 6년의 징역에 처한다.

2.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사건의 경우 책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으로 5년에서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제3자에 대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게 하거나 스스로 행위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부과한다.

3. 질, 구강, 항문을 통한 성적 접촉 또는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을 질 또는 구강 중 어느 하나에 삽입할 시 책임자는 첫 번째 경우 8년에서 12년의 징역에 처하고 두 번째 경우 12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4. 3개의 전항에서 정하는 행동이 다음 각 호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징역의 1.5배로 처벌 한다.

a)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발달부진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무방비 상태였거나 4세 미만인 경우

b) 2명 이상의 집단적 행위로 인한 사건 발생의 경우

c) 자행한 폭력 또는 협박이 특별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경우

d) 책임자가 범행의 이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연적 또는 입양으로 인한 존속이나 형제 또는 친척이 위계 또는 친족관계를 이용한 경우

e)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또는 건강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f) 위반이 이러한 행위에 주력하는 범죄조직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된 경우

5. 이 항에서 정하는 모든 상황에서 가해자가 당국, 당국의 구성원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6년에서 12년의 공직박탈 처분을 내린다.

제183조의2 성적목적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에의 참여를 종용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하는 자는 직접 그에 참여하지 않았을 지라도 6개월에서 12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에게 간음을 하도록 한 자는 직접 그에 참여하지 않았을 지라도 1년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83조의3

1. 인터넷, 전화,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183조 및 제189조에서 정하는 범죄를 자행할 목적으로 만날 것을 제안하고 자에게는 이러한 목적이 접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자행한 사건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년에서 3년의 징역 또는 12개월에서 24개월의 벌금을 부과한다. 강요, 협박 또는 거짓에 의한 접선이 경우 해당 징역의 1.5배로 처벌한다.

2. 인터넷, 전화,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접촉하여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사진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속이려는 행위를 하는 자는 6개월에서 12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제183조의4 16세 미만인 자의 자유 동의는 이 장에서 정하는 범죄로 인한 책임을 가해자가 연령과 발달 및 성숙도가 미성년인 자와 가까운 사람인 경우

출처/국문번역: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스웨덴	○ <sup>85</sup>	○ <sup>86</sup>	○	X	○ <sup>87</sup>
스위스	X	X	X	X	○
탄자니아	X	X	X	X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X	○
터키	X	X	X	X	○
우간다	X	X	X	X	○
우크라이나	X	X	X	X	○

85. 이 법은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86.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스웨덴 형법(2009) 제10a절은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의한다.(A는 성적 목적으로 아동과 접촉 시 벌금 또는 실형 최대 1년에 처한다. 만약 A가 제 4, 5, 6, 8, 10장에 따라 처벌 가능한 행위를 1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를 목적으로, (B) B와 만남을 약속하고 그 후 – 그러한 만남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 같은 조치들을 취하는 경우). 주미 스웨덴 대사관 앤-샬론 메럴 웨터윅씨가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로 보낸 이메일(2016년 12월 16일).
87. **포르노그래피적 이미지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동과 성적 목적의 접촉”으로써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성학대(sexual molestation)로써 처벌받을 수 있다. 주미 스웨덴 대사관 앤-샬론 메럴 웨터윅씨가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로 보낸 이메일(2016년 12월 16일).

국가	온라인 그루밍 특정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날 목적에 관계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아랍에미리트	X	X	X	X	○
영국 <sup>88</sup>	○ <sup>89</sup>	○	○	○	○
미국	○	○ <sup>90</sup>	○	○	○
베네수엘라	X	X	X	X	○
잠비아	X	X	X	X	○

88.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 안에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포함한다. 또한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각각 아동의 성적 그루밍과 아동과의 성적 의사소통에 관한 특정 법을 갖고 있으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89. 이 법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용된다.
90.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미국 형법 제18편 2422(b)항은 온라인 그루밍을 구성하는 행동을 정의한다.

#### 「미국 연방형법(U.S.C Title 18)」 [1910.6.26. 제정] 원문/제2422조 강요 및 유인

- (a) 누구라도 개인에 대하여, 형사상 범죄 및 그 미수범에 해당하는 성매매 또는 성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적인 설득, 유인, 유도 및 강요하는 방법으로 주간 또는 해외통상간에의 이동 또는 미국 내 어떤 관할권 내의 이동을 시키려고 한 자는 이 법에 따르는 벌금형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형 및 두 가지 모두에 처한다.
- (b) 누구라도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특수 해양 및 관할권 범위 내에서 주간 또는 해외통상간 우편, 시설 및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성 매매 또는 어떠한 성 행위에 참여하도록 18세 미만인 자를 의도적으로 설득, 유인, 유도, 강요하여 형법상 범죄 및 그 미수를 범한 자는 이 법에 따르는 벌금형 또는 10년 이상의 종신형에 처한다.

#### 개정 연혁

Title 18, U.S.C., 1940 ed., §399를 기준으로 이 장 제1조(section)의 중범죄(felony)의 정의를 고려하여 볼 때, 불필요한 문구 “중범죄(guilty of a felony)의 죄로 간주됨”을 삭제하였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처벌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문구인 “그리고 그 유죄는 다음과 같다”를 삭제하였다. 누구든 원인을 야기, 조달, 지원하는 자에 관한 언급은 이 장 제2조(section)에서 주로 다뤄졌으므로 불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생략하였다. 문구 “미국 소유”를 두 번 삽입하였다. (이 장 제2421조의 참고사항 참조) 그리고 용어를 약간 수정하였다.

#### 개정사항

2006—제(b)항. Pub. L. 109-248에서 “5년 이상 30년 미만”을 “10년 이상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였다. 2003—제(a)항. Pub. L. 108-21, §103(a)(2)(A)에서 “10년”을 “20년”으로 대체하였다. 제(b)항. Pub. L. 108-21, §103(a)(2)(B), (b)(2)(A)에서 “징역”을 “5년 이상 징역”으로 그리고 “15년 또는 둘 모두”를 “30년”으로 대체하였다. 1998—제(a)항. Pub. L. 105-314, §102(1)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앞에 “또는 미수에 그친”을 삽입하고, “5년”을 “10년”으로 대체하였다. 제(b)항. Pub. L. 105-314, §102(2)에서 제(b)항을 추가하고, “미국 특별 해양 및 관할권 범위 내에서 또는 주간 또는 해외 무역 장소에서 주간 메일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성 매매 또는 어떠한 성 행위에 참여하도록 18세 미만인 자를 의도적으로 설득, 유인, 유도, 강요하는 자는 형사 처벌 될 수 있거나 미수에 그친 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10년 미만 수감 또는 처벌 둘 다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이전의 하위 절 (b)를 생략하였다. 1996—Pub. L. 104-104에서 기존 항을 제(a)항으로 표기하고 제(b)항을 추가하였다. 1988—Pub. L. 100-690에서 “해외 통상간” 앞에서 “의”를 “또는”으로 대체하였다. 1986—Pub. L. 99-628에서 조머리에 “또는 여성 유도”를 “및 유도”로 대체하였고, 전반적으로 본문을 수정하였다. 수정하기 전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매매 또는 방탕한 생활, 그 밖의 비도덕적 목적으로 또는 여성 또는 여아에 대하여 성매매 또는 방탕한 생활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참여시키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미국 영토 또는 소유지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 또는 주간 또는 해외통상간에서 다른 장소로 갈 것을 여성 또는 여아를 의도적으로 설득, 유도, 유인 또는 강요하고, 이들의 동의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여성 또는 여아를 승객으로서 미국 영토 또는 소유지에서 또는 주간 또는 해외 통상간 일반 운수업자 경로를 통해 수송하는 자는 5,000달러 미만의 벌금형 또는 5년 미만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한다”

#### 제2425조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 전송을 위한 주간 시설 사용

미국 특별 해양 및 관할권 내에서 또는 주간 또는 해외 통상간에 고의적으로 성 행위에 종사하도록 16세 미만인 자를 유인, 권장, 제안 또는 권유하려는 의도로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사회 보장 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를 전송하는 행위에 착수하여 형법상 범죄 또는 미수에 그친 자는 이 장의 벌금형, 5년 미만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

출처/국문번역: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편집 탁틴내일연구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엑팟ECPAT코리아탁틴

발행 최영희 (사)탁틴내일 이사장  
발행처 (사)탁틴내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주소 (0378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7길 18  
전화 02-338-7480  
팩스 02-3141-9339  
홈페이지 [www.tacteen.net](http://www.tacteen.net)  
발행일 2017년 11월 7일 인쇄/발행